家事事件手続法

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二号

最終更新: 令和元年六月十四日律第三十四号

施行日: 令和元年七月十六日

第一編 総則

第一章 通則

第一条 (趣旨)

家事審判及び家事調停に関する事件(以下「家事事件」という。)の手続については、 他の法令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定 めるところによる。

第二条(裁判所及び当事者の責務)

裁判所は、家事事件の手続が公正かつ迅速に 行われるように努め、当事者は、信義に従い 誠実に家事事件の手続を追行しなければなら ない。

第三条 (最高裁判所規則)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家事事件の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一章の二 日本の裁判所の管轄権

第三条の二(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の管轄権)

裁判所は、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四十五条にお

가사사건절차법

2011년 법률 제52호

최종개정: 2019년 6월 14일 법률 제34호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취지)

가사심판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건(이하 "가 사사건"이라 한다)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재판소 및 당사자의 책무)

재판소는 가사사건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는 신의에 좇 아 성실히 가사사건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최고재판소규칙)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가사사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장의2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

제3조의2(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 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 판 사건(별표 제1의 55항의 사항에 대한 심 판 사건을 말한다. 제145조에서 같다)에 대 いて同じ。) について、不在者の財産が日本 国内にあ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三(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事件 の管轄権)

裁判所は、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五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 判事件をいう。第百四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 項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 一 日本において失踪の宣告の審判があったと き。
- 二 失踪者の住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又は失 踪者が日本の国籍を有するとき。
- 三 失踪者が生存していたと認められる最後の 時点において、失踪者が日本国内に住所を有 していたとき又は日本の国籍を有していたと き。

第三条の四(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 選任の審判事件の管轄権)

裁判所は、嫡出否認の訴え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ときは、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五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五(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 の審判事件等の管轄権)

裁判所は、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 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一の項の事項につ 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六十一条第一項 하여 부재자의 재산이 일본 국내에 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3(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 의 5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4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 1. 일본에서 실종선고심판이 있은 때
- 2. 실종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또는 실종자가 일본 국적을 가졌을 때
- 3. 실종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은 때 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은 때

제3조의4(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소에 대하여 일본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의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5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5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5(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등의 관할권)

재판소는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6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61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 및

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及び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事件(同表の六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六十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養親となるべき者又は養子となるべき者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六(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 の審判事件の管轄権)

裁判所は、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 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二の項の事項につ 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六十二条第一項 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の 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管轄権を 有する。

- 一 養親又は養子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 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 にあるとき。
- 二 養親又は養子がその死亡の時に日本国内に 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
- 三 養親又は養子の一方が日本の国籍を有する場合であって、他の一方がその死亡の時に日本の国籍を有していたとき。

第三条の七(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事件 の管轄権)

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六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 判事件をいう。以下同じ。)について、次の 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管轄権を 특별양자의 성립 심판 사건(같은 표의 6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64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6(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 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사후파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6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62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 1. 양부모 또는 양자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2. 양부모 또는 양자가 사망 시에 일본 국내 에 주소를 갖고 있은 때
- 3. 양부모 또는 양자 중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로, 다른 한쪽이 사망 시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은 때

제3조의7(특별양자의 파양에 대한 심판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별표 제 1의 6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有する。

- 一 養親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 き。
- 二 養子の実父母又は検察官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養子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
- 三 養親及び養子が日本の国籍を有するとき。

四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養子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養親及び養子が最後の共通の住所を日本国内に有していたとき。

五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養子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養親が行方不明であるとき、養親の住所がある国においてされた離縁に係る確定した裁判が日本国で効力を有しないときその他の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養親と養子との間の衡平を図り、又は適正かつ迅速な審理の実現を確保することと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第三条の八 (親権に関する審判事件等の管轄 権)

裁判所は、親権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五の項から六十九の項まで並びに別表第二の七の項及び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六十七条において同じ。)、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同表の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五十条第四号及び第百五十一条第二号において同じ。)(子の監護に要する費

- 1. 양부모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때
- 2. 양자의 친부모 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한 심판사건으로 양자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3. 양부모 및 양자가 일본 국적을 가졌을 때
- 4.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양자의 신청에 의한 심판사건으로 양부모 및 양자가 마지막 으로 같은 주소를 일본 국내에 갖고 있은 때
- 5.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양자의 신청에 의한 심판사건으로 양부모가 행방불명일 때, 양부모의 주소가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파양과 관련된 확정재판이 일본에서 효력이 없을 때, 그 밖에 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

제3조의8(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 등의 관할 권)

재판소는 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 의 65항부터 69항까지 및 별표 제2의 7항과 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67조에서 같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같은 표의 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50조제4호 및 제151조제2호에서 같다)(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을 제외한다) 및 친권

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を除く。) 及び親権を行う者につき破産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管理権喪失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三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二百四十二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子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九(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 なるべき者の選任の審判事件等の管轄権)

裁判所は、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七十六条及び第百七十七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又は未成年後見人の選任の審判事件(同表の七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同条第二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未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若しくは未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等」という。)の住所若しく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又は未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等が日本の国籍を有す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十(夫婦、親子その他の親族関係から生ずる扶養の義務に関する審判事件の管轄 権)

裁判所は、夫婦、親子その他の親族関係から 生ずる扶養の義務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 一の八十四の項及び八十五の項並びに別表第 二の一の項から三の項まで、九の項及び十の 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同表の三の項 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にあっては、子の 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건(별표 제1의 13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2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자녀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에는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9(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의 선임심판 사건 등의 관할권)

재판소는 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7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76조 및제177조제1호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 사건(같은 표의 7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에서같다)에 대하여 미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또는 미성년피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 등"이라 한다)의 주소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또는 미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등이 일본 국적을 가졌을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10(부부, 부모·자녀, 그 밖의 친족관 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 의무에 관한 심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부부, 부모·자녀, 그 밖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 의무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84항과 85항 및 별표 제2의 1항부터 3항까지, 9항과 1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같은 표의 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의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

監護に要する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限る。)をいう。)について、扶養義務者(別表第一の八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にあっては、扶養義務者となるべき者)であって申立人でないもの又は扶養権利者(子の監護に要する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あっては、子の監護者又は子)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第三条の十一(相続に関する審判事件の管轄 権)

裁判所は、相続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六の項から百十の項まで及び百三十三の項並びに別表第二の十一の項から十五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について、相続開始の時における被相続人の住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住所がない場合には相続開始の時における被相続人の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居所がない場合又は居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被相続人が相続開始の前に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日本国内に最後に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日本国内に最後に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日本国内に最後に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日本国内に最後に住所を有していたときを除く。)は、管轄権を有する。

2 相続開始の前に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以下同じ。)、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同表の八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八十八条第一項及び第百八十九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遺言の確認の審判事件(同表の百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二百九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

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별표 제1의 8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될 사람)로서 신청인이 아닌 사람 또는 부양권리자(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의 경우는 자녀의 양육자또는 자녀)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제3조의11(상속에 관한 심판 사건의 관할권)

① 재판소는 상속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 1의 86항부터 110항까지와 133항 및 별표 제2의 11항부터 15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시의 피상속인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의 피상속인의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은 때(일본 국내에 마지막 주소를 갖고 있은 때(일본 국내에 마지막 주소를 갖고 있은 때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② 상속개시 전에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별표 제1의 8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같은 표의 87항의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88조제1항 및 제189조제1항에서 같다), 유언확인심판 사건(같은 표의 10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209조제2항에서같다) 또는 유류분 포기에 대한 허가심판 사

又は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 (同表の百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 をいう。第二百十六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 同じ。)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前項 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相続開始 の時における被相続人」とあるのは「被相続 人」と、「相続開始の前」とあるのは「申立 て前」とする。

3 裁判所は、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のほか、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その取消しの審 判の確定前の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 事件(別表第一の八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八十九条第一項及び 第二項において同じ。)、相続財産の保存又 は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同表の九十 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二 百一条第十項において同じ。)、限定承認を 受理した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人の選 任の審判事件(同表の九十四の項の事項につ 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財産分離の請求 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同表の九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 件をいう。第二百二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 項において同じ。) 及び相続人の不存在の場 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 判事件(同表の九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以下同じ。) について、相 続財産に属する財産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 は、管轄権を有する。

4 当事者は、合意により、いずれの国の裁判 所に遺産の分割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二 の十二の項から十四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第三条の十四及び第百九 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及び特別の寄 건(같은 표의 11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216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의 신청이 있은 경우 전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항 중 "상속개시 시의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 "상속개시 전"은 "신청 전"으로 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 정 전의 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별 표 제1의 8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8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 상속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같은 표의 9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201조제10항에서 같다),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사건(같은 표의 94항의 사항에 대 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재산분리청구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같은 표 의 9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20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같은 표의 99항의 사항에 대 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 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일본 국내에 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④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어느 나라의 재판소에 유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2의 12항부터 14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사건을 말한다. 제3조의14 및 제191조제1항에서 같다) 및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同表の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三条の十四及び第二百十六条の二において同じ。)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三 条の七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前項 の合意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条の十二(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 判事件の管轄権)

裁判所は、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五十条第五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

- 一 夫又は妻であった者の一方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他の一方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とき。
- 二 夫であった者及び妻であった者の双方が日本の国籍を有するとき。
- 三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夫又は妻であった者 の一方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夫であった者 及び妻であった者が最後の共通の住所を日本 国内に有していたとき。

四 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夫又は妻であった者の一方からの申立てであって、他の一方が行方不明であるとき、他の一方の住所がある国においてされた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に係る確定した裁判が日本国で効力を有しないと

(같은 표의 1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3조의14 및 제216조의2에서 같다)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정할수 있다.

⑤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 항의 합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조의12(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의 관할권)

재판소는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별표 제2의 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50조제5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 1. 남편 또는 아내였던 사람 중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2. 남편이었던 사람과 아내였던 사람 모두 일본 국적을 가졌을 때
- 3.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남편 또는 아내 였던 사람 중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사건 으로 남편이었던 사람과 아내였던 사람이 마 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일본 국내에 갖고 있 은 때
- 4.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남편 또는 아내 였던 사람 중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사건으로 상대방이 행방불명일 때,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나라에서 행해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과 관련된 확정재판이 일본에서 효력이

きその他の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当事者間の衡平を図り、又は適正かつ迅速な審理の実現を確保することと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

第三条の十三(家事調停事件の管轄権)

裁判所は、家事調停事件について、次の各号 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管轄権を有す る。

- 一 当該調停を求める事項についての訴訟事件 又は家事審判事件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が管 轄権を有するとき。
- 二 相手方の住所(住所がない場合又は住所が 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が日本国内にある とき。
- 三 当事者が日本の裁判所に家事調停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合意をしたとき。
- 2 民事訴訟法第三条の七第二項及び第三項の 規定は、前項第三号の合意について準用す る。
- 3 人事訴訟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九号)第二条に規定する人事に関する訴え(離婚及び離縁の訴えを除く。)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ついては、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三条の十四(特別の事情による申立ての却下)

裁判所は、第三条の二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遺産の分割に関する審判

없을 때, 그 밖에 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의13(가사조정사건의 관할권)

- ① 재판소는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권을 갖는다.
- 1. 해당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소송 사건 또는 가사심판 사건에 대하여 일본 재 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때
- 2. 상대방의 주소(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3. 당사자가 일본 재판소에 가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때
- ② 「민사소송법」 제3조의7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 제3호의 합의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인사소송법」(2003년 법률 제109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소(이혼 및 파양의 소를 제외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제 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14(특별한 사정에 의한 신청의 각하)

재판소는 제3조의2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 하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유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건 事件又は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にのみ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合意に基づき申立てがされた場合を除く。)においても、事案の性質、申立人以外の事件の関係人の負担の程度、証拠の所在地、未成年者である子の利益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て、日本の裁判所が審理及び裁判をすることが適正かつ迅速な審理の実現を妨げ、又は相手方がある事件について申立人と相手方との間の衡平を害することとな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申立ての全部又は一部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条の十五 (管轄権の標準時)

日本の裁判所の管轄権は、家事審判若しくは 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時又は裁判所が職 権で家事事件の手続を開始した時を標準とし て定める。

第二章 管轄

第四条(管轄が住所地により定まる場合の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

家事事件は、管轄が人の住所地により定まる場合において、日本国内に住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その居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し、日本国内に居所がないとき又は居所が知れないときはその最後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五条 (優先管轄)

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より二以上の家庭裁判 所が管轄権を有するときは、家事事件は、先 に申立てを受け、又は職権で手続を開始した 또는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여일본 재판소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신청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사안의 성질, 신청인 이외의 사건관계인의 부담의 정도, 증거의 소재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일본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상대방간의 형평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제3조의15(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재판소의 관할권은 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때나 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사사건절차를 개시하였을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장 관할

제4조(관할이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

가사사건은 관할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가 있는 곳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하고, 일본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5조(우선관할)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가정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때에는 가사사건은 먼저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절차를 家庭裁判所が管轄する。

第六条(管轄裁判所の指定)

管轄裁判所が法律上又は事実上裁判権を行う 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裁判所の直近上 級の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管 轄裁判所を定める。

- 2 裁判所の管轄区域が明確でないため管轄裁 判所が定まらないときは、関係のある裁判所 に共通する直近上級の裁判所は、申立てによ り又は職権で、管轄裁判所を定める。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管轄裁判所を定める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七条(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の特例)

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より家事事件の管轄が 定まらないときは、その家事事件は、審判又 は調停を求める事項に係る財産の所在地又は 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 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八条 (管轄の標準時)

裁判所の管轄は、家事審判若しくは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時又は裁判所が職権で家事 事件の手続を開始した時を標準として定め る。

第九条 (移送等)

裁判所は、家事事件の全部又は一部がその管轄に属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これを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 ただし、家庭裁判所は、事件を処理するため 개시한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6조(관할재판소의 지정)

- ① 관할재판소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재판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할재판소를 정한다.
- ② 재판소의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관할 재판소가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가 있는 재판소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재판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할재판소를 정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재판소를 정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의 특례)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가사사건의 관할이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심판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지 또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제8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재판소의 관할은 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의 신청을 한 때나 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사사건 절차를 개시하였을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9조(이송 등)

① 재판소는 가사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관할재판소로 이송한다. 다만, 가정재판소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に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 家事事件の全部又は一部を管轄権を有する家 庭裁判所以外の家庭裁判所に移送し、又は自 ら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家事事件がその管轄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は、職権で、家事事件の全部又は一部を当該各号に定める家庭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家事事件の手続が遅滞することを避け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その他相当と認めるとき 第五条の規定により管轄権を有しないこととされた家庭裁判所
- 二 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 前号の家庭裁判所以外の家庭裁判所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移送の裁判及び第一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前項の規定による移送の裁判に対する即時 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 5 民事訴訟法第二十二条の規定は、家事事件の移送の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章 裁判所職員の除斥及び忌避

第十条 (裁判官の除斥)

裁判官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その職務の 執行から除斥される。ただし、第六号に掲げ る場合にあっては、他の裁判所の嘱託により 受託裁判官としてその職務を行うことを妨げ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가사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 이외의 가정재판소로 이송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가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가사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정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 1. 가사사건절차가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갖지 못하게 된 가정재판소
- 2.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호의 가정재판소 이외의 가정 재판소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이송의 재판 및 제 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송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 ⑤ 「민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은 가사사건의 이송의 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재판소 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10조(재판관의 제척)

① 재판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 척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다른 재판소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ない。

- 一 裁判官又はその配偶者若しくは配偶者であった者が、事件の当事者若しくはその他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審判(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を除く。)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者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とき、又は事件についてこれらの者と共同権利者、共同義務者若しくは償還義務者の関係にあるとき。
- 二 裁判官が当事者又はその他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の四親等内の血族、三親等内の姻族若しくは同居の親族であるとき、又はあったとき。
- 三 裁判官が当事者又はその他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の後見人、後見監督人、保佐 人、保佐監督人、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であるとき。
- 四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証人若しくは鑑定人となったとき、又は審問を受けることとなったとき。
- 五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当事者若しくはその 他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の代理人若 しくは補佐人であるとき、又はあったとき。
- 六 裁判官が事件について仲裁判断に関与し、 又は不服を申し立てられた前審の裁判に関与 したとき。
- 2 前項に規定する除斥の原因があるときは、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除斥の 裁判をする。

第十一条 (裁判官の忌避)

- 1. 재판관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심판(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을 제 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을 받아야 하 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때 또는 사 건에 대하여 이러한 사람과 공동권리자, 공 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 2.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일 때나 그러한 사람이었던 때
- 3.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 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 일 때
- 4. 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나 감정인이 되었을 때 또는 심문을 받게 되었을 때
- 5. 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대리인 또는 보좌인이거나 그러한 사람이었던 때
- 6. 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중재 판단에 관 여하거나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 여하였을 때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11조(재판관의 기피)

裁判官について裁判又は調停の公正を妨げる 事情があるときは、当事者は、その裁判官を 忌避することができる。

2 当事者は、裁判官の面前において事件について陳述をしたときは、その裁判官を忌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忌避の原因があることを知らなかったとき、又は忌避の原因がその後に生じ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二条(除斥又は忌避の裁判及び手続の停止)

合議体の構成員である裁判官及び家庭裁判所 の一人の裁判官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はそ の裁判官の所属する裁判所が、受託裁判官と して職務を行う簡易裁判所の裁判官の除斥又 は忌避についてはその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 する地方裁判所が、裁判をする。

- 2 家庭裁判所及び地方裁判所における前項の裁判は、合議体でする。
- 3 裁判官は、そ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の裁 判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 4 除斥又は忌避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家事事件の手続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急速を要す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5 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して忌避の申立て を却下する裁判をするときは、第三項の規定 は、適用しない。
- 一 家事事件の手続を遅滞させる目的のみでさ

- ①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 또는 조정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재판관의 면전에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했을 때에는 재판관을 기피할 수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못했을 때나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 및 절차의 정 지)

- ① 합의체의 구성원인 재판관 및 가정재판소 중 한 명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수탁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그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재판을 하다.
- ② 가정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전항의 재판은 합의체에서 한다.
- ③ 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사사건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가사사건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만 하는

れたことが明らかなとき。

- 二 前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とき。
- 三 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手続に違反すると き。
- 6 前項の裁判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忌避された受命裁判官等(受命裁判官、受託裁判官、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又は家事事件を取り扱う家庭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をいう。次条第三項ただし書において同じ。)がすることができる。
- 7 第五項の裁判をした場合には、第四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事事件の手続は停止しない。
- 8 除斥又は忌避を理由があるとする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 9 除斥又は忌避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三条(裁判所書記官の除斥及び忌避)

裁判所書記官の除斥及び忌避については、第 十条、第十一条並びに前条第三項、第五項、 第八項及び第九項の規定を準用する。

2 裁判所書記官について除斥又は忌避の申立 てがあったときは、その裁判所書記官は、そ 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 申立てがあった家事事件に関与することがで きない。ただし、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 第五項各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して忌避の 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があったときは、この 限りでない。 것이 명백할 때

- 2.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 3.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할 때
- ⑥ 전항의 재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기피된 수명재판관 등(수명재판 관, 수탁재판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재 판관 또는 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재판소 중 한 명의 재판관을 말한다. 다음 조 제3항 단 서에서 같다)이 할 수 있다.
- ① 제5항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절차는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⑧ 제척 또는 기피에 이유가 있다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⑨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판소서기관의 제척 및 기피)

- ① 재판소서기관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및 전조 제3항, 제5항,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재판소서기관은 자신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 할 때까지 신청이 있은 가사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5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이 있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裁判所書記官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の裁判は、裁判所書記官の所属する裁判所がする。ただし、前項ただし書の裁判は、受命裁判官等(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にあっては、当該裁判官の手続に立ち会う裁判所書記官が忌避の申立てを受けたときに限る。)が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四条 (参与員の除斥及び忌避)

参与員の除斥及び忌避については、第十条、 第十一条並びに第十二条第二項、第八項及び 第九項の規定を準用する。

- 2 参与員について除斥又は忌避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その参与員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申立てがあった家事事件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十二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して忌避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が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参与員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の裁判は、 参与員の所属する家庭裁判所がする。ただ し、前項ただし書の裁判は、受命裁判官(受 命裁判官の手続に立ち会う参与員が忌避の申 立てを受けたときに限る。)又は家事事件を 取り扱う家庭裁判所の一人の裁判官がするこ とができる。

第十五条(家事調停官の除斥及び忌避)

家事調停官の除斥及び忌避については、第十 条、第十一条並びに第十二条第二項から第四 項まで、第八項及び第九項の規定を準用す る。

2 第十二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

③ 재판소서기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그가 소속된 재판소가 재판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재판은 수명재판관 등(수명재판 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경우는 해당 재판관의 절차에 참여하는 재판소서기관이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이 할 수 있다.

제14조(참여원의 제척 및 기피)

- ① 참여원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제10 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제8항과 제9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참여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할 때까지 신청이 있은 가사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참여원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그가 소속된 가정재판소가 재판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재판은 수명재판관(수명재판관의절차에 참여하는 참여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또는 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재판소 중 한 명의 재판관이 할 수 있다.

제15조(가사조정관의 제척 및 기피)

- ① 가사조정관의 제척 및 기피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2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して忌避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があったとき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四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事事件の手続は停止しない。

3 家事調停官の除斥又は忌避についての裁判は、家事調停官の所属する家庭裁判所がする。ただし、前項の裁判は、忌避された家事調停官が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六条(家庭裁判所調査官及び家事調停委員の除斥)

家庭裁判所調査官及び家事調停委員の除斥については、第十条並びに第十二条第二項、第 八項及び第九項の規定(忌避に関する部分を 除く。)を準用する。

- 2 家庭裁判所調査官又は家事調停委員について除斥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その家庭裁判所調査官又は家事調停委員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申立てがあった家事事件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家庭裁判所調査官又は家事調停委員の除斥 についての裁判は、家庭裁判所調査官又は家 事調停委員の所属する裁判所がする。

第四章 当事者能力及び手続行為能力

第十七条(当事者能力及び手続行為能力の原 則等)

当事者能力、家事事件の手続における手続上 の行為(以下「手続行為」という。)をする ことができる能力(以下この項において「手 続行為能力」という。)、手続行為能力を欠 く者の法定代理及び手続行為をするのに必要 하는 사유가 있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이 있은 때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절차는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가사조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해서는 그가 소속된 가정재판소가 재판한다. 다만, 전항의 재판은 기피된 가사조정관이 할 수 있다.

제16조(가정재판소 조사판 및 가사조정위원 의 제척)

- ① 가정재판소 조사관 및 가사조정위원의 제 척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2조제2항, 제8 항과 제9항의 규정(기피에 관한 부분을 제 외한다)을 준용한다.
- ② 가정재판소 조사관 또는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 제척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할 때까지 신청이 있은 가사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가정재판소 조사관 또는 가사조정위원의 제척에 대해서는 그가 소속된 재판소가 재판하다.

제4장 당사자 능력 및 절차 행위 능력 제17조(당사자 능력 및 절차 행위 능력의 원 칙 등)

① 당사자 능력, 가사사건절차의 절차상의 행위(이하 "절차 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는 능력(이하 이 항에서 "절차 행위 능력"이라한다), 절차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정대리 및 절차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에

な授権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二十八条、 第二十九条、第三十一条、第三十三条並びに 第三十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 る。

2 被保佐人、被補助人(手続行為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補助人の同意を得ることを要す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又は後見人その他の法定代理人が他の者がした家事審判又は家事調停の申立て又は抗告について手続行為をするには、保佐人若しくは保佐監督人、補助人若しくは補助監督人又は後見監督人の同意その他の授権を要しない。職権により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3 被保佐人、被補助人又は後見人その他の法 定代理人が次に掲げる手続行為をするには、 特別の授権が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 事調停の申立てその他家事調停の手続の追行 について同意その他の授権を得ている場合に おいて、第二号に掲げる手続行為をする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家事審判又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取下げ
- 二 第二百六十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七十 七条第一項第一号の合意、第二百七十条第一 項に規定する調停条項案の受諾又は第二百八 十六条第八項の共同の申出
- 三 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第九十四条第一項 (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抗告若しくは第九十七条第二項(第 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の申立ての取下げ又は第二百七十九条 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十六条第一項の異議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피보좌인, 피보조인(절차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또는 후견인, 그 밖의 법정대리인이 다른 사람이 한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의 신청이나 항고에 대하여 절차 행위를 하는 데에는 보좌인이나보좌감독인, 보조인이나보조감독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그 밖의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도 같다.

③ 피보좌인, 피보조인 또는 후견인, 그 밖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사조정 신청, 그 밖에 가사조정 절차의 추행에 대하여 동의, 그 밖의 권한을 받은 경우, 제2호의 절차 행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 신청의 취하
- 2. 제268조제1항이나 제277조제1항제1호의 합의,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정조항 안의 수락 또는 제286조제8항의 공동신청
- 3.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94조제1항(제 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항 고나 제97조제2항(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신청 취하 또는 제279조 제1항이나 제286조제1항의 이의 취하

の取下げ

第十八条 (未成年者及び成年被後見人の法定 代理人)

1

親権を行う者又は後見人は、第百十八条(こ の法律の他の規定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 又は第二百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が法定代理人に よらずに自ら手続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 合であっても、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を 代理して手続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 し、家事審判及び家事調停の申立ては、民法 (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 その他の法 令の規定により親権を行う者又は後見人が申 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人事訴訟法第 二条に規定する人事に関する訴え(離婚及び 離縁の訴えを除く。) 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 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調停の申立てにあって は、同法その他の法令の規定によりその訴え 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を含む。)に限 る。

第十九条 (特別代理人)

裁判長は、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について、法定代理人がない場合又は法定代理人が代理権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家事事件の手続が遅滞することにより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特別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特別代理人の選任の裁判は、疎明に基づいてする。
- 3 裁判所は、いつでも特別代理人を改任する

제18조(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 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후견인은 제118 조(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 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절차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을 대리하여 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사심판 및 가사조정의 신청은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그 밖의 법령 규정 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인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소(이혼 및 파양의 소를 제외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가사조정 신청의 경우는 같은 법,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제19조(특별대리인)

- ① 재판장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사사건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특별대리인 선임재판은 소명에 의하여 한다.
- ③ 재판소는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ことができる。

- 4 特別代理人が手続行為をするには、後見人と同一の授権がなければならない。
- 5 第一項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条(法定代理権の消滅の通知)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に おいては、法定代理権の消滅は、本人又は代 理人から他方の当事者に通知しなければ、そ の効力を生じない。家事調停事件において も、同様とする。

第二十一条(法人の代表者等への準用)

法人の代表者及び法人でない社団又は財団で 当事者能力を有するものの代表者又は管理人 については、この法律中法定代理及び法定代 理人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五章 手続代理人及び補佐人

第二十二条 (手続代理人の資格)

法令により裁判上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代理人のほか、弁護士でなければ手続代理人 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家庭裁判所 においては、その許可を得て、弁護士でない 者を手続代理人と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ただし書の許可は、いつでも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三条(裁判長による手続代理人の選任 等)

手続行為につき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た者が

수 있다.

- ④ 특별대리인이 절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법정대리권 소멸 통지)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 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 다. 가사조정사건에서도 같다.

제21조(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준용)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 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대해서는 이 법률 중 법정대 리 및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절차대리인 및 보좌인

제22조(절차대리인의 자격)

- ① 법령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절차대리인 이 될 수 없다. 다만,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절차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재판장에 의한 절차대리인의 선임 등)

① 절차 행위에 대해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

第百十八条(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二百五十二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り手続行為をしようとする場 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裁 判長は、申立てにより、弁護士を手続代理人 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手続行為につき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た者 が前項の申立てをしない場合においても、裁 判長は、弁護士を手続代理人に選任すべき旨 を命じ、又は職権で弁護士を手続代理人に選 任することができる。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長が手続代理人に 選任した弁護士に対し手続行為につき行為能力の制限を受けた者が支払うべき報酬の額 は、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額とする。

第二十四条(手続代理人の代理権の範囲)

手続代理人は、委任を受けた事件について、 参加、強制執行及び保全処分に関する行為を し、かつ、弁済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る。

- 2 手続代理人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特別の委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事調停の申立てその他家事調停の手続の追行について委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おいて、第二号に掲げる手続行為を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家事審判又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取下げ
- 二 第二百六十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合意、第二百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停条項案の受諾又は第二百八

- 은 사람이 제118조(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를 절차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절차 행위에 대해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변호사를 절차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사를 절차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절차대리 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절차 행위에 대해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보수액은 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액수로 한다.

제24조(절차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 ① 절차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참가,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 ② 절차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임을 따로 받아야 한다. 다만, 가사조정 신청, 그 밖에 가사조정절차의 추행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제2호의 절차행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 신청의 취하
- 2. 제268조제1항이나 제277조제1항제1호의 합의,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정조항 안의 수락 또는 제286조제8항의 공동신청

十六条第八項の共同の申出

三 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第九十四条第一項 (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抗告、第九十七条第二項(第二百八十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申立て又は第二百七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十六条第一項の異議

四 前号の抗告(即時抗告を含む。)、申立て 又は異議の取下げ

五 代理人の選任

3 手続代理人の代理権は、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弁護士でない手続代理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法令により裁判上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代理人の権限を妨げない。

第二十五条(手続代理人の代理権の消滅の通知)

手続代理人の代理権の消滅は、家事審判事件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ものに限 る。)及び家事調停事件においては本人又は 代理人から他方の当事者に、その他の家事事 件においては本人又は代理人から裁判所に通 知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二十六条 (手続代理人及びその代理権に関する民事訴訟法の準用)

民事訴訟法第三十四条(第三項を除く。)及 び第五十六条から第五十八条まで(同条第三 項を除く。)の規定は、手続代理人及びその 3.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94조제1항(제 2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항 고, 제97조제2항(제2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제279조제1항 이나 제286조제1항의 이의

4. 전호의 항고(즉시항고를 포함한다), 신청 또는 이의의 취하

5. 대리인의 선임

③ 절차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절차대리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3항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제25조(절차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통지)

절차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가사심판 사건(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가사조정사건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 밖의 가사사건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재판소에 통지해야만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절차대리인 및 대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절차대리인 및 대리권에 代理権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七条 (補佐人)

家事事件の手続における補佐人については、 民事訴訟法第六十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章 手続費用

第一節 手続費用の負担

第二十八条 (手続費用の負担)

手続費用(家事審判に関する手続の費用(以下「審判費用」という。)及び家事調停に関する手続の費用(以下「調停費用」という。)をいう。以下同じ。)は、各自の負担とする。

- 2 裁判所は、事情により、前項の規定によれば当事者及び利害関係参加人(第四十二条第七項に規定する利害関係参加人をいう。第一号において同じ。)がそれぞれ負担すべき手続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負担すべき者以外の者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 一 当事者又は利害関係参加人
- 二 前号に掲げる者以外の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
- 三 前号に掲げる者に準ずる者であって、その 裁判により直接に利益を受けるもの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れば検察官が負担すべき手続費用は、国庫の負担とする。

第二十九条 (手続費用の負担の裁判等)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보좌인)

가사사건절차의 보좌인에 대해서는 「민사소 송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절차비용

제1절 절차비용의 부담

제28조(절차비용의 부담)

- ① 절차비용(가사심판에 관한 절차의 비용 (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 및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의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자 부담한다.
- ② 재판소는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을 따르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참가인(제4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참가인을 말한다. 제1호에서 같다)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참가인
- 2. 전호의 사람 이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 전호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재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
- ③ 전2항의 규정을 따르면 검찰관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9조(절차비용부담의 재판 등)

裁判所は、事件を完結する裁判において、職権で、その審級における審判費用(調停手続を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調停費用を含む。)の全部について、その負担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事情により、事件の一部又は中間の争いに関する裁判において、その費用についての負担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上級の裁判所が本案の裁判を変更する場合には、手続の総費用(調停手続を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調停費用を含む。)について、その負担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事件の差戻し又は移送を受けた裁判所がその事件を完結する裁判をする場合も、同様とする。

3 調停が成立した場合において、調停費用 (審判手続を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審判 費用を含む。)の負担について特別の定めを しなかったときは、その費用は、各自が負担 する。

4 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り調停を行うことができる事件についての訴訟が係属する裁判所が第二百五十七条第二項又は第二百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付した場合において、調停が成立し、その訴訟についての訴訟費用の負担について特別の定めをしなかったときは、その費用は、各自が負担する。

第三十条(手続費用の立替え)

事実の調査、証拠調べ、呼出し、告知その他の家事事件の手続に必要な行為に要する費用は、国庫において立て替えることができる。

① 재판소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심판비용(조정절차를 거친경우는 조정비용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 또는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상급재판소가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총 비용(조정절차를 거친 경우는 조정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 받은 재판소가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비용(심판절차를 거친 경우는 심판비용을 포함한다)의 부 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④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소송이 계속하는 재판소가 제257조제2항 또는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30조(절차비용의 대신 지급)

사실조사·증거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가사사건절차에 필요한 행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手続費用に関する民事訴訟法の 準用等)

民事訴訟法第六十九条から第七十四条までの 規定 (裁判所書記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の申 立てについての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に関す る部分を除く。)は、手続費用の負担につい 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七十 二条中「当事者が裁判所において和解をした 場合」とあるのは「調停が成立した場合」 と、「和解の費用又は訴訟費用」とあるのは 「家事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 二号) 第二十九条第三項の調停費用又は同条 第四項の訴訟費用」と、同法第七十三条第一 項中「裁判及び和解」とあるのは「裁判及び 調停の成立」と、「補助参加の申出の取下げ 又は補助参加についての異議の取下げ」とあ るのは「家事事件手続法第四十一条第一項若 しくは第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 申出の取下げ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参 加の許可の申立ての取下げ」と、同条第二項 中「第六十一条から第六十六条まで及び」と あるのは「家事事件手続法第三十一条第一項 において準用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 る。

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六十九 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即時抗告並びに同法第 七十一条第四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七十二条後段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第七十三条第二項及び第七十四条第 二項の異議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する 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第二節 手続上の救助

제31조(절차비용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민사소송법」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의 규정(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절차비용의 부담에 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2조 중 "당사자가 재판소에서 화해를 한 경우"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화해비용 또는 소 송비용"은 "「가사사건절차법」(2011년 법 률 제52호) 제29조제3항의 조정비용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소송비용"으로, 같은 법 제 73조제1항 중 "재판 및 화해"는 "재판 및 조 정의 성립"으로, "보조참가 신청의 취하 또 는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 취하"는 "「가사사 건절차법, 제4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의 취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허가 신청의 취하" 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 및"은 "「가사사건절차법」 제31조제1 항에서 준용하는"으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9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 및 같은 법 제71조제4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2조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73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 지의 효력을 갖는다.

제2절 절차상의 구조

第三十二条

家事事件の手続の準備及び追行に必要な費用を支払う資力がない者又はその支払により生活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者に対しては、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手続上の救助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救助を求める者が不当な目的で家事審判又は家事調停の申立てその他の手続行為を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な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民事訴訟法第八十二条第二項及び第八十三 条から第八十六条まで(同法第八十三条第一 項第三号を除く。)の規定は、手続上の救助 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 第八十四条中「第八十二条第一項本文」とあ るのは、「家事事件手続法第三十二条第一項 本文」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章 家事事件の審理等

第三十三条 (手続の非公開)

家事事件の手続は、公開しない。ただし、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者の傍聴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三十四条 (期日及び期間)

家事事件の手続の期日は、職権で、裁判長が 指定する。

- 2 家事事件の手続の期日は、やむを得ない場合に限り、日曜日その他の一般の休日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事事件の手続の期日の変更は、顕著な事由がある場合に限り、することができる。

제32조

- ① 재판소는 가사사건절차의 준비 및 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그 지출로 인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상의 구조의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부당한 목적으로 가사심판 또는 가사조정의 신청, 그 밖의 절차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민사소송법」 제82조제2항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같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절차상의 구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4조 중 "제82조제1항 본문"은 "「가사사건절차법」 제32조제1항 본문"으로 대체한다.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 등

제33조(절차의 비공개)

가사사건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방청 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기일 및 기간)

- ① 가사사건절차의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 ② 가사사건절차의 기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그 밖에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가사사건절차의 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民事訴訟法第九十四条から第九十七条までの規定は、家事事件の手続の期日及び期間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五条 (手続の併合等)

裁判所は、家事事件の手続を併合し、又は分離することができる。

- 2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る裁判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3 裁判所は、当事者を異にする家事事件について手続の併合を命じた場合において、その前に尋問をした証人について、尋問の機会がなかった当事者が尋問の申出をしたときは、その尋問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六条(送達及び手続の中止)

送達及び家事事件の手続の中止については、 民事訴訟法第一編第五章第四節及び第百三十 条から第百三十二条まで(同条第一項を除 く。)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 て、同法第百十三条中「その訴訟の目的であ る請求又は防御の方法」とあるのは、「裁判 又は調停を求める事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第三十七条(裁判所書記官の処分に対する異 議)

裁判所書記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の申立てについては、その裁判所書記官の所属する裁判 所が裁判をする。

2 前項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④ 「민사소송법」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은 가사사건절차의 기일 및 기간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35조(절차의 병합 등)

- ① 재판소는 가사사건절차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②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재판소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가사사건에 대하여 절차의 병합을 명한 경우, 그전에 심문을 한 증인에 대하여 심문의 기회가 없었던 당사자가 심문 신청을 했을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송달 및 절차의 중지)

송달 및 가사사건절차의 중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5장제4절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같은 조 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제113조 중 "소송의 목적인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은 "재판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대체한다.

제37조(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① 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그가 소속된 재판소가 재판을 한다.
- ② 전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第八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申立て 等

第三十八条

家事事件の手続における申立てその他の申述 (次項において「申立て等」という。)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三十二条の十第一項 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支払督促に関する部 分を除く。)を準用する。

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三十 二条の十第一項本文の規定によりされた申立 て等に係る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よる家事事 件の記録の閲覧若しくは謄写又はその正本、 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は、同条第五項の書 面をもってするものとする。当該申立て等に 係る書類の送達又は送付も、同様とする。

第二編 家事審判に関する手続

第一章 総則

第一節 家事審判の手続

第一款 通則

第三十九条(審判事項)

家庭裁判所は、この編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別表第一及び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並びに同編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審判をする。

第四十条(参与員)

家庭裁判所は、参与員の意見を聴いて、審判をする。ただし、家庭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意見を聴かないで、審判をする

제8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38조

① 가사사건절차의 신청, 그 밖의 진술(다음 항에서 "신청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32조의10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지급 독촉에 관한 부분을 제 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132조의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신청 등과 관련된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른 가사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은 같은 조 제5항의 서면으로 한다. 해당 신청 등과 관련된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도 같다.

제2편 가사심판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제1절 가사심판절차

제1관 통칙

제39조(심판사항)

가정재판소는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제1과 별표 제2의 사항 및 같은 편에 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40조(참여원)

① 가정재판소는 참여원의 의견을 들어 심판을 한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을

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参与員を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る。
- 3 参与員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第一項の意見を述べるために、申立人が提出した資料の内容について、申立人から説明を聴くことができる。ただし、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4 参与員の員数は、各事件について一人以上とする。
- 5 参与員は、毎年あらかじめ家庭裁判所の選任した者の中から、事件ごとに家庭裁判所が 指定する。
- 6 前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る者の資格、員数その他同項の規定による選任に関し必要な 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 7 参与員に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額の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支給する。

第四十一条(当事者参加)

当事者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は、当事者として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他の当事者となる資格を有する者(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に限る。)を、当事者として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申出及び前項の

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참여원을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참여원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제1 항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 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설 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참여원의 정원은 각 사건에 대하여 한 명 이상으로 한다.
- ⑤ 참여원은 매년 미리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사람 중에서 사건마다 가정재판소가 지정한다.
- ⑥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의 자격, 정원, 그 밖에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⑦ 참여원에게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액수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제41조(당사자참가)

- ①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사자로서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른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 람에 한한다)을 당사자로서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 및 전항

申立ては、参加の趣旨及び理由を記載した書 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申出を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二条 (利害関係参加)

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は、家事審判の 手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

- 2 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以外の者であって、審判の結果により直接の影響を受ける もの又は当事者となる資格を有するものは、 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家事審判の手続に 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職権 で、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及び前項に 規定する者を、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させる ことができる。
- 4 前条第三項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 参加の申出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許 可の申立てについて準用する。
- 5 家庭裁判所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しようとする者が未成年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の年齢及び発達の程度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その者が当該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することがその者の利益を害すると認めるとき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申出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許可の申立て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参加の申出を却下する

- 의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조(이해관계참가)

- 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사심판절차 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가정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사람의 연령 및 발달의정도, 그 밖에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사람이 해당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하는 것이그 사람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허가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을 각하

裁判(前項の規定により第一項の規定による 参加の申出を却下する裁判を含む。) に対し 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り家事審判の手続に参加した者(以下「利害関係参加人」という。)は、当事者がすることができる手続行為(家事審判の申立ての取下げ及び変更並びに裁判に対する不服申立て及び裁判所書記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の取下げを除く。)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裁判に対する不服申立て及び裁判所書記官の処分に対する異議の申立てについては、利害関係参加人が不服申立て又は異議の申立てに関する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より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限る。

第四十三条(手続からの排除)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となる資格を有しない 者及び当事者である資格を喪失した者を家事 審判の手続から排除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排除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四条(法令により手続を続行すべき者 による受継)

当事者が死亡、資格の喪失その他の事由によって家事審判の手続を続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法令により手続を続行する資格のある者は、その手続を受け継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令により手続を続行する資格のある者が前項の規定による受継の申立て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裁判がされた

하는 재판(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사심판절차에 참가한 사람(이하 "이해관계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절차 행위(가사심판 신청의 취하와 변경 및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과 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취하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및 재판소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이해관계참가인이 불복신청 또는 이의 신청에 관한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3조(절차에서의 배제)

① 가정재판소는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및 당사자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가사심판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배제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 자에 의한 승계)

① 당사자가 사망, 자격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가사심판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차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이 있은 때에 ときは、当該裁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他の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法令により 手続を続行する資格のある者に家事審判の手 続を受け継がせ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五条(他の申立権者による受継)

家事審判の申立人が死亡、資格の喪失その他 の事由によってその手続を続行することがで きない場合において、法令により手続を続行 する資格のある者がないときは、当該家事審 判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その手 続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当該家事審判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その手続を受け継がせる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受継の申立て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受継の裁判は、第一項の事由が生じた日から一月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六条 (調書の作成等)

裁判所書記官は、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ついて、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証拠調べの期日以外の期日については、裁判長において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経過の要領を記録上明らかにすることをもって、これ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七条 (記録の閲覧等)

当事者又は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は、家

는 해당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다른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사심판절차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다른 신청권자에 의한 승계)

- ① 가사심판 신청인이 사망, 자격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 우, 법령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해당 가사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사심판 신청 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절차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 신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재판은 제1항의 사유가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조(조서의 작성 등)

재판소서기관은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 기 일 이외의 기일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요령을 기록상 명 백히 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47조(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裁判所書記官に対し、家事審判事件の記録の閲覧若しくは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家事審判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の交付(第二百八十九条第六項において「記録の閲覧等」という。)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家事審判事件の記録中の録音テープ又はビデオテープ(これら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記録した物を含む。)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事者又は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裁判所書記官に対し、これらの物の複製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から前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家庭裁判所は、事件の関係人である未成年 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当事者若しくは第 三者の私生活若しくは業務の平穏を害するお それ又は当事者若しくは第三者の私生活についての重大な秘密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者が社会生活を営むのに著しい支障 を生じ、若しくはその者の名誉を著しく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前項の 規定にかかわらず、同項の申立てを許可しないことができる。事件の性質、審理の状況、 記録の内容等に照らして当該当事者に同項の 申立てを許可することを不適当とする特別の 事情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も、同様とする。

5 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から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서기관에게 가사심판 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또는 가사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제289조제6항에 서 "기록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가사심판 사건 기록 중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이러한 것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서 기관에게 이러한 것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는 당사자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가정재판소는 사건관계인인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 당사자나 제3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칠 우려 또는 당사자나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드러나게 되어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지장이 발생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당사자에게같은 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⑤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6 審判書その他の裁判書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家事審判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については、当事者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ないで、裁判所書記官に対し、そ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を受ける者が当該審判があった後に請求する場合も、同様とする。

7 家事審判事件の記録の閲覧、謄写及び複製の請求は、家事審判事件の記録の保存又は裁判所の執務に支障があるとき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8 第三項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9 前項の規定による即時抗告が家事審判の手続を不当に遅滞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された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原裁判所は、その即時抗告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10 前項の規定によ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 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八条(検察官に対する通知)

裁判所その他の官庁、検察官又は吏員は、その職務上検察官の申立てにより審判をすべき場合が生じたことを知ったときは、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款 家事審判の申立て

신청을 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심판서, 그 밖의 재판서의 정본, 등본이 나 초본 또는 가사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재판소서기관에게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이 해당 심판이 있은 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⑦ 가사심판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및 복제의 청구는 가사심판 사건 기록의 보존 또는 재판소의 집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할 수없다.

⑧ 제3항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전항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가 가사심판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재판소는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①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해서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조(검찰관에 대한 통지)

재판소, 그 밖의 관청, 검찰관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찰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가사심판 신청

第四十九条 (申立ての方式等)

家事審判の申立ては、申立書(以下「家事審判の申立書」という。)を家庭裁判所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2 家事審判の申立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 二 申立ての趣旨及び理由
- 3 申立人は、二以上の事項について審判を求め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手続が同種であり、これらの事項が同一の事実上及び法律上の原因に基づくときは、一の申立てにより求めることができる。
- 4 家事審判の申立書が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場合には、裁判長は、相当の期間を定め、その期間内に不備を補正すべきこと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六年法律第四十号)の規定に従い家事審判の申立ての手数料を納付し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 5 前項の場合において、申立人が不備を補正 しないときは、裁判長は、命令で、家事審判 の申立書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前項の命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条(申立ての変更)

申立人は、申立ての基礎に変更がない限り、 申立ての趣旨又は理由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

제49조(신청의 방식 등)

- ① 가사심판은 가정재판소에 신청서(이하 "가 사심판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 ② 가사심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③ 신청인은 둘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절차가 같은 종류이고, 이러한 사항이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 원인에 근거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
- ④ 가사심판 신청서가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한다. 「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1971년 법률 제40호)의 규정에 따라 가사심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⑤ 전항의 경우, 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가사심판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

る。ただし、第七十一条(第百八十八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審理を終結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 2 申立ての趣旨又は理由の変更は、家事審判 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する場合を除き、書面 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家庭裁判所は、申立ての趣旨又は理由の変 更が不適法であるときは、その変更を許さな い旨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申立ての趣旨又は理由の変更により家事審判の手続が著しく遅滞することとな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変更を許さない旨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款 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

第五十一条(事件の関係人の呼出し)

家庭裁判所は、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事件 の関係人を呼び出すことができる。

- 2 呼出しを受けた事件の関係人は、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代理人を出頭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前項の事件の関係人が正当な理由なく出頭 し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五万円以下の 過料に処する。

第五十二条(裁判長の手続指揮権)

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は、裁判長が 手続を指揮する。

2 裁判長は、発言を許し、又はその命令に従

- 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18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종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청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은 가사심 판절차 기일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신청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가정재판 소는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3관 가사심판절차 기일

제51조(사건관계인의 소환)

- ① 가정재판소는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사건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소환을 받은 사건관계인은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사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5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제52조(재판장의 절차지휘권)

- ① 가사심판절차 기일에는 재판장이 절차를 지휘한다.
-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わない者の発言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3 当事者が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ける裁判長の指揮に関する命令に対し異議を述べ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異議について裁判をする。

第五十三条(受命裁判官による手続)

家庭裁判所は、受命裁判官に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ける手続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については、第六十一条第三項の規定又は第六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二編第四章第一節から第六節までの規定により受命裁判官が事実の調査又は証拠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限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及び裁 判長の職務は、その裁判官が行う。

第五十四条(音声の送受信による通話の方法 による手続)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が遠隔の地に居住しているときその他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意見を聴いて、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庭裁判所及び当事者双方が音声の送受信により同時に通話を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によって、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ける手続(証拠調べを除く。)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出頭しないで前項の手続に関与した者は、その期日に出頭したものとみなす。

第五十五条(通訳人の立会い等その他の措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가사심판절차 기일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이의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53조(수명재판관에 의한 절차)

① 가정재판소는 수명재판관에게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제61조제3항의 규정 또는 제6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명재판관이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는 가정재판소 및 재판장의 직무는 재판관이 수행한다.

제54조(음성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따른 절차)

① 가정재판소는 당사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재판소 및 당사자쌍방이 음성 송수신으로 동시에 통화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절차(증거조사를 제외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5조(통역인의 참여 등 및 그 밖의 조치)

置)

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ける通訳人の立会 い等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五十四条の規 定を、家事審判事件の手続関係を明瞭にする ために必要な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当事 者、利害関係参加人、代理人及び補佐人に対 する措置については同法第百五十五条の規定 を準用する。

第四款 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

第五十六条(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等)

家庭裁判所は、職権で事実の調査をし、かつ、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必要と認める 証拠調べ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当事者は、適切かつ迅速な審理及び審判の実現のため、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

第五十七条 (疎明)

疎明は、即時に取り調べることができる資料 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事実の 調査)

家庭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急迫の事情があるときは、裁判長が、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調査官は、事実の調査の結果を 書面又は口頭で家庭裁判所に報告するものと

가사심판절차 기일의 통역인 참여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54조의 규정을, 가사심판 사건의 절차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이해관계참가인, 대리인 및 보좌인에 대한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제56조(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 ①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신청이나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 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적절하고 신속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에 협력한다.

제57조(소명)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58조(가정재판소 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 ①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가 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가정재판소에 보고한다.

する。

4 家庭裁判所調査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に意見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1

第五十九条 (家庭裁判所調査官の期日への立 会い等)

家庭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家庭裁判所調査官を 立ち会わせ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より立ち会わせた家庭裁判所調査官に意見を述べ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家事審判事件の処理に関し、事件の関係人の家庭環境その他の環境の調整を行う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社会福祉機関との連絡その他の措置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
- 4 急迫の事情があるときは、裁判長が、前項の措置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条(裁判所技官による診断等)

家庭裁判所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医師である裁判所技官に事件の関係人の心身 の状況について診断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第五十八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 前項の診断について、前条第一項及び第二項 の規定は裁判所技官の期日への立会い及び意 見の陳述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十一条(事実の調査の嘱託等)

家庭裁判所は、他の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

④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9조(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기일 참여 등)

- ①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가정재판소 조사관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도록 한 가정재판 소 조사관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가사심판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의 가정환경, 그 밖의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연락,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전 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재판소 기관의 진단 등)

- ①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인 재판소 기관에게 사건관계인의 심신상태에 대하여 진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진단에 대하여, 전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재판소 기관의 기일 참여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1조(사실조사의 촉탁 등)

① 가정재판소는 다른 가정재판소 또는 간이

所に事実の調査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嘱託により職務を行う受 託裁判官は、他の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 において事実の調査をすることを相当と認め るときは、更に事実の調査の嘱託をすること 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受命裁判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4 前三項の規定により受託裁判官又は受命裁 判官が事実の調査をする場合には、家庭裁判 所及び裁判長の職務は、その裁判官が行う。

第六十二条 (調査の嘱託等)

家庭裁判所は、必要な調査を官庁、公署その 他適当と認める者に嘱託し、又は銀行、信託 会社、関係人の使用者その他の者に対し関係 人の預金、信託財産、収入その他の事項に関 して必要な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三条(事実の調査の通知)

家庭裁判所は、事実の調査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結果が当事者による家事審判の手続の追行に重要な変更を生じ得るもの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当事者及び利害関係参加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四条(証拠調べ)

家事審判の手続における証拠調べについて は、民事訴訟法第二編第四章第一節から第六 節までの規定(同法第百七十九条、第百八十 재판소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탁재판관은 다른 가정재판소 또 는 간이재판소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사실조사를 촉 탁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명재판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재판관 또는 수명재판관이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 정재판소 및 재판장의 직무는 재판관이 수행 한다.

제62조(조사의 촉탁 등)

가정재판소는 관청, 공공기관,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관계인의 사용자, 그밖의 자에게 관계인의 예금, 신탁재산, 수입,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사실조사의 통지)

가정재판소는 사실조사를 한 결과 당사자의 가사심판절차의 추행에 중요한 변경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당사자와 이 해관계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증거조사)

① 가사심판절차의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제1절부터 제6절 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179조, 제182조, 제 二条、第百八十七条から第百八十九条まで、 第二百七条第二項、第二百八条、第二百二十四条(同法第二百二十九条第二項及び第二百三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二十九条第四項の規定を除く。)を準用する。

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3 当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同法第二百三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提出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又は正当な理由なく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三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提示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

二書証を妨げる目的で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二百二十条(同法第二百三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提出の義務がある文書(同法第二百三十一条に規定する文書に準ずる物件を含む。)を滅失させ、その他これ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とき、又は検証を妨げる目的で検証の目的を滅失させ、その他これ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とき。

4 当事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

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07조제2항, 제208조, 제224조(같은 법 제229조제2항 및 제23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9조제4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③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2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1.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223조제1항(같은 법 제2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2. 서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같은 법 제2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같은 법 제231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준하는 물건을 포함한다)를 멸실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또는 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검증의 목적을 멸실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④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10만 엔 이하의 과

する。

一 正当な理由なく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二百二十九条第二項(同法第二百三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二百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提出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

二 対照の用に供することを妨げる目的で対照 の用に供すべき筆跡又は印影を備える文書そ の他の物件を滅失させ、その他これを使用す 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とき。

三 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二百二十九条第三項(同法第二百三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決定に正当な理由なく従わないとき、又は当該決定に係る対照の用に供すべき文字を書体を変えて筆記したとき。

5 家庭裁判所は、当事者本人を尋問する場合には、その当事者に対し、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出頭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6 民事訴訟法第百九十二条から第百九十四条 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出頭を命じら れた当事者が正当な理由なく出頭しない場合 について、同法第二百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 の規定は出頭した当事者が正当な理由なく宣 誓又は陳述を拒んだ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五款 家事審判の手続における子の意 思の把握等

第六十五条

家庭裁判所は、親子、親権又は未成年後見に

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29조제2항(같은 법 제2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2. 대조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목 적으로 대조의 용도로 제공해야 하는 필적 또는 인영을 갖춘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멸 실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3.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229조제3항(같은 법 제2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 또는 해당결정과 관련된 대조의 용도로 제공해야 하는 문자의 서체를 바꿔 필기했을 때

⑤ 가정재판소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민사소송법」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명령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출석한 당사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관 가사심판절차의 자녀의 의사 파 악 등

제65조

가정재판소는 부모•자녀, 친권 또는 미성년

関する家事審判その他未成年者である子(未成年被後見人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その結果により影響を受ける家事審判の手続においては、子の陳述の聴取、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調査その他の適切な方法により、子の意思を把握するように努め、審判をするに当たり、子の年齢及び発達の程度に応じて、その意思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款 家事調停を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手続の特則

第六十六条 (合意管轄)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は、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より定める家庭裁判所のほか、当事者が合意で定め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民事訴訟法第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合意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六十七条(家事審判の申立書の写しの送付 等)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 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申 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 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家事審判の 申立書の写しを相手方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 ない。ただし、家事審判の手続の円滑な進行 を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 家事審判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通知するこ とをもって、家事審判の申立書の写しの送付 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2 第四十九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후견에 관한 가사심판, 그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미성년피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 사심판절차에서는 자녀의 진술 청취, 가정재 판소 조사관의 조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심판을 할 때에 자녀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에 따라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관 가사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절차의 특칙

제66조(합의관할)

- ①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은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정재판소 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가정재판소 의 관할로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7조(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의 송달 등)

- ①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신청이 부적법하 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를 제 외하고는 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사심판 신청이 있은 사실을 통지함 으로써 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의 송달을 대신 할 수 있다.
- ②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전

は、前項の規定による家事審判の申立書の写 しの送付又はこれに代わる通知をすることが でき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3 裁判長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家事審判の申立書の写しの送付又はこれに代わる通知の費用の予納を相当の期間を定めて申立人に命じた場合において、その予納がないときは、命令で、家事審判の申立書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命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十八条 (陳述の聴取)

家庭裁判所は、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手続において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当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よる陳述の聴取は、当事者の申出があるときは、審問の期日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十九条(審問の期日)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 手続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が審問の期日を 開いて当事者の陳述を聴くことにより事実の 調査をするときは、他の当事者は、当該期日 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他の 当事者が当該期日に立ち会うことにより事実 の調査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 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七十条(事実の調査の通知)

항의 규정에 따른 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의 송달 또는 이를 갈음하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재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사심판 신청서 사본의 송달 또는 이를 갈음하는 통 지 비용의 예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 청인에게 명한 경우, 신청인이 예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명령으로 가사심판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진술 청취)

① 가정재판소는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 사심판절차에서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 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 기일에 들어야 한다.

제69조(심문 기일)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절차에서는 가정재판소가 심문 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다른 당사자가 해당 기일에 참여 함으로써 사실조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사실조사의 통지)

家庭裁判所は、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手続において、事実の調査をしたときは、特に必要がないと認める場合を除き、その旨を当事者及び利害関係参加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一条 (審理の終結)

家庭裁判所は、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手続において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相当の猶予期間を置いて、審理を終結する日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事者双方が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は、直ちに審理を終結する旨を宣言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二条 (審判日)

家庭裁判所は、前条の規定により審理を終結 したときは、審判をする日を定めなければな らない。

第七款 審判等

第七十三条 (審判)

家庭裁判所は、家事審判事件が裁判をするの に熟したときは、審判をする。

2 家庭裁判所は、家事審判事件の一部が裁判 をするのに熟したときは、その一部について 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手続の併合を命じ た数個の家事審判事件中その一が裁判をする のに熟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가정재판소는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사 심판절차에서 사실조사를 했을 때에는 특별 히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내용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심리 종결)

가정재판소는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사 심판절차에서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당 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날을 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심판절차 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2조(심판일)

가정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종 결했을 때에는 심판을 할 날을 정하여야 한 다.

제7관 심판 등

제73조(심판)

- ① 가정재판소는 가사심판 사건이 재판을 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심판을 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가사심판 사건의 일부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할 수 있다. 절차의 병합을 명한 여러 개의 가사심판 사건 중 하나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도 같다.

第七十四条(審判の告知及び効力の発生等)

1

審判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事 者及び利害関係参加人並びにこれらの者以外 の審判を受ける者に対し、相当と認める方法 で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審判(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を除く。)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審判を受ける者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うちの一人)に告知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ただ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 3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は、申立人に告知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4 審判は、即時抗告の期間の満了前には確定しないものとする。
- 5 審判の確定は、前項の期間内にした即時抗告の提起により、遮断される。

第七十五条 (審判の執行力)

金銭の支払、物の引渡し、登記義務の履行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審判は、執行力のある債務名義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七十六条 (審判の方式及び審判書)

審判は、審判書を作成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審判については、家事審判の申立書又は調書 に主文を記載することをもって、審判書の作 成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2 審判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

제74조(심판의 고지 및 효력의 발생 등)

-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참가인 및 이러한사람 이외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심판(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을 제외한다) 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을 받는 사람(심판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에는 그중 한 명)에게 고지함으로 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
- ③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심판은 즉시항고 기간 만료 전에는 확정 되지 아니한다.
- ⑤ 심판의 확정은 전항의 기간 내에 제기한 즉시항고 제기에 의하여 차단된다.

제75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무의 이행, 그 밖에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6조(심판의 방식 및 심판서)

- ① 심판은 심판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는 가사심판 신청서 또는 조서에 주문을 기 재함으로써 심판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ればならない。

- 一 主文
- 二 理由の要旨
- 三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四 裁判所

第七十七条 (更正決定)

審判に計算違い、誤記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 明白な誤り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申 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いつでも更正決定を することができる。

- 2 更正決定は、裁判書を作成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更正決定に対しては、更正後の審判が原審 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 できる者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4 第一項の申立て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審判に対し適法な即時抗告があったときは、前二項の即時抗告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七十八条 (審判の取消し又は変更)

家庭裁判所は、審判をした後、その審判を不 当と認めるときは、次に掲げる審判を除き、 職権で、これを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こと ができる。 여야 한다.

- 1. 주문
- 2. 이유의 요지
- 3.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4. 재판소

제77조(경정결정)

- ① 심판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가정 재판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경정결정은 재판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
- ③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경정 후의 심판이 원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 람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즉시항고가 있은 때에는 전2항의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제78조(심판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가정재판소는 심판을 한 후 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一 申立てによってのみ審判をすべき場合にお いて申立てを却下した審判
- 二 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
- 2 審判が確定し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る取消し 又は変更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事情の変更によりその審判を不当と認めるに至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審判の 取消し又は変更をする場合には、その審判に おける当事者及びその他の審判を受ける者の 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消し又は変更の審判に対しては、取消し後又は変更後の審判が原審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九条 (審判に関する民事訴訟法の準 用)

民事訴訟法第二百四十七条、第二百五十六条 第一項及び第二百五十八条(第二項後段を除 く。)の規定は、審判について準用する。こ 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二百五十六条第一項 中「言渡し後」とあるのは、「審判が告知を 受ける者に最初に告知された日から」と読み 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十九条の二 (外国裁判所の家事事件についての確定した裁判の効力)

外国裁判所の家事事件についての確定した裁 判(これに準ずる公的機関の判断を含む。)

- 1. 신청에 의해서만 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심판
-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 ②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취 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었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 및 그 밖에 심판을 받는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심판에 대해서는 취소 후 또는 변경 후의 심판이 원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56조제1항 및 제258조(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 중 "선고 후"는 "심판이 고지를 받는 사람에게 최초로 고지된 날부터"로 대체한다.

제79조의2(외국 재판소의 가사사건에 대한 확정재판의 효력)

외국 재판소의 가사사건에 대한 확정재판(이 에 준하는 공적기관의 판단을 포함한다)에 について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民事 訴訟法第百十八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八十条 (中間決定)

家庭裁判所は、審判の前提となる法律関係の 争いその他中間の争いについて、裁判をする のに熟したときは、中間決定をすることがで きる。

2 中間決定は、裁判書を作成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一条 (審判以外の裁判)

家庭裁判所は、家事審判の手続においては、 審判をする場合を除き、決定で裁判をする。 この場合には、第七十三条から第七十九条ま で(第七十四条第二項ただし書、第七十六条 第一項及び第七十八条第三項を除く。)の規 定を準用する。

- 2 家事審判の手続の指揮に関する裁判は、いつでも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3 審判以外の裁判は、判事補が単独で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八款 取下げによる事件の終了

第八十二条(家事審判の申立ての取下げ)

家事審判の申立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 を除き、審判があるまで、その全部又は一部 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2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 の申立ては、審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全部 又は一部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ただ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 소송법」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중간판결)

- ① 가정재판소는 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다툼, 그 밖에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판결은 재판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

제81조 (심판 이외의 재판)

- ① 가정재판소는 가사심판절차에서는 심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제74조제2항 단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가사심판절차의 지휘에 관한 재판은 언제 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심판 이외의 재판은 판사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제8관 취하에 의한 사건의 종료

제82조(가사심판 신청의 취하)

- ① 가사심판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 신청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취하는 심판이

し、申立ての取下げは、審判がされた後にあっては、相手方の同意を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3 前項ただし書及び第百五十三条(第百九十 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により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相手方の同意 を要する場合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は、相 手方に対し、申立ての取下げがあったことを 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立ての 取下げが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口頭 でされた場合において、相手方がその期日に 出頭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前項本文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 二週間以内に相手方が異議を述べないとき は、申立ての取下げに同意したものとみな す。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場合におい て、申立ての取下げがあった日から二週間以 内に相手方が異議を述べないときも、同様と する。

5 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条第三項及び第二百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は、家事審判の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二百六十一条第三項ただし書中「口頭弁論、弁論準備手続又は和解の期日(以下この章において「口頭弁論等の期日」という。)」とあるのは、「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八十三条(家事審判の申立ての取下げの擬制)

家事審判の申立人(第百五十三条(第百九十 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により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相手方の同意 있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전항 단서 및 제153조(제19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경우는 가정재판소는 상대방에게 신청 취하가 있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취하가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구두로 된경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신청 취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⑤ 「민사소송법」 제261조제3항 및 제262 조제1항의 규정은 가사심판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단서 중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또 는 화해의 기일(이하 이 장에서 "구두변론 등의 기일"이라 한다)"은 "가사심판절차 기 일"로 대체한다.

제83조(가사심판 신청 취하의 의제)

가사심판 신청인(제153조(제19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を要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事者双方)が、 連続して二回、呼出しを受けた家事審判の手 続の期日に出頭せず、又は呼出しを受けた家 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陳述をしないで 退席を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申立ての 取下げ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第九款 高等裁判所が第一審として行う 手続

第八十四条

高等裁判所が第一審として家事審判の手続を 行う場合におけるこの節の規定の適用につい ては、同節の規定(第五十八条、第五十九条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六十一条第一項及 び第二項並びに第六十五条の規定を除く。) 中「家庭裁判所」とあるのは「高等裁判所」 と、第三十九条、第四十七条第六項、第四十 九条第三項、第五十六条第二項、第六十五 条、第七十二条、第七十三条、第七十四条第 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二項ただし書を除 〈。)、第七十五条、第七十七条第一項、第 七十八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四項を除 (。)、第七十九条、第八十条第一項、第八 十一条第一項並びに第八十二条第一項及び第 二項中「審判」とあるのは「審判に代わる裁 判」と、第四十二条第二項中「審判の結果」 とあるのは「審判に代わる裁判の結果」と、 第五十八条第一項、第五十九条第一項から第 三項まで、第六十一条第一項及び第六十五条 中「家庭裁判所は」とあるのは「高等裁判所 は」と、第五十八条第三項中「家庭裁判所 に」とあるのは「高等裁判所に」と、第七十 六条中「審判書」とあるのは「裁判書」と、 同条第一項中「審判は」とあるのは「審判に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소환을 받은 가사심 판절차 기일에 연속하여 2회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진술하지 아니 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제9관 고등재판소가 제1심으로 진행하 는 절차

제84조

① 고등재판소가 제1심으로 가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는 같은 절의 규정(제58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65조 의 규정을 제외한다) 중 "가정재판소"는 "고 등재판소"로, 제39조, 제47조제6항, 제49조제 3항, 제56조제2항,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 단서를 제 외한다), 제75조, 제77조제1항, 제78조(제1 항제2호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79조, 제 80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과 제2항 중 "심판"은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 로, 제42조제2항 중 "심판의 결과"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의 결과"로, 제58조제1항, 제59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및 제 65조 중 "가정재판소는"은 "고등재판소는"으 로, 제58조제3항 중 "가정재판소에"는 "고등 재판소에"로, 제76조 중 "심판서"는 "재판서" 로, 같은 조 제1항 중 "심판은"은 "심판을 갈 음하는 재판은"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은 "가정재판소의 심 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 "으로, 제78조제1항제2호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가정재판소 代わる裁判は」と、同項ただし書中「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審判」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の審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審判に代わる裁判」と、第七十八条第一項第二号中「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の審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に代わる裁判」とする。

2 第四十条及び第四十八条の規定は、高等裁判所が第一審として家事審判の手続を行う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二節 不服申立て

第一款 審判に対する不服申立て

第一目 即時抗告

第八十五条(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 判)

審判に対し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手続費用の負担の裁判に対しては、独立して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八十六条 (即時抗告期間)

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二週間の不変期間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期間前に提起した即時抗告の効力を妨げない。

2 即時抗告の期間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即時抗告をす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者が審判

의 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 판을 갈음하는 재판"으로 한다.

② 제40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고등재판소 가 제1심으로 가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불복신청 제1관 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1목 즉시항고

제85조(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

- ① 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절차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제86조(즉시항고 기간)

- 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의 불변기간 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제기한 즉시항고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② 즉시항고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하는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이 심

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審判の告知を受ける 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申立人が審判の告知 を受けた日(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日のう ち最も遅い日)から、それぞれ進行する。

第八十七条(即時抗告の提起の方式等)

即時抗告は、抗告状を原裁判所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抗告状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 二 原審判の表示及びその審判に対して即時抗 告をする旨
- 3 即時抗告が不適法でその不備を補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きは、原 裁判所は、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前項の即時抗告は、一週間の不変期間内に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期間前に 提起した即時抗告の効力を妨げない。
- 6 第四十九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抗 告状が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場合及び民事 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従い即時抗 告の提起の手数料を納付しない場合について 準用する。

第八十八条 (抗告状の写しの送付等)

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があった場合には、抗 告裁判所は、即時抗告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 は即時抗告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 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신청인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둘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일 중 가 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87조(즉시항고의 제기 방식 등)

- ① 즉시항고는 항고장을 원심재판소에 제출 함으로써 한다.
- ② 항고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2. 원심판의 표시 및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의 사실
- ③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할 때에는 원심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즉시항고는 1주의 불변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제기한 즉시항고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⑥ 제49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항고장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및 「민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8조(항고장 사본의 송달 등)

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은 경우에는 항고재판소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할 때 또는 즉시항고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 を除き、原審における当事者及び利害関係参加人(抗告人を除く。)に対し、抗告状の写しを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抗告審における手続の円滑な進行を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即時抗告があったことを通知することをもって、抗告状の写しの送付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抗告状の写しの送付又はこれに代わる通知の費用の予納を相当の期間を定めて抗告人に命じた場合において、その予納がないときは、命令で、抗告状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十九条 (陳述の聴取)

抗告裁判所は、原審における当事者及びその 他の審判を受ける者(抗告人を除く。)の陳 述を聴かなければ、原審判を取り消すことが できない。

2 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においては、抗告裁判所は、即時抗告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即時抗告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原審における当事者(抗告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条(原裁判所による更正)

原裁判所は、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審判を更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については、更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九十一条(抗告裁判所による裁判)

하고는 원심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참가인(항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항고장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있은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항고장 사본의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장 사본의 송달 또는 이를 갈음하는 통지 비용의 예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명한 경우, 항고인이 예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89조(진술 청취)

① 항고재판소는 원심의 당사자 및 그 밖에 심판을 받는 사람(항고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는 항고재판소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할 때 또는 즉시항고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 하고는 원심의 당사자(항고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90조(원심재판소에 의한 경정)

원심재판소는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을 경정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에대해서는 경정할 수 없다.

제91조(항고재판소에 의한 재판)

抗告裁判所は、即時抗告について決定で裁判 をする。

2 抗告裁判所は、即時抗告を理由があると認める場合には、家事審判事件について自ら審判に代わる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九十三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三百七条又は第三百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第一審裁判所に差し戻す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九十二条(原審の管轄違いの場合の取扱 い)

抗告裁判所は、家事審判事件(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除く。)の全部又は一部が原裁判所の管轄に属し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原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原審における審理の経過、事件の性質、抗告の理由等に照らして原審判を取り消さないことを相当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抗告裁判所は、家事審判事件が管轄違いで 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原審判を取り消すとき は、その事件を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に 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十三条 (家事審判の手続の規定及び民事 訴訟法の準用等)

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及びその抗告審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前節第一款から第八款までの規定(第四十条、第四十一条第四項、第四十二条第六項、第四十三条第二項、第四十四条第二項、第四十七条第八項から第十項まで、第四十八

- ① 항고재판소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 ② 항고재판소는 즉시항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심판 사건에 대하여 직접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07조 또는 제308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사건을 제1심재판소로 환송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원심의 관할이 다른 경우의 취급)

- ① 항고재판소는 가사심판 사건(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 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 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 심리의 경과, 사건의 성질, 항고의 이유 등에 비추어 원심판을 취 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② 항고재판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을 취소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93조(가사심판절차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항고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절 제1관부터 제8관까지의 규정(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8조, 제49조제6항, 제66조, 제

条、第四十九条第六項、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第四項、第七十四条第二項ただし書、第四項及び第五項、第七十六条第一項ただし書、第七十七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第七十八条第四項、第八十一条第三項並びに第八十三条の規定を除く。)、第四節の規定(第百五条第二項、第百十条、第百十一条及び第百十三条の規定を除く。)及び次章の規定(家庭裁判所の管轄及び即時抗告に関する規定を除く。)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七十八条第一項第二号中「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とあるのは、「家庭裁判所の審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審判に代わる裁判」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抗告裁判所は、第八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抗告状の写しの送付及びこれに代わる即時抗告があったことの通知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ときは、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七十一条の規定による審理の終結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即時抗告を却下し、又は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67조제4항, 제74조제2항 단서, 제4항과 제5항,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8조제4항, 제81조제3항 및 제8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절의 규정(제105조제2항,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다음 장의 규정(가정재판소의 관할 및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2호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가정재판소의 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로 대체한다.

② 항고재판소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장 사본의 송달 및 이를 갈음하는 즉시항고가 있은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심리종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항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법」제283조,제284조,제292조,제298조제1항,제299조제1항,제302조,제303조 및제305조부터 제308조까지의 규정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및 항고심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같은법 제292조제2항 중 "제261조제3항,제262조제1항 및 제263조"는 "「가사사건절차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로,같은법제303조제5항 중 "제189조"는 "「가사사건절차법」제291조"로 대체한다.

十一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目 特別抗告

第九十四条(特別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裁 判等)

家庭裁判所の審判で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及び高等裁判所の家事審判事件についての決定に対しては、その裁判に憲法の解釈の誤りがあることその他憲法の違反が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ときに、最高裁判所に特に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抗告(以下「特別抗告」という。) が係属する抗告裁判所は、抗告状又は抗告理 由書に記載された特別抗告の理由についての み調査をする。

第九十五条 (原裁判の執行停止)

特別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ただし、前条第二項の抗告裁判所又は原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担保を立てさせて、又は立てさせないで、特別抗告について裁判があるまで、原裁判の執行の停止その他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担保を立てる場合において、供託をするには、担保を立てるべきことを命じた裁判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区域内の供託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民事訴訟法第七十六条、第七十七条、第七十九条及び第八十条の規定は、前項の担保について準用する。

제2목 특별항고

제94조(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① 불복할 수 없는 심판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에 최고재판소에 특별히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항고(이하 "특별항고"라 한다)를 접수한 항고재판소는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 서에 기재된 특별항고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 를 한다.

제95조(원재판의 집행정지)

- ① 특별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 제2항의 항고재판소 또는 원심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에 대하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③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전항의 담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十六条 (即時抗告の規定及び民事訴訟法 の準用)

第八十六条第二項、第八十七条から第八十九 条まで、第九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十三条の 規定は、特別抗告及びその抗告審に関する手 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 八十七条第六項中「及び第五項」とあるの は、「から第六項ま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 する。

2 民事訴訟法第三百十四条第二項、第三百十 五条、第三百十六条(第一項第一号を除 〈。)、第三百二十一条第一項、第三百二十 二条、第三百二十五条第一項前段、第二項、 第三項後段及び第四項、第三百二十六条並び に第三百三十六条第二項の規定は、特別抗告 及びその抗告審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三百十四条第 二項中「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八十八 条及び第二百八十九条第二項」とあるのは 「家事事件手続法第九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 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法第八十七条第六項」 と、同法第三百十六条第二項中「対しては」 とあるのは「対しては、一週間の不変期間内 に」と、同法第三百二十二条中「前二条」と あるのは「家事事件手続法第九十四条第二項 の規定及び同法第九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準 用する第三百二十一条第一項」と、同法第三 百二十五条第一項前段及び第二項中「第三百 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とあるのは「家事 事件手続法第九十四条第一項」と、同条第三 項後段中「この場合」とあるのは「差戻し又 は移送を受けた裁判所が裁判をする場合」 と、同条第四項中「前項」とあるのは「差戻 し又は移送を受けた裁判所」と読み替えるも

제96조(즉시항고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 의 준용)

① 제86조제2항,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제1항 및 제93조의 규정은 특별항고 및 항고심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제6항 중 "및 제5항"은 "부터 제6항까지"로 대체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314조제2항, 제315조, 제316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321조 제1항, 제322조, 제325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후단과 제4항, 제326조 및 제336조제 2항의 규정은 특별항고 및 항고심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4조제2항 중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288 조 및 제289조제2항 "은 "「가사사건절차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제6항"으로, 같은 법 제316 조제2항 중 "대해서는"은 "대해서는 1주의 불변기간 내에"로, 같은 법 제322조 중 "전2 조"는 "「가사사건절차법」 제94조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25조제1항 전단과 제2항 중 "제312조제1항 또는 제2 항"은 "「가사사건절차법」 제94조제1항"으 로,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는 "환 송 또는 이송을 받은 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재판소"로 대체한다.

のとする。

第三目 許可抗告

第九十七条(許可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裁 判等)

高等裁判所の家事審判事件についての決定 (次項の申立てについての決定を除く。)に 対しては、第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場 合のほか、その高等裁判所が次項の規定によ り許可したときに限り、最高裁判所に特に抗 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決定が 家庭裁判所の審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 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に限 る。

- 2 前項の高等裁判所は、同項の決定について、最高裁判所の判例(これ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大審院又は上告裁判所若しくは抗告裁判所である高等裁判所の判例)と相反する判断がある場合その他の法令の解釈に関する重要な事項を含む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申立てにより、抗告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申立てにおいては、第九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由を理由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
- 4 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があった場合には、第一項の抗告(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一項において「許可抗告」という。)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 5 許可抗告が係属する抗告裁判所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書又は同項の申立て に係る理由書に記載された許可抗告の理由に

제3목 허가항고

제97조(허가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등)

- ① 고등재판소의 가사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다음 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재판소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했을 때에 한하여 최고재판소에 특별히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이 가정재판소의 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일 때로 한정한다.
- ② 전항의 고등재판소는 같은 항의 결정에 대하여 최고재판소의 판례(판례가 없는 경우는 대심원 또는 상고재판소나 항고재판소인 고등재판소의 판례)에 배치되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신청은 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이유로 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항고(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허가항고"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⑤ 허가항고를 접수한 항고재판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항의 신청과 관련된 이유서에 기재된 허가항고 이

ついてのみ調査をする。

6 許可抗告が係属する抗告裁判所は、裁判に 影響を及ぼすことが明らかな法令の違反があ るときは、原決定を破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九十八条(即時抗告等の規定及び民事訴訟 法の準用)

第八十六条第二項、第八十七条(第四項及び 第五項を除く。)、第八十八条、第八十九 条、第九十一条第一項、第九十三条及び第九 十五条の規定は、許可抗告及びその抗告審に 関す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 いて、第八十六条第二項、第八十七条第一 項、第二項第二号及び第三項、第八十八条第 一項並びに第八十九条第二項中「即時抗告」 とあり、第八十七条第六項中「即時抗告の提 起」とあり、並びに第九十五条第一項本文中 「特別抗告」とあるのは「第九十七条第二項 の申立て」と、第八十七条第一項、第二項及 び第六項、第八十八条並びに第九十三条第二 項中「抗告状」とあるのは「第九十七条第二 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書」と、第九十一 条第一項並びに第九十三条第一項前段、第二 項及び第三項中「即時抗告」とあり、並びに 第九十五条第一項ただし書中「特別抗告」と あるのは「許可抗告」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 る。

2 民事訴訟法第三百十五条及び第三百三十六 条第二項の規定は前条第二項の申立てについ て、同法第三百十八条第三項の規定は前条第 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する場合について、 同法第三百十八条第四項後段、第三百二十一 条第一項、第三百二十二条、第三百二十五条 第一項前段、第二項、第三項後段及び第四項 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⑥ 허가항고를 접수한 항고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법령 위반이 있 을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

제98조(즉시항고 등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86조제2항, 제87조(제4항과 제5항을 제외한다),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허가항고 및 항고심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와 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 중 "즉시항고"와 제87조제6항 중 "즉시항고 제기" 및 제95조제1항 본문 중 "특별항고"는 "제97조제2항의 신청"으로, 제87조제1항, 제2항과 제6항, 제88조 및 제93조제2항 중 "항고장"은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서"로, 제91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전단, 제2항과 제3항 중 "즉시항고" 및 제95조제1항 단서 중 "특별항고"는 "허가항고"로 대체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315조 및 제336조제2 항의 규정은 전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8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8조제4항 후단, 제321조제1항, 제322조, 제325조제1항 전단, 제2항,·제3항 후단과 제4항 및 제326조의 규정은 전조 제

並びに第三百二十六条の規定は前条第二項の 規定による許可があ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三百十八条第 四項後段中「第三百二十条」とあるのは「家 事事件手続法第九十七条第五項」と、同法第 三百二十二条中「前二条」とあるのは「家事 事件手続法第九十七条第五項の規定及び同法 第九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百二 十一条第一項」と、同法第三百二十五条第一 項前段及び第二項中「第三百十二条第一項又 は第二項」とあるのは「家事事件手続法第九 十七条第二項」と、同条第三項後段中「この 場合」とあるのは「差戻し又は移送を受けた 裁判所が裁判をする場合」と、同条第四項中 「前項」とあるのは「差戻し又は移送を受け た裁判所」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款 審判以外の裁判に対する不服申 立て

第九十九条(不服申立ての対象)

審判以外の裁判に対して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条(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裁判に 対する異議)

受命裁判官又は受託裁判官の裁判に対して不服がある当事者は、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に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裁判が家庭裁判所の裁判であるとした場合に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に限る。

2 前項の異議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

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8조제4항 후단 중 "제320조"는 "「가사사건절차법」 제97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322조중 "전2조"는 "「가사사건절차법」 제97조제5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25조제1항 전단과 제2항 중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사사건절차법」 제97조제2항"으로, 같은 점 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는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재판소가 재판을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재판소"로 대체한다.

제2관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99조(불복신청의 대상)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0조(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

①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가사심판 사건이계속 중인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가정재판소의 재판인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일 때로 한정한다.

② 전항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一条 (即時抗告期間等)

審判以外の裁判に対する即時抗告は、一週間の不変期間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その期間前に提起した即時抗告の効力を妨げない。

2 前項の即時抗告は、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執行停止の効力を有しない。ただし、抗告裁判所又は原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担保を立てさせて、又は立てさせないで、即時抗告について裁判があるまで、原裁判の執行の停止その他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第九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担保を立てる場合における供託及び担保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二条(審判に対する不服申立ての規定の 準用)

前款の規定(第八十五条第一項、第八十六条 第一項並びに第八十八条及び第八十九条(これらの規定を第九十六条第一項及び第九十八 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 規定を除く。)は、裁判所、裁判官又は裁判 長がした審判以外の裁判に対する不服申立て 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節 再審

第百三条 (再審)

確定した審判その他の裁判(事件を完結する ものに限る。第五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즉시항고 기간 등)

①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 주의 불변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제기한 즉시항고의 효력을 방해하 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재판소 또는 원심재판 소는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시항고에 대하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9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공탁 및 담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2조(심판에 대한 불복신청 규정의 준용)

전관의 규정(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88조와 제89조(이러한 규정을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재판소, 재판관 또는 재판장이 한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재심

제103조(재심)

① 확정된 심판, 그 밖의 재판(사건을 완결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5항에서 같다)에 대

ては、再審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再審の手続に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各審級における手続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3 民事訴訟法第四編の規定(同法第三百四十一条及び第三百四十九条の規定を除く。)は、第一項の再審の申立て及びこれ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三百四十八条第一項中「不服申立ての限度で、本案の審理及び裁判をする」とあるのは、「本案の審理及び裁判をする」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4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三百四 十六条第一項の再審開始の決定に対する即時 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5 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三百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審判その他の裁判に対する再審の申立てを棄却する決定に対しては、当該審判その他の裁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限り、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条(執行停止の裁判)

裁判所は、前条第一項の再審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不服の理由として主張した事情が法律上理由があるとみえ、事実上の点につき疎明があり、かつ、執行により償うことができない損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ったときは、申立てにより、担保を立てさせて、若しくは立てさせないで強制執行の一時の停止を命じ、又は担保を立てさせて既にした執行処分の取消しを命ずる

해서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4편의 규정(같은 법 제341조 및 제34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재심 신청 및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8조제 1항 중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본안의 심리 및 재판을 하는"은 "본안의 심리 및 재판을 하는"으로 대체한다.

④ 전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346조제1항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⑤ 제3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그 밖의 재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 그 밖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4조(집행정지의 재판)

① 재판소는 전조 제1항의 재심 신청을 한경우, 재심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해 소명이 있으며,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정에 대해 소명이 있은 때에는,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

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 3 第九十五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 一項の規定により担保を立てる場合における 供託及び担保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節 審判前の保全処分

第百五条 (審判前の保全処分)

本案の家事審判事件(家事審判事件に係る事項について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家事調停事件)が係属する家庭裁判所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仮差押え、仮処分、財産の管理者の選任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本案の家事審判事件が高等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は、その高等裁判所が、前項の審判 に代わる裁判をする。

第百六条(審判前の保全処分の申立て等)

審判前の保全処分(前条第一項の審判及び同条第二項の審判に代わる裁判をいう。以下同 じ。)の申立ては、その趣旨及び保全処分を 求める事由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 い。

- 2 審判前の保全処分の申立人は、保全処分を求める事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家庭裁判所(前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は、審判前の保全処分の申

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제9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공탁 및 담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절 심판 전의 보전처분

제105조(심판 전의 보전처분)

- ① 본안의 가사심판 사건(가사심판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가사조정사건)이 계속하는 가정재판 소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재산관리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② 본안의 가사심판 사건이 고등재판소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등재판소가 전항의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을 한다.

제106조(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 등)

- ① 심판 전의 보전처분(전조 제1항의 심판 및 같은 조 제2항의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그 취지와 보전처분을 요청하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하 여야 한다.
- ② 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인은 보전처분을 요청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가정재판소(전조 제2항의 경우는 고등재판소)는 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에 있어서

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審判前の保全処分の申立ては、審判前の保 全処分があった後であっても、その全部又は 一部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七条 (陳述の聴取)

審判前の保全処分のうち仮の地位を定める仮 処分を命ずるものは、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 べき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 きない。ただし、その陳述を聴く手続を経る ことにより保全処分の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 き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百八条 (記録の閲覧等)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は、第四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審判前の保全処分の事件について、当事者から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審判前の保全処分の事件における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に対し、当該事件が係属したことを通知し、又は審判前の保全処分を告知するまでは、相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九条 (審判)

審判前の保全処分は、疎明に基づいてする。

- 2 審判前の保全処分については、第七十四条第二項ただし書の規定は、適用しない。
- 3 審判前の保全処分の執行及び効力は、民事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은 심판 전의 보 전처분이 있은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 하할 수 있다.

제107조(진술 청취)

심판 전의 보전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심판을 받아야하는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기록의 열람 등)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재 판소)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전의 보전처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판 전의 보전처 분 사건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해 당 사건이 계속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심판 전의 보전처분을 고지할 때까지는 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 다.

제109조(심판)

- ① 심판 전의 보전처분은 소명에 의하여 한다.
- ② 심판 전의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제7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심판 전 보전처분의 집행 및 효력은 「민

保全法(平成元年法律第九十一号)その他の 仮差押え及び仮処分の執行及び効力に関する 法令の規定に従う。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 第四十五条中「仮に差し押さえるべき物又は 係争物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とあ るのは、「本案の家事審判事件(家事審判事 件に係る事項について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 っ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家事調停事件)が 係属している家庭裁判所(当該家事審判事件 が高等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原裁判 所)」とする。

第百十条 (即時抗告)

審判前の保全処分(第百五条第二項の審判に 代わる裁判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の 申立人は、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 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次に掲 げる保全処分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つい ては、この限りでない。

一 第百二十六条第一項(第百三十四条第一項 及び第百四十三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五十八条第一項(第二百四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二百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選任又は財産の管理等に関する指示の保全処分

二 第百二十七条第一項(第百三十五条、第百四十四条、第百八十一条及び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六十六条第一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七十四条第一項(第二百四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百七十五条第三項及び第二百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職務代行者の選

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91호), 그 밖에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 중 "임시로 압류할 물건 또는 계쟁물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는 "본안의가사심판 사건(가사심판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가사조정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재판소(해당 가사심판 사건이 고등재판소에 계속 중인 때에는 원심재판소)"로 한다.

제110조(즉시항고)

① 심판 전의 보전처분(제105조제2항의 심 판을 갈음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 서 같다)의 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보전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6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4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58조제1항(제2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선임 또는 재산관리 등에 관한 지시의 보전처분

2. 제127조제1항(제135조, 제144조, 제181 조 및 제22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6조제1항(같은 조 제5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4조제1 항(제2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75조제3항 및 제215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의 보전처분

任の保全処分

2 本案の家事審判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を除く。) に対し即 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審判前の保 全処分(前項各号に掲げる保全処分を命ずる 審判を除く。) 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 ができる。

第百十一条(即時抗告に伴う執行停止)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即時抗告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原審判の取消しの原因となることが明らかな事情及び原審判の執行により償うことができない損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ことについて疎明があったときは、抗告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即時抗告につ立ての裁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担保を立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若しくは担保を立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若しくは担保を立てさせないで原審判で、若しくは担保を立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既にした執行処分の取消し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審判前の保全処分の事件の記録が家庭裁判所に存する間は、家庭裁判所も、これらの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第百六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申立て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十二条(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

審判前の保全処分が確定した後に、保全処分を求める事由の消滅その他の事情の変更があるときは、本案の家事審判事件(家事審判事件に係る事項について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家事調停事件)が係属する家庭裁判所又は審判前の保全処分を

② 본안의 가사심판 신청에 대한 심판(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을 제외한다)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 전의 보전처분(전항 각 호의 보전처분을 명하는 심판을제외한다)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①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판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명백하고 원심판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대하여 소명이 있은 때에는, 항고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효력이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하기 다 다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심판 전의 보전처분 사건의 기록이 가정재판소에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도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0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112조(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

① 심판 전의 보전처분이 확정된 후에 보전 처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본안의 가사심판 사건(가사심판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가사조정 신청 을 한 경우는 가사조정사건)이 계속하는 가 정재판소 또는 심판 전의 보전처분을 한 가 した家庭裁判所は、本案の家事審判の申立て についての審判(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を除 く。)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 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審判前の保全処 分の取消し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本案の家事審判事件が高等裁判所に係属する場合には、その高等裁判所が、前項の審判 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の審判に代わる裁判を する。
- 3 第百六条並びに第百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 の規定は、第一項の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 しの審判及び前項の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十三条 (即時抗告等)

前条第一項の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の審 判の申立人は、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第百 十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保全処分の取消しの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を除く。)に対し、即 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審判前の保全処分の申立人は、前条第一項 の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の審判(第百十 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保全処分の取消しの審 判を除く。)及び第百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 る民事保全法第三十三条の規定による原状回 復の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3 第百十一条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即時抗告に伴う執行停止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十四条 (調書の作成)

裁判所書記官は、審判前の保全処分の手続の

정재판소는 본안의 가사심판 신청에 대한 심판(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을 제외한다)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직권으로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심판을 할수 있다.

- ② 본안의 가사심판 사건이 고등재판소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등재판소가 전항의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을 한다.
- ③ 제106조 및 제10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심판 및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3조(즉시항고 등)

- ① 전조 제1항의 심판 전의 보전처분 취소심 판의 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제110 조제1항 각 호의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각 하하는 심판을 제외한다)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심판 전의 보전처분 신청인은 전조 제1항의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심판 (제110조제1항 각 호의 보전처분의 취소심판을 제외한다) 및 제115조에서 준용하는 「민사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11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4조(조서의 작성)

① 재판소서기관은 심판 전의 보전처분절차

期日について、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裁判長において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審判前の保全処分の手続については、第四十六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百十五条 (民事保全法の準用)

民事保全法第四条の規定は審判前の保全処分に関する手続における担保について、同法第十四条、第十五条及び第二十条から第二十四条まで(同法第二十三条第四項を除く。)の規定は審判前の保全処分について、同法第三十三条の規定は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の裁判について、同法第三十四条の規定は第百十二条第一項の審判前の保全処分の取消しの審判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五節 戸籍の記載等の嘱託

第百十六条

裁判所書記官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最高 裁判所規則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遅滞な く、戸籍事務を管掌する者又は登記所に対 し、戸籍の記載又は後見登記等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一年法律第百五十二号)に定める登 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戸籍 の記載又は同法に定める登記の嘱託を要する ものとして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ものに限 る。

- 一 別表第一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又は これに代わる裁判が効力を生じた場合
- 二 審判前の保全処分が効力を生じ、又は効力

기일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 전의 보전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제 4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민사보전법」의 준용)

「민사보전법」 제4조의 규정은 심판 전의 보전처분에 관한 절차의 담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4조까 지(같은 법 제23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 정은 심판 전의 보전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은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 재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은 제 112조제1항의 심판 전 보전처분의 취소심판 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절 호적기재 등의 촉탁

제116조

재판소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 또는 등기소에 호적기재 또는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52호)에서 정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기재 또는 같은 법 에서 정하는 등기촉탁이 필요한 것으로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 1. 별표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 또는 이를 갈음하는 재판이 효력 이 발생한 경우
- 2. 심판 전의 보전처분이 효력이 발생했거나

を失った場合

第二章 家事審判事件

第一節 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十七条 (管轄)

後見開始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項及び次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一の項から十六の二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後見開始の審判事件を除き、後見開始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後見開始の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ただし、後見開始の審判事件が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その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十八条(手続行為能力)

次に掲げる審判事件(第一号、第四号及び第 六号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 ての審判事件を含む。)においては、成年被 後見人となるべき者及び成年被後見人は、第 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 三十一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定代理人に よらずに、自ら手続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 る。その者が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手続行 為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補助人の同意を得る ことを要す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保佐 人若しくは保佐監督人又は補助人若しくは補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제2장 가사심판 사건 제1절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 제117조(관합)

① 후견개시심판 사건(별표 제1의 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 제1호에서 같다)은 피성년후견인이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②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 항부터 16의2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 건을 말한다)은 후견개시심판 사건을 제외하 고는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재판소(항고재 판소가 후견개시재판을 한 경우는 제1심재판 소인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다만, 후견개 시심판 사건이 가정재판소에 계속 중인 때에 는 그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18조(절차 행위 능력)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제1호·제4호 및 제6 호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에서는 피성년후 견인이 될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은 제1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그사람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절차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보좌인이나 보좌감독인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助監督人の同意が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 一 後見開始の審判事件
- 二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 第一の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 三 成年後見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四 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 百二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五 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 一の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六 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 一の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第百二十七条第五項において同じ。)

七 成年被後見人に関する特別代理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八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又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信書便物(以下「郵便物等」という。)の配達の嘱託及びその嘱託の取消し又は変更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二の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二十三条の二において「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託等の審判事件」という。)

九 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1. 후견개시심판 사건
- 2. 후견개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 의 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3.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3 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4. 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5 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27조제1항에서 같다)
- 5.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6. 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 의 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27조제5항에서 같다)
- 7.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심 판 사건(별표 제1의 12항의 사항에 대한 심 판 사건을 말한다)
- 8.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편지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지물(이하 "우편물 등"이라 한다)의 배달촉탁 및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의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23조의2에서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 등의 심판 사건"이라 한다)
- 9.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심판 사건(별표 제1의 1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う。)

十 第三者が成年被後見人に与えた財産の管理 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五の 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二 十五条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

1

第百十九条 (精神の状況に関する鑑定及び意 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 精神の状況につき鑑定をしなければ、後見開 始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明 らかに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 限りでない。

2 家庭裁判所は、成年被後見人の精神の状況 につき医師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民法第十 条の規定による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 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明らかに 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 ない。

第百二十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及び成年被後見人については、その者の心身の障害によりその者の陳述を聴く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後見開始の審判 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 者
- 二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民法第十

다)

10. 제3자가 피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별표 제1의 1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25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같다)

제119조(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및 의견 청 취)

- ① 가정재판소는 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대해 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히 필요가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민법」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개시심판의 취소심 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명백히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 및 성년피후견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심신장애로 자신의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후견개시심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2. 후견개시심판의 취소심판(「민법」 제10

条の規定による場合に限る。) 成年被後見人 及び成年後見人

三 成年後見人又は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 判 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又は成年被後見 人

四 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 成年後見人

五 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成年後見監督人

六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託の審判 成年被後見人

- 2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成年後見人の選任の審判 成年後見人とな るべき者
- 二 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 成年後見監 督人となるべき者

第百二十一条(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次に掲げる申立ては、審判がされる前であっても、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ない。

- 一 後見開始の申立て
- 二 民法第八百四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成 年後見人の選任の申立て
- 三 民法第八百四十五条の規定により選任の請求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者による同法第八百四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成年後見人の選

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피성년 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 3.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 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성년후 견인
- 4. 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성년후견인
- 5. 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성년후견감독 이
- 6.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심판: 피성년후견인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2.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성년후견감독 인이 될 사람

제121조(신청 취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다.

- 1. 후견개시 신청
- 2. 「민법」 제8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 3.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청 구를 해야 하는 사람에 의한 같은 법 제843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 선임 신

任の申立て

第百二十二条(審判の告知等)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当該各号に定める 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 いて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及び成年 被後見人については、第七十四条第一項の規 定は、適用しない。

- 一 後見開始の審判 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 者
- 二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託の審判 成年被後見人
- 2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託及びその嘱託の取消し又は変更の審判は、信書の送達の事業を行う者に告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審判が効力を生じた時に、信書の送達の事業を行う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後見開始の審判 民法第八百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成年後見人に選任される者並びに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五十号。以下「任意後見契約法」という。)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終了する任意後見契約に係る任意後見人及び任意後見監督人
- 二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成年後見 人及び成年後見監督人
- 三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청

제122조(심판의 고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후견개시심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심판: 피성년후견인
- ②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 및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심판은 편지송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고지할 필 요가 없다. 이 경우는 심판이 효력이 발생했 을 때에 편지송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후견개시심판: 「민법」 제8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및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50호. 이하 "임의후견계약법"이라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하는임의후견계약과 관련된임의후견인 및임의후견감독인
- 2. 후견개시심판의 취소심판: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 3.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託の取消し又は変更の審判 成年後見人

第百二十三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第一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 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後見開始の審判 民法第七条及び任意後見 契約法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者
- 二 後見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民法第十条に規定する者
- 四 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 成年後見人
- 五 成年後見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成年後見監督人並びに成年被後見人 及びその親族

六 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成年後見監 督人

七 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 審判 申立人並びに成年被後見人及びその親族

八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託の審判 成年被後見人及びその親族

九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託の取消し又は変更の審判 成年後見人

十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 託及びその嘱託の取消し又は変更の申立てを 배달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심판: 성년후견 인

제123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후견개시심판: 「민법」 제7조 및「임의 후견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 람
- 2. 후견개시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후견개시심판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민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 4. 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성년후견인
- 5. 성년후견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신청인, 성년후견감독인 및 피성년후견 인과 친족
- 6. 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성년후견감독
- 7. 성년후견감독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피성년후견인과 친족
- 8.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심판: 피성년후견인 및 친족
- 9.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심판: 성년후견 인
- 10.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촉탁 및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却下する審判 申立人

十一 成年被後見人の死亡後の死体の火葬又は 埋葬に関する契約の締結その他相続財産の保 存に必要な行為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却 下する審判 申立人

1

2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による後見 開始の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の期間は、民法 第八百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成年後見 人に選任され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 (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日のうち最も遅い 日)から進行する。

第百二十三条の二(陳述の聴取の例外)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等の配達の嘱託 等の審判事件においては、第八十九条第一項 の規定(第九十六条第一項及び第九十八条第 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かか わらず、抗告裁判所は、信書の送達の事業を 行う者の陳述を聴くことを要しない。

第百二十四条(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

家庭裁判所は、適当な者に、成年後見の事務 若しくは成年被後見人の財産の状況を調査させ、又は臨時に財産の管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調査又は 管理をした者に対し、成年被後見人の財産の 中から、相当な報酬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4 民法第六百四十四条、第六百四十六条、第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11. 피성년후견인 사망 후 사체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②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후견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민법」 제8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둘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일 중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123조의2(진술 청취의 예외)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등의 심판 사건에서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항고재 판소는 편지송달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진술 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제124조(성년후견 사무의 감독)

- ① 가정재판소는 적절한 자에게 성년후견 사무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관리를 한 자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민법」 제644조, 제646조, 제647조 및

六百四十七条及び第六百五十条の規定は、第 一項の規定により財産を管理する者について 準用する。

第百二十五条(管理者の改任等)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三者が成年被後 見人に与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 事件において選任した管理者を改任すること 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第三者が成年被後見人に与 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お いて選任した管理者(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 された管理者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 「財産の管理者」という。)に対し、財産の 状況の報告及び管理の計算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 3 前項の報告及び計算に要する費用は、成年被後見人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
- 4 家庭裁判所は、財産の管理者に対し、その提供した担保の増減、変更又は免除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5 財産の管理者の不動産又は船舶の上に抵当権の設定を命ずる審判が効力を生じ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その設定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設定した抵当権の変更又は消滅の登記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 6 民法第六百四十四条、第六百四十六条、第 六百四十七条及び第六百五十条の規定は、財 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
- 7 家庭裁判所は、成年被後見人が財産を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き、管理す

제65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 산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5조(관리자의 개임 등)

- ①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3자가 피성년후 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관리자를 개임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제3자가 피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서 선임한 관리자(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 된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 산관리자"라 한다)에 대해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보고 및 계산에 드는 비용은 피성 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④ 가정재판소는 재산관리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증감, 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 ⑤ 재산관리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 설정을 명하는 심판이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 는 재판소서기관은 설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기 에 대해서도 같다.
- ⑥ 「민법」 제644조, 제646조, 제647조 및 제650조의 규정은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⑦ 가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관리해야 하는 재

べき財産がなくなったときその他財産の管理 を継続することが相当でなくなったときは、 成年被後見人、財産の管理者若しくは利害関 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財産の管理 者の選任その他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 取消しの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十六条(後見開始の審判事件を本案と 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後見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生活、療養看護又は財産の管理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担保を立てさせないで、後見開始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財産の管理者を選任し、又は事件の関係人に対し、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生活、療養看護若しくは財産の管理に関する事項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家庭裁判所は、後見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 場合において、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 財産の保全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当 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後見開始 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 の間、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財産上の 行為(民法第九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行為を 除く。第七項において同じ。)につき、前項 の財産の管理者の後見を受けることを命ずる ことができる。

3 家庭裁判所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心身の障害によりその者の陳述を聴く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第百七条の規定にかかわ

산이 없어졌을 때, 그 밖에 재산관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재산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산관리자의 선임, 그밖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후견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는 후견개시 신청이 있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생활, 요양간호 또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후견개시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생활, 요양간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있다.

② 가정재판소는 후견개시 신청이 있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후견개시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상의행위(「민법」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7항에서 같다)에 대해 전항의 재산관리자의 후견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심신장애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술 및 의견 らず、その者の陳述を聴く手続を経ずに、前 項の規定による審判(次項から第七項までに おいて「後見命令の審判」という。)をする ことができる。

4 後見命令の審判は、第一項の財産の管理者 (数人あるときは、そのうちの一人) に告知 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5 後見命令の審判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については、第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は、適用しない。

6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による後見命令の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の期間は、第一項の財産の管理者が第四項の規定による告知を受けた日(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日のうち最も遅い日)から進行する。

7 後見命令の審判があったときは、成年被後 見人となるべき者及び第一項の財産の管理者 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がした財産上 の行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 おいては、制限行為能力者の行為の取消しに 関する民法の規定を準用する。

8 前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及び民法 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法第二十 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一項の財 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 いて、前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人」とある のは、「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と読み 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二十七条(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다음 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후견 명령심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후견명령심판은 제1항의 재산관리자(여러 명 있을 때에는 그중 한 명)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후견명령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후견명령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제1항의 재산관리자가 제4항의 규정에따른 고지를 받은 날(둘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⑦ 후견명령심판이 있은 때에는 피성년후견 인이 될 사람 및 제1항의 재산관리자는 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행한 재산상의 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제한행위 능 력자의 행위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전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은 인이 될 사람"으로 대체한다.

제127조(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

等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は、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成年被後見人の利益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成年後見人の解任の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成年後見人の解任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成年後見人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又はその職務代行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成年後見人の職務の執行 を停止する審判は、職務の執行を停止される 成年後見人、他の成年後見人又は同項の規定 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に告知することに 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3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 4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 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職務代行 者に対し、成年被後見人の財産の中から、相 当な報酬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 5 前各項の規定は、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 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準用 する。

第二節 保佐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二十八条 (管轄)

保佐開始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七の項の 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以下同 じ。)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 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 ① 가정재판소는 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해임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의 해임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심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성년후견인, 다른 성년후견인 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했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직무대행자에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 각 항의 규정은 성년후견감독인 해임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 여 준용한다.

제2절 보좌에 관한 심판 사건

제128조(관할)

① 보좌개시심판 사건(별표 제1의 1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보좌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2 保佐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七の項から三十五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保佐開始の審判事件を除き、保佐開始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保佐開始の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ただし、保佐開始の審判事件が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その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二十九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次に掲げる審判事件 (第一号、第七号及び第九号の審判事件を本 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 む。)における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及び被 保佐人について準用する。

- 一 保佐開始の審判事件
- 二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八の項の事項 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三 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四 保佐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二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五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二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六 保佐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二十

② 보좌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7항부터 35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보좌개시심판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좌개시심판을 한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보좌개시재판을 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다만, 보좌개시심판사건이 가정재판소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29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 (제1호·제7호 및 제9호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피보좌인이 될 사람 및 피보좌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보좌개시심판 사건
- 2.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 정심판 사건(별표 제1의 1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3. 보좌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4. 보좌개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 의 2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 5.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 정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의 2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6. 보좌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22항

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七 保佐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二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三十五条において同じ。)

八 保佐監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二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九 保佐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二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第百三十五条において同じ。)

十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三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 判事件をいう。)

十一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の取 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三の項の事 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十二 保佐の事務の監督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第百三十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第二号、第四号及び第五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保佐開始の審判 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
- 二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 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又は被保佐 人

- 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7. 보좌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2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35조에서 같다)
- 8. 보좌감독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2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9. 보좌감독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2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35조에서 같다)
- 10.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 사건(별표 제1의 3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11.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의 취소 심판 사건(별표 제1의 3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12. 보좌 사무의 감독심판 사건(별표 제1의 3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30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 1. 보좌개시심판: 피보좌인이 될 사람
- 2.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 피보좌인이 될 사람 또는 피보좌인

三 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 保佐人

[]

四 保佐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民法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場合に限る。) 被保 佐人及び保佐人

五 保佐人又は保佐監督人の選任の審判 被保 佐人となるべき者又は被保佐人

六 保佐人の解任の審判 保佐人

七 保佐監督人の解任の審判 保佐監督人

2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保佐人の選任の審判 保佐人となるべき者
- 二 保佐監督人の選任の審判 保佐監督人となるべき者

第百三十一条 (審判の告知)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保佐開始の審判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二 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佐人に選任される者並 びに任意後見契約法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 り終了する任意後見契約に係る任意後見人及 び任意後見監督人
- 二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 保佐人及び保佐監督人(当該審判 が保佐人又は保佐監督人の選任の審判と同時 にされる場合にあっては、保佐人となるべき

- 3. 보좌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보좌인
- 4. 보좌개시심판의 취소심판(「민법」 제14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피보좌인 및 보좌인
- 5.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 선임심판: 피보 좌인이 될 사람 또는 피보좌인
- 6. 보좌인 해임심판: 보좌인
- 7. 보좌감독인 해임심판: 보좌감독인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다.
- 1. 보좌인 선임심판: 보좌인이 될 사람
- 2. 보좌감독인 선임심판: 보좌감독인이 될 사람

제131조(심판 고지)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보좌개시심판: 「민법」 제8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좌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및「임의후견계약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종료하는 임의후견계약과 관련된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 2.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 보좌인 및 보좌감독인(해당 심판이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 선임심판과 동시에되는 경우는 보좌인이 될 사람 또는 보좌감

者又は保佐監督人となるべき者)

三 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 保佐人 及び保佐監督人

四 保佐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保佐人及 び保佐監督人

五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保佐人及び保佐監 督人

六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 被保 佐人及び保佐監督人(当該審判が保佐監督人 の選任の審判と同時にされる場合にあって は、保佐監督人となるべき者)

七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の取消 しの審判 被保佐人及び保佐監督人

第百三十二条(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及び第四号にあっては、 申立人を除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 できる。

- 一 保佐開始の審判 民法第十一条本文及び任 意後見契約法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者
- 二 保佐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保佐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民法第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

四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 被保佐人

독인이 될 사람)

- 3. 보좌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보좌인 및 보좌감독인
- 4. 보좌개시심판의 취소심판: 보좌인 및 보좌감독인
- 5.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의 취소심판: 보좌인 및 보좌감독인
- 6.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 피보좌 인 및 보좌감독인(해당 심판이 보좌감독인 선임심판과 동시에 되는 경우는 보좌감독인 이 될 사람)
- 7.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의 취소심판: 피보좌인 및 보좌감독인

제132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와 제4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보좌개시심판: 「민법」 제11조 본문 및 「임의후견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 는 사람
- 2. 보좌개시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보좌개시심판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민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 람
- 4.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 피보좌인

五 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六 保佐人の解任の審判 保佐人

七 保佐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保佐監督人並びに被保佐人及びその親族

八 保佐監督人の解任の審判 保佐監督人

九 保佐監督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並びに被保佐人及びその親族

2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被保佐 人となるべき者による保佐開始の審判に対す る即時抗告の期間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 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及び民法第八百七十 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佐人に選任さ れ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のうち最も遅 い日から進行する。

第百三十三条(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の 規定の準用)

第百十九条の規定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及び被保佐人の精神の状況に関する鑑定及び意見の聴取について、第百二十一条の規定は保佐開始の申立ての取下げ及び保佐人の選任の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第百二十四条の規定は保佐の事務の監督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三十四条(保佐開始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保佐開始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は、第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 5. 보좌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6. 보좌인 해임심판: 보좌인
- 7. 보좌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보좌감독인 및 피보좌인과 친족
- 8. 보좌감독인 해임심판: 보좌감독인
- 9. 보좌감독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피보좌인과 친족
- ②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피보좌인이 될 사람이 제기하는 보좌개시심 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피보좌인이 될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과 「민법」 제 8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좌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133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제119조의 규정은 피보좌인이 될 사람 및 피보좌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과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121조의 규정은 보좌개시 신청의 취하 및 보좌인 선임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은 보좌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4조(보좌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보좌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2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は、保佐開始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の財産の保全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保佐開始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の財産上の行為(民法第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為に限る。第五項において同じ。)につき、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る財産の管理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財産の管理者」という。)の保佐を受け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次項及び第五項に おいて「保佐命令の審判」という。)は、第 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財産の 管理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被保佐 人となるべき者による保佐命令の審判に対す る即時抗告の期間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 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及び財産の管理者が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のう ち最も遅い日から進行する。

5 保佐命令の審判があったとき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及び財産の管理者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が財産の管理者の同意を得ないでした財産上の行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制限行為能力者の行為の取消しに関する民法の規定を準用する。

6 第百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及び民法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 法第二十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財 ②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은 보좌개시 신청을 한 경우, 피보좌인이 될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보좌개시 신청에 대한 심판이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좌인이 될 사람의 재산상의 행위(「민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제5항에서 같다)에 대해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재산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간단히 "재산관리자"라한다)의 보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다음 항과 제5 항에서 "보좌명령심판"이라 한다)은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재산관리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피보좌인이 될 사람이 제기하는 보좌명령심 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피보좌인이 될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과 재산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 고지를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⑤ 보좌명령심판이 있은 때에는 피보좌인이 될 사람 및 재산관리자는 피보좌인이 될 사 람이 재산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 한 재산상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는 제한행위 능력자의 행위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재산관 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五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人」とあるのは、「被保佐人となるべき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三十五条 (保佐人の解任の審判事件等を 本案とする保全処分)

第百二十七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 は、保佐人の解任の審判事件又は保佐監督人 の解任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 いて準用する。

第三節 補助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三十六条(管轄)

補助開始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以下同じ。)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補助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六の項から五十四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補助開始の審判事件を除き、補助開始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補助開始の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ただし、補助開始の審判事件が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は、その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三十七条(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次に掲げる審判事件 (第一号、第七号及び第九号の審判事件を本 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 む。)における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及び被 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5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은 "피보좌인이 될 사람"으로 대체한다.

제135조(보좌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보좌 인 해임심판 사건 또는 보좌감독인 해임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3절 보조에 관한 심판 사건

제136조(관할)

① 보조개시심판 사건(별표 제1의 3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보조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② 보조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36항부터 54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보조개시심판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조개시심판을 한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보조개시재판을 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다만, 보조개시심판사건이 가정재판소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37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 (제1호, 제7호 및 제9호의 심판 사건을 본 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피보조인이 될 사람 및 피보조

補助人について準用する。

一 補助開始の審判事件

- 二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七の項の事 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三 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四 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三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五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 四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 六 補助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四十 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七 補助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四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同じ。)
- 八 補助監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四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九 補助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四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四十四条において同じ。)
- 十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五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 判事件をいう。)

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보조개시심판 사건
- 2.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 정심판 사건(별표 제1의 3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3. 보조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3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4. 보조개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 의 3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 5.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 정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의 4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6. 보조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41항 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7. 보조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4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44조에서 같다)
- 8. 보조감독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4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9. 보조감독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4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44조에서 같다)
- 10.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 사건(별표 제1의 5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十一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の取 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二の項の事 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十二 補助の事務の監督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第百三十八条 (精神の状況に関する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の精神の状況につき医師その他適当な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補助開始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百三十九条 (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補助開始の審判 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
- 二 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 補助人

三 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民法第十八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場合に限る。) 被補助人及び補助人

四 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の選任の審判 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又は被補助人

- 五 補助人の解任の審判 補助人
- 六 補助監督人の解任の審判 補助監督人
- 2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

11.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의 취소 심판 사건(별표 제1의 5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12. 보조 사무의 감독심판 사건(별표 제1의 5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38조(정신상태에 관한 의견 청취)

가정재판소는 피보조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 태에 대해 의사, 그 밖에 적절한 사람의 의 견을 듣지 않으면 보조개시심판을 할 수 없 다.

제139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 보조개시심판: 피보조인이 될 사람
- 2. 보조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보조인
- 3. 보조개시심판의 취소심판(「민법」 제18 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피보조인 및 보조인
- 4.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 선임심판: 피보 조인이 될 사람 또는 피보조인
- 5. 보조인 해임심판: 보조인
- 6. 보조감독인 해임심판: 보조감독인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意見を聴 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補助人の選任の審判 補助人となるべき者
- 二 補助監督人の選任の審判 補助監督人となるべき者

第百四十条 (審判の告知)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補助開始の審判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七 第一項の規定により補助人に選任される者並 びに任意後見契約法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 り終了する任意後見契約に係る任意後見人及 び任意後見監督人
- 二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 補助人及び補助監督人(当該審判 が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の選任の審判と同時 にされる場合にあっては、補助人となるべき 者又は補助監督人となるべき者)
- 三 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審判 補助人 及び補助監督人

四 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補助人及 び補助監督人

五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 定め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補助人及び補助監 督人

六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 被補助人及び補助監督人(当該審判が補助監督人の選任の審判と同時にされる場合にあって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보조인 선임심판: 보조인이 될 사람
- 2. 보조감독인 선임심판: 보조감독인이 될 사람

제140조(심판 고지)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보조개시심판: 「민법」 제876조의7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사람 및「임의후견계약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하는 임의후견계약과 관련된 임의 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 2.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 보조인 및 보조감독인(해당 심판이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 선임심판과 동시에되는 경우는 보조인이 될 사람 또는 보조감독인이 될 사람)
- 3. 보조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의 심판: 보조인 및 보조감독인
- 4. 보조개시심판의 취소심판: 보조인 및 보 조감독인
- 5.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심판의 취소심판: 보조인 및 보조감독인
- 6.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 피보조 인 및 보조감독인(해당 심판이 보조감독인 선임심판과 동시에 되는 경우는 보조감독인

は、補助監督人となるべき者)

七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 被補助人及び補助監督人

第百四十一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第一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 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補助開始の審判 民法第十五条第一項本文 及び任意後見契約法第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 者
- 二 補助開始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民法第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

四 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五 補助人の解任の審判 補助人

六 補助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補助監督人並びに被補助人及びその親族

- 七 補助監督人の解任の審判 補助監督人
- 八 補助監督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並びに被補助人及びその親族
- 2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被補助 人となるべき者による補助開始の審判に対す る即時抗告の期間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 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及び民法第八百七十 六条の七第一項の規定により補助人に選任さ

이 될 사람)

7.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판의 취소심 판: 피보조인 및 보조감독인

제141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보조개시심판: 「민법」 제15조제1항 본 문 및 「임의후견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 2. 보조개시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보조개시심판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민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 람
- 4. 보조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5. 보조인 해임심판: 보조인
- 6. 보조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보조감독인 및 피보조인과 친족
- 7. 보조감독인 해임심판: 보조감독인
- 8. 보조감독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신청인 및 피보조인과 친족
- ②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피보조인이 될 사람이 제기하는 보조개시심 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피보조인이 될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과 「민법」 제 8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인으로

れ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のうち最も遅い日から進行する。

第百四十二条(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の 規定の準用)

第百二十一条の規定は補助開始の申立ての取下げ及び補助人の選任の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第百二十四条の規定は補助の事務の監督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四十三条(補助開始の審判事件を本案と する保全処分)

補助開始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は、第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2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 ては、高等裁判所)は、補助開始及び補助人 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行為の定めの申 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被補助人となる べき者の財産の保全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 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 補助開始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 ずるまでの間、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の財産 上の行為(民法第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 為であって、当該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 ならない行為の定めの申立てに係るものに限 る。第五項において同じ。) につき、前項に 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り選任される財産の管理者(以下この条に おいて単に「財産の管理者」という。)の補 助を受け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次項及び第五項に おいて「補助命令の審判」という。)は、第 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財産の 선임되는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142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제121조의 규정은 보조개시 신청의 취하 및 보조인 선임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제124 조의 규정은 보조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143조(보조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보조개시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②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은 보조개시 및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신청을 한 경우, 피보조인이 될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개시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조인이 될 사람의 재산상의 행위(「민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해당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신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제5항에서 같다)에 대해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재산관리자(이하 이조에서 간단히 "재산관리자"라 한다)의 보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다음 항과 제5 항에서 "보조명령심판"이라 한다)은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재산관리자 管理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被補助 人となるべき者による補助命令の審判に対す る即時抗告の期間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 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及び財産の管理者が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のう ち最も遅い日から進行する。

5 補助命令の審判があったとき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及び財産の管理者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が財産の管理者の同意を得ないでした財産上の行為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制限行為能力者の行為の取消しに関する民法の規定を準用する。

6 第百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及び民法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 法第二十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財 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 いて、第百二十五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 人」とあるのは、「被補助人となるべき者」 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四十四条(補助人の解任の審判事件等を 本案とする保全処分)

第百二十七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 は、補助人の解任の審判事件又は補助監督人 の解任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 いて準用する。

第四節 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 分の審判事件

第百四十五条 (管轄)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피보조인이 될 사람이 제기하는 보조명령심 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피보조인이 될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과 재산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 고지를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⑤ 보조명령심판이 있은 때에는 피보조인이 될 사람 및 재산관리자는 피보조인이 될 사 람이 재산관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 한 재산상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는 제한행위 능력자의 행위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5조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은 "피보조인이 될 사람"으로 대체한다.

제144조(보조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보조 인 해임심판 사건 또는 보조감독인 해임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4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심판 사건

제145조(관할)

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は、不在者の従来の住所地又は居所地を管轄 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四十六条 (管理人の改任等)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民法第二十五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又は同法第二十六 条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管理人を改任するこ 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民法第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又は同法第二十六条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管理人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管理人(第四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管理人」という。)に対し、財産の状況の報告及び管理の計算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同法第二十七条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不在者が置いた管理人に対しても、同様とする。
- 3 前項の報告及び計算に要する費用は、不在 者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
- 4 家庭裁判所は、管理人(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管理人及び不在者が置いた管理人をいう。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提供した担保の増減、変更又は免除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5 管理人の不動産又は船舶の上に抵当権の設定を命ずる審判が効力を生じ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その設定の登記を嘱託しなければならない。設定した抵当権の変更又は消滅の登記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 6 民法第六百四十四条、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四十七条及び第六百五十条の規定は、家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가정 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46조(관리인의 개임 등)

- ①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민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했거나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민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했거나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관리인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관리인(제4항과 제6항에서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경우는 부재자가 둔 관리인에 대해서도 같다.
- ③ 전항의 보고 및 계산에 드는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④ 가정재판소는 관리인(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관리인 및 부재자가 둔 관리인을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한 담보의 증감, 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리인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 설정을 명하는 심판이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설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기에 대해서도 같다.
- ⑥ 「민법」 제644조, 제646조, 제647조 및 제650조의 규정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관

庭裁判所が選任した管理人について準用する。

第百四十七条(処分の取消し)

家庭裁判所は、不在者が財産を管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き、管理すべき財産がなくなったときその他財産の管理を継続することが相当でなくなったときは、不在者、管理人若しく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民法第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管理人の選任その他の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取消しの審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節 失踪の宣告に関する審判事件 第一款 失踪の宣告の審判事件

第百四十八条

失踪の宣告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六の 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項に おいて同じ。)は、不在者の従来の住所地又 は居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失踪の宣告の審判事件における不在者について準用する。
- 3 家庭裁判所は、次に掲げる事項を公告し、かつ、第二号及び第四号の期間が経過しなければ、失踪の宣告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号及び第四号の期間は、民法第三十条第一項の場合にあっては三月を、同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一月を下ってはならない。

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7조(처분의 취소)

가정재판소는 부재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관리해야 하는 재산이 없어졌을 때, 그 밖에 재산관리를 계속하는 것이타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부재자,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민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실종선고에 관한 심판 사건 제1관 실종선고심판 사건

제148조

- ① 실종선고심판 사건(별표 제1의 5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심판 사건의 부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제2호와 제4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심판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와 제4호의 기간은 「민법」 제30조제1항의 경우는 3개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一 不在者について失踪の宣告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
- 二 不在者は、一定の期間までにその生存の届出をすべきこと。
- 三 前号の届出がないときは、失踪の宣告がされること。
- 四 不在者の生死を知る者は、一定の期間までにその届出をすべきこと。
- 4 失踪の宣告の審判は、不在者に告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 5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失踪の宣告の審判 不在者及び利害関係人
- 二 失踪の宣告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 人

第二款 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事件

第百四十九条

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事件は、失踪者の 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事件における失踪者について準用する。
- 3 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は、事件の記録 上失踪者の住所又は居所が判明している場合 に限り、失踪者に告知すれば足りる。

- 1.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있을 것
- 2. 부재자는 일정 기간까지 그 생존 신고를 할 것
- 3. 전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는다는 것
-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일정 기간 까지 그 신고를 할 것
- ④ 실종선고심판은 부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⑤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실종선고심판: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
- 2. 실종선고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2관 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

제149조

- ① 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은 실종자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실종선고 취소심판 사건의 실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사건 기록상 실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판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실종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 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審判 利害関係人 (申立人を除く。)
- 二 失踪の宣告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 判失踪者及び利害関係人

第六節 婚姻等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五十条 (管轄)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 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る。

- 一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別表第二の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 件をいう。次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 夫又 は妻の住所地
- 二 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 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五十八の項の事項に 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夫又は妻の住所 地
- 三 婚姻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別表第二の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 件をいう。) 夫又は妻の住所地

四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子(父 又は母を同じくする数人の子についての申立 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そのうちの一人) の住所地

五 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夫又

- 4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 ┃④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실종선고 취소심판: 이해관계인(신청인을 제외한다)
 - 2. 실종선고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실종자 및 이해관계인

제6절 혼인 등에 관한 심판 사건

제15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 는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별표 제2의 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 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호에서 같다): 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
- 2.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5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남편 또는 아내 의 주소지
- 3.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별표 제2의 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 을 말한다): 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
- 4.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자녀 (부 또는 모를 같이하는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
- 5.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남편 또

は妻であった者の住所地

六 離婚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所有者の住所地

第百五十一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 事件及びこれら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 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いずれの審判事件 においても、財産上の給付を求めるものを除 く。)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ついて 準用する。

-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夫及び妻
- 二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子

第百五十二条(陳述の聴取)

家庭裁判所は、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夫及び妻(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子の監護に要する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を除く。)をする場合には、第六十八条の規定により当事者の陳述を聴くほか、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五十三条(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第八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財産 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の申立ての取下げ 는 아내였던 사람의 주소지

6. 이혼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 계자 지정심판 사건(별표 제2의 5항의 사항 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소유자의 주소 지

제151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 및 이러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어떠한 심판 사건에서도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남편 및 아내
-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자녀

제152조(진술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 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 및 아내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 판(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 규 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외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53조(신청 취하의 제한)

제8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에 관한 처분심판 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이

は、相手方が本案について書面を提出し、又 は家事審判の手続の期日において陳述をした 後にあっては、相手方の同意を得なければ、 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百五十四条 (給付命令等)

家庭裁判所は、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審判において、扶助の程度若しくは方法を定め、又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次に掲げる審判において、 当事者(第二号の審判にあっては、夫又は 妻)に対し、金銭の支払、物の引渡し、登記 義務の履行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 一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審判
- 二 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 の審判
- 三 婚姻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
- 四 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
- 3 家庭裁判所は、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において、子の監護をすべき者の指定又は変更、父又は母と子との面会及びその他の交流、子の監護に要する費用の分担その他の子の監護について必要な事項の定めをする場合には、当事者に対し、子の引渡し又は金銭の支払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4 家庭裁判所は、離婚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 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において、 当事者に対し、系譜、祭具及び墳墓の引渡し

본안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했거나 가사심판절차 기일에 진술을 한 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다.

제154조(의무이행명령 등)

- ① 가정재판소는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심판에서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 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에서 당사자(제2호의 심판의 경우는 남편 또는 아내)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무의 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심판
- 2.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
- 3.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 ③ 가정재판소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 판에서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및 그 밖의 교류, 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 그 밖에 자녀의 양 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 자에게 자녀의 인도 또는 금전의 지급, 그 밖에 재산상의 의무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 을 명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는 이혼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족보, 제사 용구 및 분묘의 인도를 명할 수

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五十五条(共有財産の分割)

家庭裁判所は、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の審判とともに共有財産の分割に関する処分の審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共有財産の分割の方法として、一方の婚姻の当事者に他方の婚姻の当事者に対する債務を負担させて、現物の分割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1

第百五十六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審判及び 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夫及び妻
- 二 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 の審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夫及び 妻
- 三 婚姻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の審判及びそ 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夫及び妻

四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審判及びそ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 子の父母及び子の監護者

五 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及びその申 立てを却下する審判 夫又は妻であった者

六 離婚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 審判 婚姻の当事者(民法第七百五十一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七百六十九条第二 있다.

제155조(공유재산의 분할)

가정재판소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심판과 함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심판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분할방법으로서 어느 일방에게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현물분할을 대신할 수있다.

제156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심판 및 그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남편 및 아내
- 2.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남편 및 아내
- 3.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남편 및 아내
- 4.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자녀의 부모 및 자녀의 양육 자
- 5.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남편 또는 아내였던 사람
- 6. 이혼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혼인당사자(「민법」 제7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項の規定による場合にあっては、生存配偶 者) その他の利害関係人

第百五十七条(婚姻等に関する審判事件を本 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制執行を保全し、又は子その他の利害関係人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当該事項についての審判を本案とする仮差押え、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一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
- 二 婚姻費用の分担に関する処分
- 三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
- 四 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

2 家庭裁判所は、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仮の地位を定める仮処分(子の監護に要する費用の分担に関する仮処分を除く。)を命ずる場合には、第百七条の規定により審判を受ける者となるべき者の陳述を聴くはか、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子の陳述を聴く手続を経ることにより保全処分の目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百五十八条(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 理者の変更等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 경우는 생존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157조(혼인 등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자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 2.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
-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자녀의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가처분을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는 외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 변경 등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

分)

家庭裁判所は、夫婦の一方から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他の一方の管理する申立人所有の財産又は共有財産の管理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担保を立てさせないで、当該財産の管理者の変更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共有財産の分割に関する処分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財産の管理者を選任し、又は事件の関係人に対し、他の一方の管理する申立人所有の財産若しくは共有財産の管理に関する事項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家庭裁判所は、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の審判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制執行を保全し、又は事件の関係人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又は夫婦の他の一方の申立てにより、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第百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及び民法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 法第二十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 一項の財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 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五条第三項中「成年 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管理に係る 財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七節 親子に関する審判事件

第一款 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 選任の審判事件

분)

① 가정재판소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부부 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이 관리하는 신청인 소유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재산관리자 변경신청에 대한 심판(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상대방이 관리하는 신청인 소유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가정재판소는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 관리자의 변경심판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 행을 보전하거나 사건관계인의 긴급한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 청을 한 사람 또는 부부 중 다른 한쪽의 신 청에 의하여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 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5조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관리와 관련된 재산"으로 대체한다.

제7절 부모·자녀에 관한 심판 사건
제1관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

第百五十九条

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選任の審判事件は、子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選任の審判事件における夫について準用する。
- 3 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の選任の申立 てをした者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 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款 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 審判事件

第百六十条

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は、子(父又は母を同じくする数人の子についての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そのうちの一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における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準用する。
- 3 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した者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款 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 の審判事件

제159조

- ①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 대리인 선임심판 사건의 남편에 대하여 준용하다.
- ③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관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 심판 사건

제160조

- ①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별표 제1의 6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자녀(부 또는 모를 같이 하는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과 관련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의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관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第百六十一条

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は、養子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 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における養親となるべき者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について準用する。
- 3 家庭裁判所は、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 許可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者の 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養子 となるべき者については、その者の心身の障 害によりその者の陳述を聴くことができない 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養子となるべき者(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 る。)
- 二 養子となるべき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 養子となるべき者の未成年後見人
- 4 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 した者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 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款 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 の審判事件

第百六十二条

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 は、申立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 管轄に属する。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における養親及び養子

제161조

- ①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은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의 양부모가 될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 (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 준 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입양에 대한 허가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심신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양자가 될 사람(15세 이상인 사람에 한 한다)
-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의 미성년후견인
- ④ 입양의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각 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제4관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제162조

- ①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하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의 양부모 및 양자(15세

(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 について準用する。

3 家庭裁判所は、養子の死後に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養子を代襲して養親の相続人となるべき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事件の記録上その者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が判明している場合に限る。

- 4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利 害関係人(申立人を除く。)
- 二 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 却下する審判 申立人

第五款 離縁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 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事件

第百六十三条

離縁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その所有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家庭裁判所は、離縁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 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において、 当事者に対し、系譜、祭具及び墳墓の引渡し 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양자 사후에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양자를 대습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사건의 기록상 그 사람의 성명 및주소 또는 거소가 판명된 경우에 한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이 해관계인(신청인을 제외한다)
- 2.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5관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사건

제163조

- ①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사건(별표 제2의 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소유자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족보, 제사 용구 및 분묘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3 離縁の当事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離縁 等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 指定の審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 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六款 特別養子縁組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六十四条(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事件)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事件は、養親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特別養子縁組の成立 の審判事件(当該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 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む。)における 養親となるべき者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 母について準用する。
- 3 家庭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に掲げる者の同意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その審判をするときは、その者の陳述の聴取は、審問の期日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

- 二 養子となるべき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前号に掲げる者を除く。)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の未成年後見人
- 三 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に対し親権を行う 者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の後見人

③ 파양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 정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관 특별양자 관계에 관한 심판 사건

제164조(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

- ① 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해당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양부 모가 될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특별양자의 성립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람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진술은 심문기일에 들어야 한다.
- 1.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전호의 자를 제외한다) 및 양자가될 사람의 미성년후견인
-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 4 家庭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養子とな るべき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となる べき者の未成年後見人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 ならない。
- 5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は、第七十四条 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第三項第二号及 び第三号に掲げる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 い。
- 6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は、養子となる べき者に告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 7 家庭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 をする場合において、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 母が知れないときは、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 母、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に対し親権を行 う者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の後見人の 陳述を聴くこと並びにこれらの者にその審判 を告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 8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 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養子となるべき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で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でないもの、養子となるべき者の未成年後見人、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となるべき者の父母の後見人
- 二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 判 申立人

후견인

- ④ 가정재판소는 특별양자의 성립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의 미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하다.
- ⑤ 특별양자의 성립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⑥ 특별양자의 성립심판은 양자가 될 사람에 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⑦ 가정재판소는 특별양자의 성립심판을 하는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양자가될 사람의 부모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가될 사람 부모의 후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러한 자에게 심판을 고지할필요가 없다.
- ⑧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가 아닌 사람, 양자 가 될 사람의 미성년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 의 부모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사람 부모의 후견인
- 2. 특별양자의 성립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第百六十五条(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事件)

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事件は、養親の住 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特別養子縁組の離縁 の審判事件(当該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 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む。)における 養親、養子及びその実父母について準用す る。
- 3 家庭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者の陳述の聴取は、審問の期日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養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
- 二 養親
- 三 養子の実父母

四 養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第二号に掲げる 者を除く。)及び養子の後見人

五 養親の後見人

六 養子の実父母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 の実父母の後見人

- 4 家庭裁判所は、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 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養子の実父母(申立人を除く。)

제165조(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

- ① 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은 양부모의 주 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해당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 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양부 모, 양자 및 친부모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특별양자의 파양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열거하는 사람의 진술은 심문기일에 들어야 한다.
- 1. 양자(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 2. 양부모
- 3. 양자의 친부모
- 4. 양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다) 및 양자의 후견인
- 5. 양부모의 후견인
- 6. 양자의 친부모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 친부모의 후견인
- ④ 가정재판소는 특별양자의 파양 신청을 각 하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 양자의 친부모(신청인을 제외한다)

- 二 養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の後見人
- 三 養子の実父母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 の実父母の後見人
- 5 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は、第七十四条 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第三項第四号か 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 らない。
- 6 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は、養子の年齢 及び発達の程度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 養子の利益を害すると認める場合には、養子 に告知することを要しない。
- 7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 養子、養親、養子の実父母、養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で養親でないもの、養子の後見人、養親の後見人、養子の実父母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の実父母の後見人
- 二 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 判 申立人
- 8 養子による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の期間は、養子以外の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日のうち最も遅い日)から進行する。

第百六十六条 (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審判事件等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

- 2. 양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의 후견인
- 3. 양자의 친부모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 친부모의 후견인
- ⑤ 특별양자의 파양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제3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에서 열거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⑥ 특별양자의 파양심판은 양자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 그 밖에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 여 양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양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⑦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양자, 양부모, 양자 의 친부모, 양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양부모가 아닌 사람, 양자의 후 견인, 양부모의 후견인, 양자의 친부모에 대 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 친부모 의 후견인
- 2. 특별양자의 파양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⑧ 양자가 제기하는 특별양자의 파양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양자 이외의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둘 이상 있을 때에는 해당 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166조(특별양자의 성립심판 사건 등을 본 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は、高等裁判所。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同じ。)は、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養子となるべき者の利益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特別養子縁組の成立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申立人を養子となるべき者の監護者に選任し、又は養子となるべき者の親権者若しくは未成年後見人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若しくはその職務代行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職務の執行を停止する審 判は、職務の執行を停止される親権者若しく は未成年後見人、養子となるべき者に対し親 権を行う者若しくは他の未成年後見人又は同 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に告知す 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3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 4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 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職務代行 者に対し、養子となるべき者の財産の中か ら、相当な報酬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 5 前各項の規定(養子となるべき者の監護者 を選任する保全処分に関する部分を除く。) は、特別養子縁組の離縁の審判事件を本案と 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八節 親権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六十七条(管轄)

親権に関する審判事件は、子(父又は母を同

재판소.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는 특별양자의 성립 신청을 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의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양자의 성립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기간 동안 신청인을 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자로 선임하거나 양자가 될 사람의 친권자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심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친권자나 미성 년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다른 미성년후견인 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에 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 했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양자가 될 사람의 재산 중에서 상당 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전 각 항의 규정(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 자를 선임하는 보전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 한다)은 특별양자의 파양심판 사건을 본안으 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절 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

제167조(관할)

친권에 관한 심판 사건은 자녀(부 또는 모를

じくする数人の子についての親権者の指定若 しくは変更又は第三者が子に与えた財産の管 理に関する処分の申立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 は、そのうちの一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 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六十八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 事件(第三号及び第七号の審判事件を本案と 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む。) 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ついて準用す る。

- 子に関する特別代理人の選任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六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 判事件をいう。) 子
- 二 第三者が子に与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七十三条において同じ。)子
- 三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事件(別表第一の六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 子及びその父母

四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子及びその父母

五 親権又は管理権を辞し、又は回復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六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子及びその父母

六 養子の離縁後に親権者となるべき者の指定

같이 하는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제3자가 자녀에게 부여 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의 신청과 관련 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의 가 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68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 (제3호와 제7호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 1. 자녀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사건 (별표 제1의 6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 을 말한다): 자녀
- 2. 제3자가 자녀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별표 제1의 66항의 사 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173조에 서 같다): 자녀
- 3.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사건(별표 제1의 6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자녀 및 부모
- 4.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의 6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자녀 및 부모
- 5.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사퇴하거나 사퇴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6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자녀 및 부모
- 6. 파양 후 친권자가 될 사람의 지정심판 사

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養子、その父母及び 養親

七 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事件(別表第 二の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 子及びその父母

第百六十九条 (陳述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第二号及び第四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に掲げる子の親権者の陳述の聴取は、審問の期日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子 (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 及び子の親 権者
- 二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子の未成年後見人及び親権を喪失し、若しくは停止され、又は管理権を喪失した者
- 三 親権又は管理権を辞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

四 親権又は管理権を回復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子 (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子の未成年後見人

건(별표 제2의 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양자, 부모 및 양부모

7.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 사건(별표 제2의 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자녀 및 부모

제169조(진술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 제2호와 제4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열거하는 자녀의 친권자의 진술은 심문기일에 들어야 한다.
- 1.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및 자녀의 친권자
- 2.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 람,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및 친권을 상실했 거나 정지되었거나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사 람
- 3.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 4.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허가심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2 家庭裁判所は、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第六十八条の規定により当事者の陳述を聴くほか、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七十条 (審判の告知)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子にあっては、子の年齢及び発達の程度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子の利益を害すると認め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子
- 二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の取消しの審判 子、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 び子の未成年後見人

第百七十一条 (引渡命令等)

家庭裁判所は、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において、当事者に対し、子の引渡し又は財産上の給付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七十二条(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及び第五 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は、即時抗 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親権喪失の審判 親権を喪失する者及びそ の親族 ② 가정재판소는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외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 또한 들어야 한다.

제170조(심판 고지)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 및 발달의 정도, 그 밖에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한다고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 자녀
- 2.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 자녀, 자녀에 대하여 친권 을 행사하는 사람 및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제171조(인도 명령 등)

가정재판소는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자녀의 인도 또는 재산상의의무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72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친권상실심판: 친권을 상실하는 사람 및 친족

- 二 親権停止の審判 親権を停止される者及び その親族
- 三 管理権喪失の審判 管理権を喪失する者及 びその親族

四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子及びその親族、未成年後見人並びに未成年後見監督人

五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の取消しの審判 子及びその親族、子に対し親 権を行う者、未成年後見人並びに未成年後見 監督人

六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並び に親権を喪失し、若しくは停止され、又は管 理権を喪失した者及びその親族

七 親権又は管理権を回復する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八 養子の離縁後に親権者となるべき者の指定 の審判 養子の父母及び養子の監護者

九 養子の離縁後に親権者となるべき者の指定 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養子の父母 及び養子の監護者

- 十 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及びそ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 子の父母及び子の監護者
- 2 次の各号に掲げる即時抗告の期間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進行する。
- 一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子によ る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 に対する即時抗告 親権を喪失し、若しくは停

- 2. 친권정지심판: 친권이 정지되는 사람 및 친족
- 3. 재산관리권상실심판: 재산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 및 친족
- 4.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자녀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
- 5.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 자녀와 친족, 자녀에 대하 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
- 6.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친권을 상실했거나 정지되었거나 재산관리권 을 상실한 사람과 친족
- 7.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8. 파양 후 친권자가 될 사람의 지정심판: 양자의 부모 및 양육자
- 9. 파양 후 친권자가 될 사람의 지정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양자의 부모 및 양 육자
- 10.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자녀의 부모 및 양육자
- ② 다음 각 호의 즉시항고의 기간은 해당 호 에서 정하는 날부터 진행한다.
- 1.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자녀에 의한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 관리권상실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친권을

止され、又は管理権を喪失する者が審判の告 知を受けた日

二 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者及び子による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に対する即時抗告 親権を喪失し、若しくは停止され、又は管理権を喪失した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

第百七十三条(管理者の改任等に関する規定 の準用)

第百二十五条の規定は、第三者が子に与えた 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 準用する。

第百七十四条(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 権喪失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子の利益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権喪失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親権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又はその職務代行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親権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する審判は、職務の執行を停止される親権者、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に告知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3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

상실했거나 정지되었거나 재산관리권을 상실 하는 자가 심판 고지를 받은 날

2.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 및 자녀에 의한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 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 고: 친권을 상실했거나 정지되었거나 재산관 리권을 상실한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

제173조(관리자의 개임 등에 관한 규정의 준 용)

제125조의 규정은 제3자가 자녀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4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 권상실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 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는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신청을 한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산관리권상실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심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친권 자,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 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 |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다. きる。

4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 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職務代行 者に対し、子の財産の中から、相当な報酬を 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百七十五条(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 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は、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 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 制執行を保全し、又は子その他の利害関係人 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 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親 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判を本案とする仮処 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仮の地位の仮処分を命ず る場合には、第百七条の規定により審判を受 ける者となるべき者の陳述を聴くほか、子 (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 の陳述を聴か 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子の陳述を聴く 手続を経ることにより保全処分の申立ての目 的を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情があるとき は、この限りでない。

3 家庭裁判所は、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審 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 子の利益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 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親権者の指定又 は変更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 るまでの間、親権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 又はその職務代行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 る。

④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 했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자녀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5조(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 사건 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는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이나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자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친 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본안으로 하 는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지위가처분을 명 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 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는 외 에 자녀(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 또한 들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진술을 청취 하는 절차를 거치면 보전처분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가정재판소는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이나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녀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 람의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 경 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 지의 기간 동안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 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前項の規定による親権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する審判は、職務の執行を停止される親権者、子に対し親権を行う者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に告知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5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三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 6 家庭裁判所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選任 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職務代行 者に対し、子の財産の中から、相当な報酬を 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九節 未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七十六条(管轄)

未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の項から八十三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未成年被後見人(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選任の審判事件にあっては、未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七十七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次に掲げる審判事件 (第三号及び第五号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 保全処分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含む。)にお ける未成年被後見人(第一号の審判事件にあ っては、未成年被後見人となるべき者及び養 親)について準用する。

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なるべき者の選任の審判事件

- ④ 전항의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심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친권 자,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 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다.
- ⑥ 가정재판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 했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자녀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절 미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

제176조(관할)

미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70항부터 83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미성년피후견인(파양 후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선임심판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77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 (제3호와 제5호의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 사건을 포함한다)의 미성년피후견인(제1호의 심판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피후견인이 될 사람 및 양부모)에 대하여 준용한다.

1. 파양 후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선임 심판 사건

- 二 未成年後見人の選任の審判事件
- 三 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八十一条において同じ。)

四 未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五 未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八十一条において同じ。)

六 未成年被後見人に関する特別代理人の選任 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七十九の項の事項に 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七 未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八 第三者が未成年被後見人に与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第百八十条において同じ。)

第百七十八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未成年後見人又は未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 の審判 未成年被後見人(十五歳以上のものに 限る。)
- 二 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 未成年後見人

- 2.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사건
- 3. 미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7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81조에서 같다)
- 4.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 1의 7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 5. 미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 1의 7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제181조에서 같다)
- 6. 미성년피후견인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사건(별표 제1의 7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 7. 미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심판 사건(별표 제1의 8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 한다)
- 8. 제3자가 미성년피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별표 제1의 8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 180조에서 같다)

제178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심판: 미성년피후견인(15세 이상인 사람에한한다)
- 2. 미성년후견인 해임심판: 미성년후견인

- 三 未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未成年後 見監督人
- 2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なるべき者 又は未成年後見人の選任 未成年後見人となる べき者
- 二 未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 未成年後見監督 人となるべき者

第百七十九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となるべき者 の選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二 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 未成年後見人
- 三 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 判 申立人、未成年後見監督人並びに未成年被 後見人及びその親族

四 未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未成年後 見監督人

五 未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申立人並びに未成年被後見人及びその 親族

第百八十条(成年後見に関する審判事件の規 定の準用)

第百二十一条の規定は未成年後見人の選任の

- 3. 미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미성년후견 감독인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양자 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 인이 될 사람

제179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양자 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선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2. 미성년후견인 해임심판: 미성년후견인
- 3. 미성년후견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신청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미성년피 후견인과 친족
- 4. 미성년후견감독인 해임심판: 미성년후견 감독인
- 5. 미성년후견감독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미성년피후견인과 친족

제180조(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사건의 규정 준용)

제121조의 규정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第百二十四条の規定は未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について、第百二十五条の規定は第三者が未成年被後見人に与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一条第二号中「第八百四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成年後見人」とあるのは「第八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未成年後見人」と、同条第三号中「第八百四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成年後見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八十一条 (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等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第百二十七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 は、未成年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又は未成 年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 保全処分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節 扶養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八十二条(管轄)

扶養義務の設定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扶養義務者となるべき者(数人についての扶養義務の設定の申立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そのうちの一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扶養義務の設定の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 第一の八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 をいう。)は、その扶養義務の設定の審判を 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その扶養義務 の設定の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 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의 취하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은 미성 년후견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제125조의 규정은 제3자가 미성년피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제2호 중 "제 8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제8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 인"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8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제84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한 다.

제181조(미성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미성 년후견인 해임심판 사건 또는 미성년후견감 독인 해임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 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0절 부양에 관한 심판 사건

제182조(관할)

- ① 부양의무설정 심판사건(별표 제1의 8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부양의무자가 될 사람(여러 명에 대한 부양의무설정신청과 관련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부양의무 설정의 취소심판 사건(별표 제1의 8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부양의무의 설정심판을 한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 부양의무 설정의 재판을 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

る。

3 扶養の順位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変更又は 取消し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九の項の事項 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並びに扶養の 程度又は方法について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 変更又は取消しの審判事件(同表の十の項の 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相手 方(数人に対する申立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 は、そのうちの一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 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八十三条 (申立ての特則)

扶養義務の設定の申立ては、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号)第二十三条の二第二項第四号の規定による保護者の選任の申立てと一の申立てによりするときは、同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象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にも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四条 (陳述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 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申立人を除 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扶養義務の設定の審判 扶養義務者となるべき者
- 二 扶養義務の設定の取消しの審判 扶養権利 者

第百八十五条(給付命令)

家庭裁判所は、扶養の程度又は方法について 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変更又は取消しの審判 다.

③ 부양 순위의 결정과 그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사건(별표 제2의 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및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의 변경 또 는 취소의 심판 사건(같은 표의 10항의 사항 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상대방(여러 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 명)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183조(신청의 특칙)

부양의무 설정 신청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의료 및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110호) 제23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자 선임 신청과 하나의 신청으로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자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에도 할 수 있다.

제184조(진술 청취)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 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 부양의무 설정심판: 부양의무자가 될 사람
- 2. 부양의무 설정의 취소심판: 부양권리자

제185조(의무이행명령)

가정재판소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심판에서 において、当事者に対し、金銭の支払、物の 引渡し、登記義務の履行その他の給付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第百八十六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扶養義務の設定の審判 扶養義務者となる べき者(申立人を除く。)
- 二 扶養義務の設定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扶養義務の設定の取消しの審判 扶養権利 者(申立人を除く。)

四 扶養義務の設定の取消し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五 扶養の順位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変更又は 取消しの審判並びにこれら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申立人及び相手方

六 扶養の程度又は方法について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変更又は取消しの審判並びにこれら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及び相手方

第百八十七条(扶養に関する審判事件を本案 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制執行を保全し、又は事件の関係人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当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의무의 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86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부양의무 설정심판: 부양의무자가 될 사 람(신청인을 제외한다)
- 2. 부양의무 설정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부양의무 설정의 취소심판: 부양권리자 (신청인을 제외한다)
- 4. 부양의무 설정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5. 부양 순위의 결정과 그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및 이러한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신청인 및 상대방
- 6.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및 이러한 신 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상대방

제187조(부양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재 판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사건관계인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해 該事項についての審判を本案とする仮差押 え、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 ことができる。

- 一 扶養の順位の決定及びその決定の変更又は 取消し
- 二 扶養の程度又は方法についての決定及びそ の決定の変更又は取消し

第十一節 推定相続人の廃除に関する審 判事件

第百八十八条(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 及び推定相続人の廃除の取消しの審判事件)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及び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は、被相続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ただし、これらの審判事件が被相続人の死亡後に申し立てられた場合にあっては、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審判 事件における被相続人について準用する。
- 3 家庭裁判所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において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廃除を求められた推定相続人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ける陳述の聴取は、審問の期日におい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における手続 については、申立人及び廃除を求められた推 定相続人を当事者とみなして、第六十七条及

당 사항에 대한 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 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 할 수 있다.

- 1. 부양 순위의 결정 및 그 결정의 변경 또 는 취소
- 2.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제11절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 판 사건

제188조(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 및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심판 사건)

- ①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 및 추정상속 인의 폐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은 피상속인 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다만, 이러한 심판 사건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신청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 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에서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폐제를 요구받은 추정상속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의 진술은 심문 기일에 들어야 한다.
- ④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폐제를 요구받은 추정상속인을 당사자로 보고 제67조와 제69조부터

び第六十九条から第七十二条までの規定を準 用する。

5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 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 廃除された推定 相続人
- 二 推定相続人の廃除又はその審判の取消しの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第百八十九条(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 判事件)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その取消しの審判の確定前の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事件又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家庭裁判所(そ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その審判事件が抗告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第百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その取消し の審判の確定前の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 審判事件において選任した管理人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第 二項及び第四項中「家庭裁判所」とあるのは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その取消しの 審判の確定前の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を命 じた裁判所」と、同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 人の財産」とあるのは「遺産」と読み替える ものとする。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폐제된 추정상속
- 2. 추정상속인의 폐제 또는 심판의 취소 신 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189조(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 ①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정 전 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은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사건 또는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의 취소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재판소(심판 사건이 계속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 심판사건이 항고재판소에 계속 중인 경우는 그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② 제1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정 전 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가정재판소"는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정 전 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한 재판소"로, 같은 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유산"으로 대체한다.

3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その取消しの 審判の確定前の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を命 じた裁判所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 その取消しの審判が確定したときは、廃除を 求められた推定相続人、前項の管理人若しく は利害関係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そ の処分の取消し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

第十二節 相続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 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事件

第百九十条

相続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家庭裁判所は、相続の場合における祭具等 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判において、当 事者に対し、系譜、祭具及び墳墓の引渡しを 命ずることができる。
- 3 相続人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相続の場合 における祭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定の審 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 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三節 遺産の分割に関する審判事件 第百九十一条(管轄)

遺産の分割に関する審判事件は、相続が開始 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る。 ③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정 전 유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한 재판 소는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 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폐제를 요구받은 추정 상속인, 전항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재판을 하여 야 한다.

제12절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사건

제190조

- ①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 자 지정심판 사건(별표 제2의 1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족보, 제사 용구 및 분묘의 인도를 명할 수있다.
- ③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 지정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제13절 유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건 제191조(관할)

① 유산분할에 관한 심판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遺産の分割の審判事件(別表第二の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以下同じ。)が係属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事件(同表の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は、当該遺産の分割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百九十二条(手続の併合等)

遺産の分割の審判事件及び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事件が係属するときは、これらの審判の手続及び審判は、併合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数人からの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事件が係属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第百九十三条(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の 申立ての期間の指定)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の手続において、一月を下らない範囲内で、当事者が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の申立てをすべき期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の申立てが前項の期間を経過した後にされたときは、当該申立て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期間を定めなかった場合においても、当事者が時機に後れて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申立てをしたことにつき、申立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があり、かつ、申立てに係る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の手続を併合することにより、遺産の分割の審判の手続が著しく遅滞することとなるとき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분결정 처분심판 사건(같은 표의 1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유산에 관한 유산분할심판사건(별표 제2의 1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계속 중인 재판소의 관할로한다.

제192조(절차의 병합 등)

기여분결정 처분심판사건은 동일한 유산에 관한 유산분할심판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기여분을 정하는 처분심판 사건이 계속할 때에도 같다.

제193조(기여분결정 처분심판 신청기간의 지정)

- ①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기여분결정 처분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된 기여분결정 처분심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기간을 정하여 고 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여분결정 처분신청을 뒤늦게 제출 함으로써 유산분할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九十四条(遺産の換価を命ずる裁判)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をするため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相続人に対し、 遺産の全部又は一部を競売して換価すること 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2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をするため必要があり、かつ、相当と認めるときは、相続人の意見を聴き、相続人に対し、遺産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任意に売却して換価する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共同相続人中に競売によるべき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裁判(以下この条において「換価を命ずる裁判」という。)が確定した後に、その換価を命ずる裁判の理由の消滅その他の事情の変更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相続人の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4 換価を命ずる裁判は、第八十一条第一項に おいて準用する第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 者のほか、遺産の分割の審判事件の当事者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相続人は、換価を命ずる裁判に対し、即時 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6 家庭裁判所は、換価を命ずる裁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百条第一項の財産の管理者が選任されていないときは、これ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7 家庭裁判所は、換価を命ずる裁判により換

제194조(유산의 환가를 명하는 재판)

- ①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하여 환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속인의 의견을 들어 상속인에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각하여 환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경매환가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이하 이 조에서 "환가를 명하는 재판"이라 한다)이 확정된 후에 환가를 명하는 재판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수 있다.
- ④ 환가를 명하는 재판은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유산분할심판사건의 당사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 ⑤ 상속인은 환가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가정재판소는 환가를 명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제200조제1항의 재산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⑦ 가정재판소는 환가를 명하는 재판에 따라

価を命じられた相続人に対し、遺産の中から、相当な報酬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8 第百二十五条の規定及び民法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法第二十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財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五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遺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百九十五条(債務を負担させる方法による 遺産の分割)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をする場合において、特別の事情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遺産の分割の方法として、共同相続人の一人又は数人に他の共同相続人に対する債務を負担させて、現物の分割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第百九十六条(給付命令)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において、 当事者に対し、金銭の支払、物の引渡し、登 記義務の履行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第百九十七条(遺産の分割の禁止の審判の取 消し及び変更)

家庭裁判所は、事情の変更があるときは、相続人の申立てにより、いつでも、遺産の分割の禁止の審判を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申立てに係る審判事件は、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とみなす。

환가를 명령 받은 상속인에게 유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25조의 규정 및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5조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유산"으로 대체한다.

제195조(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유산분할)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현물분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6조(의무이행명령)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무의 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97조(유산분할 금지심판의 취소 및 변경)

가정재판소는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유산분할 금지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할 수있다. 이 신청과 관련된 심판 사건은 별표제2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으로 본다.

[]

第百九十八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遺産の分割の審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相続人
- 二 遺産の分割の禁止の審判 相続人
- 三 遺産の分割の禁止の審判を取り消し、又は 変更する審判 相続人
- 四 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判 相続人
- 五 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 判 申立人
- 2 第百九十二条前段の規定により審判が併合 してされたときは、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審 判又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て は、独立して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な い。
- 3 第百九十二条後段の規定により審判が併合 してされたときは、申立人の一人がした即時 抗告は、申立人の全員に対してその効力を生 ずる。

第百九十九条(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に関す る規定の準用)

第百五十三条の規定は、遺産の分割の審判の 申立ての取下げ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条(遺産の分割の審判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

제198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유산분할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상속인
- 2. 유산분할 금지심판: 상속인
- 3. 유산분할 금지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상속인
- 4. 기여분결정 처분의 심판: 상속인
- 5. 기억분결정 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② 제192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병합하여 되었을 때에는 기여분결정 처분의 심판 또는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③ 제192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병합하여 되었을 때에는 신청인 중 한 명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99조(신청 취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3조의 규정은 유산분할심판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0조(유산분할심판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は、高等裁判所。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 じ。)は、遺産の分割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 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財産の管理のため 必要があ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 で、担保を立てさせないで、遺産の分割の申 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 間、財産の管理者を選任し、又は事件の関係 人に対し、財産の管理に関する事項を指示す ることができる。

2 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制執行を保全し、又は事件の関係人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の申立てにより、遺産の分割の審判を本案とする仮差押え、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家庭裁判所は、遺産の分割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相続財産に属する債務の弁済、相続人の生活費の支弁その他の事情により遺産に属する預貯金債権(民法第四百六十六条の五第一項に規定する預貯金債権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当該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が行使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申立てにより、遺産に属する特定の預貯金債権の全部又は一部をその者に仮に取得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他の共同相続人の利益を害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第百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 及び民法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同 法第二十七条第二項を除く。)の規定は、第 一項の財産の管理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 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五条第三項中「成年 재판소. 다음 항과 제3항에서 같다)는 유산분할의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이나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산분할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관리자를 선임하거나사건관계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의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사건관계인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유산분할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가정재판소는 유산분할의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채무의 변제, 상속인의 생활비 지급,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유산에 속하는 예·저금채권(「민법」 제466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저금채권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 신청을 한사람 또는 상대방이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유산에 속하는특정한 예·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사람에게 임시로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익을 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같은 법제27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재산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5조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유

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遺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四節 相続の承認及び放棄に関する 審判事件

第二百一条

相続の承認及び放棄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八十九の項から九十五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限定承認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九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限定承認の申述を受理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受理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3 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限定承認の申述を受理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裁判所)は、相続人が数人ある場合において、限定承認の申述を受理したときは、職権で、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百十八条の規定は、限定承認又は相続の 放棄の取消しの申述の受理の審判事件(別表 第一の九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 をいう。)における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 の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ついて準用 する。
- 5 限定承認及びその取消し並びに相続の放棄 及びその取消しの申述は、次に掲げる事項を

산"으로 대체한다.

제1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심판 사건

제201조

- ①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심판 사건 (별표 제1의 89항부터 95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의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93항의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수리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의관할로 한다.
- ③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경우는 그 재판소)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을 때 에는 직권으로 「민법」 제936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 다.
- ④ 제118조의 규정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의 수리에 관한 심판사건(별표 제1의 9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사건을 말한다)에 있어서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한정승인신고나 그 취소신고, 상속포기신고나 그 취소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記載した申述書を家庭裁判所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 二 限定承認若しくはその取消し又は相続の放棄若しくはその取消しをする旨
- 6 第四十九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及び第五 十条の規定は、前項の申述について準用す 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四十九条第四項中 「第二項」とあるのは、「第二百一条第五 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7 家庭裁判所は、第五項の申述の受理の審判 をするときは、申述書にその旨を記載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審判 は、申述書にその旨を記載した時に、その効 力を生ずる。
- 8 前項の審判については、第七十六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 9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すべき期間の伸長の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二 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の取消しの申述を 却下する審判 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の取消 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
- 三 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の申述を却下する 審判 申述人
- 10 第百二十五条の規定は、相続財産の保存

재한 진술서를 가정재판소에 제출해서 하여 야 한다.

-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2. 한정승인이나 그 취소 또는 상속포기나 그 취소를 한다는 내용
- ⑥ 제4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 규정은 전항의 진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경우, 제49조제4항 중 "제2항"은 "제201조제5항"으로 대체한다.
- ⑦ 가정재판소는 제5항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판은 진술서 에 그 내용을 기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 다.
- ⑧ 전항의 심판에 대해서는 제7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2. 한정승인의 취소신고 또는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를 각하하는 심판: 한정승인의 취소신고 또는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3. 한정승인신고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각하 하는 심판: 신고인
- ⑩ 제125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보존 또는

第二百二条

又は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 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 「成年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相続 財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五節 財産分離に関する審判事件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 める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財産分離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九十六の 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号に おいて同じ。) 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 家庭裁判所
- 二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財産分離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裁判所、財産分離の裁判確定後にあっては財産分離の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た家庭裁判所)
- 三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九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財産分離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財産分離の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
- 2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財産分離の審判 相続人
- 二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財産分離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相続債権者及

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대체한다.

제15절 재산분리에 관한 심판 사건 제202조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재산분리심판 사건(별표 제1의 9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호에 서 같다):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
- 2. 재산분리 신청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재산분리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에 계속 중인 경 우는 그 재판소, 재산분리재판 확정 후에는 재산분리심판 사건이 계속했던 가정재판소)
- 3. 재산분리의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 사건 (별표 제1의 9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재산분리심판을 한 가정재판소 (항고재판소가 재산분리재판을 한 경우는 제 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
- ②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재산분리심판: 상속인
- 2. 「민법」 제9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리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상속채권자

び受遺者

三 民法第九百五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財産 分離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相続人の債権者

3 第百二十五条の規定は、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相続財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六節 相続人の不存在に関する審判 事件

第二百三条(管轄)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め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一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 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相続が開始した 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
- 二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おいて相続財産の管理人の選任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
- 三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審判 事件(別表第一の百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次条第二項及び第二百七条 において同じ。) 相続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 る家庭裁判所

第二百四条(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

및 수증자

3. 「민법」제9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 산분리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상속인의 채권 자

③ 제125조의 규정은 재산분리 청구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대 체한다.

제1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심판사건

제203조(관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소
- 2.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10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서 상속재 산관리인 선임심판을 한 가정재판소
-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사건(별표 제1의 10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조 제2항 및 제207조 에서 같다): 상속이 개시된 지역의 가정재판 소

제204조(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分与の審判)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申立て についての審判は、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期 間の満了後三月を経過した後にしなければな らない。

2 同一の相続財産に関し特別縁故者に対する 相続財産の分与の審判事件が数個同時に係属 するときは、これらの審判の手続及び審判 は、併合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五条 (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又は第二百八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百二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相続財産の管理人(次条及び第二百七条において単に「相続財産の管理人」という。)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六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審判 申立人及び相続財産の管理人
- 二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2 第二百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審判が併合 してされたときは、申立人の一人又は相続財 産の管理人がした即時抗告は、申立人の全員

심판)

①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신청에 대한 심판은 「민법」 제958조의 기간의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사건이 여러 개가 동시에 계속할 때에는 이러한 심판절차 및 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제205조(의견 청취)

가정재판소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 법」제9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했거 나 제208조에서 준용하는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상속재산관리인(다음 조 및 제207조에서 간단히 "상속재산관리인"이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6조(즉시항고)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신청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 2.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신청 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②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병합되었을 때에는 신청인 중 한 명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신청인 전

に対してその効力を生ずる。

第二百七条(相続財産の換価を命ずる裁判)

第百九十四条第一項、第二項本文、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及び第七項の規定は、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及び第七項中「相続人」とあり、並びに同条第二項中「相続人の意見を聴き、相続人」とあるのは「相続財産の管理人」と、同条第三項中「相続人」とあるのは「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申立人若しくは相続財産の管理人」と、同条第四項中「当事者」とあるのは「申立人」と、同条第五項中「相続人」とあるのは「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の申立人及び相続財産の管理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百八条(管理者の改任等に関する規定の 準用)

第百二十五条の規定は、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中「成年被後見人の財産」とあるのは、「相続財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十七節 遺言に関する審判事件

第二百九条 (管轄)

遺言に関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の項から百八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相続を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07조(상속재산의 환가를 명하는 재판)

제194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제7항 중 "상속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의 의견을 들어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신청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당사자"는 "신청인"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인"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신청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대체한다.

제208조(관리자의 개임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5조의 규정은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대체한다.

제17절 유언에 관한 심판 사건

제209조(관할)

① 유언에 관한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02항부터 108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상속을 개시한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遺言の確認の審 判事件は、遺言者の生存中は、遺言者の住所 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二百十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遺言執行者の解任の審判 遺言執行者
- 二 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の審判 受 遺者及び負担の利益を受けるべき者
- 2 家庭裁判所は、遺言執行者の選任の審判を する場合には、遺言執行者となるべき者の意 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一条(調書の作成)

裁判所書記官は、遺言書の検認について、調 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十二条 (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遺言の確認又は遺言書の検認の申立ては、審 判がされる前であっても、家庭裁判所の許可 を得なければ、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十三条(審判の告知)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遺言執行者の解任の審判 相続人
- 二 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の審判 負担の利益を受けるべき者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언확인심판 사건은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유언자의 주소 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210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 유언집행자
- 2.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심판: 수증자 및 부담의 이익을 받을 사람
- ② 가정재판소는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1조(조서의 작성)

재판소서기관은 유언서 검인에 대하여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2조(신청 취하의 제한)

유언 확인 또는 유언서 검인의 신청은 심판이 되기 전이라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다.

제213조(심판 고지)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 상속인
- 2.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심판: 부담의 이익을 받을 사람

第二百十四条(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遺言の確認の審判 利害関係人
- 二 遺言の確認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遺言 に立ち会った証人及び利害関係人
- 三 遺言執行者の選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利害関係人
- 四 遺言執行者の解任の審判 遺言執行者
- 五 遺言執行者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利害関係人

六 遺言執行者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 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七 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の審判 受遺者その他の利害関係人(申立人を除く。)

八 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の申立てを 却下する審判 相続人

第二百十五条(遺言執行者の解任の審判事件 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同じ。)は、遺言執行者の解任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遺言の内容の実現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遺言執行者の解任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が効力を生ずるまでの間、遺言執行者の職務の執行を停止し、又はその職務代

제214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유언확인심판: 이해관계인
- 2. 유언확인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유언에 참여한 증인 및 이해관계인
- 3. 유언집행자의 선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이해관계인
- 4.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 유언집행자
- 5. 유언집행자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이해관계인
- 6. 유언집행자의 사임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7.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심판: 수증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신청인을 제외한다)
- 8.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상속인

제215조(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 재판소.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는 유언집행자의 해임 신청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해임신청에 대한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기간 동안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行者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遺言執行者の職務の執行 を停止する審判は、職務の執行を停止される 遺言執行者、他の遺言執行者又は同項の規定 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に告知することに 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 3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 4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任し、又は前項の規定により改任した職務代行者に対し、相続財産の中から、相当な報酬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節 遺留分に関する審判事件

第二百十六条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一 遺留分を算定するための財産の価額を定める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相続が開始した地
- 二 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 被相続人の住所地
- 2 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した者は、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八節の二 特別の寄与に関する審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심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유언집행자, 다른 유언집행자 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개임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 했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개임한 직무대행 자에게 상속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절 유류분에 관한 심판 사건

제216조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경우 감정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 1의 10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상속이 개시된 지역
- 2. 유류분 포기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 피상 속인의 주소지
- ② 유류분 포기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 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다.

제18절의2 기여분에 관한 심판 사건

事件

第二百十六条の二(管轄)

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は、相続 が開始した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 属する。

第二百十六条の三(給付命令)

家庭裁判所は、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において、当事者に対し、金銭の支払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十六条の四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 申立人及 び相手方
- 二 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 申立人

第二百十六条の五(特別の寄与に関する審判 事件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二項の場合にあっては、高等裁判所)は、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の審判又は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強制執行を保全し、又は申立人の急迫の危険を防止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当該申立てをした者の申立てにより、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の審判を本案とする仮差押え、仮処分その他の必要な保全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16조의2(관할)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은 상속이 개시 된 지역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216조의3(의무이행명령)

가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에서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16조의4(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 신청인 및 상대 방
- 2. 기여분에 관한 처분신청을 각하하는 심 판: 신청인

제216조의5(기여분에 관한 심판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가정재판소(제105조제2항의 경우는 고등재판소)은 기여분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 신청 또는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신청인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기여분에 관한 처분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第十九節 任意後見契約法に規定する審 判事件

第二百十七条(管轄)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 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 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じ。)は、任意後見 契約法第二条第二号の本人(以下この節にお いて単に「本人」という。)の住所地を管轄 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2 任意後見契約法に規定する審判事件(別表 第一の百十一の項から百二十一の項までの事 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任意後 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 督人の選任の審判事件を除き、任意後見契約 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 選任の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抗告裁判所が 当該任意後見監督人を選任した場合にあって は、そ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の 管轄に属する。ただし、任意後見契約の効力 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 審判事件が家庭裁判所に係属しているとき は、その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二百十八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 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 判事件における本人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十九条 (精神の状況に関する意見の聴 取)

家庭裁判所は、本人の精神の状況につき医師 その他適当な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任意

제19절「임의후견계약법」에서 규정하 는 심판 사건

제217조(관할)

①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사건(별표 제 1의 11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 2호의 본인(이하 이 절에서 간단히 "본인"이 라 한다)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② 「임의후견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11항부터 121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 사건을 제외하고는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한 가정재판소(항고재판소가 해당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의 관할로한다. 다만,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사건이 가정재판소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제218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사건의 본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9조(정신상태에 관한 의견 청취)

가정재판소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 그 밖에 적절한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 監督人の選任の審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二百二十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第一号及び第四号にあっては、申立人を除く。)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本人については、本人の心身の障害により本人の陳述を聴く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 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並びに任意後見監 督人が欠けた場合及び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 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の審判 本人
- 二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任意後見監督人
- 三 任意後見人の解任の審判 任意後見人
- 四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本人及び任意後見人
- 2 家庭裁判所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審判をする場合には、任意後見監督人となるべき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家庭裁判所は、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任意後見契約の効力が生ずることについて、任意後見受任者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二十一条(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할 수 없다.

제220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1호와 제4호의 경우는 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신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및 임의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와 임의후견감독인을 다 시 선임하는 경우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 판: 본인
- 2. 임의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임의후견감독
- 3. 임의후견인 해임심판: 임의후견인
- 4.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심판: 본인 및 임의후견인
- ② 가정재판소는 전항 제1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임의후견수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신청 취하의 제한)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 後見監督人の選任及び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 た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申立 ては、審判がされる前であっても、家庭裁判 所の許可を得なければ、取り下げることがで きない。

第二百二十二条 (審判の告知)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は、第七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 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審判 本人及び任意後見 受任者
- 二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の審判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にあっては成年後見 人及び成年後見監督人、保佐開始の審判の取 消しの審判にあっては保佐人及び保佐監督人 並びに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の審判にあっ ては補助人及び補助監督人
- 三 任意後見人の解任の審判 本人及び任意後 見監督人

四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本人、任意後見人及び任意後見監督人

第二百二十三条(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第四号及び第六号にあっては、 申立人を除く。)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 できる。

一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 意後見監督人の選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및 임의후견감독인 이 없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신청은 심판이 되기 전이라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다.

제222조(심판 고지)

다음 각 호의 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 외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본인 및 임 의후견수임자
- 2. 후견개시심판 등의 취소심판: 후견개시심 판의 취소심판은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 독인, 보좌개시심판의 취소심판은 보좌인과 보좌감독인, 보조개시심판의 취소심판은 보 조인과 보조감독인
- 3. 임의후견인 해임심판: 본인 및 임의후견 감독인
- 4.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심판: 본인,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제223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제4호와 제6호의 경우는 신청 인을 제외한다)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을 각하하는

申立人

二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 任意後見監督人

三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 審判 申立人並びに本人及びその親族

四 任意後見人の解任の審判 本人及び任意後 見人

五 任意後見人の解任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任意後見監督人並びに本人及びその 親族

六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本人及び任意後見人

七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 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第二百二十四条(任意後見監督人の事務の調 香)

家庭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任意後見 監督人の事務を調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二十五条(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 判事件等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

第百二十七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 は、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 第一の百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 をいう。)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準 用する。

2 第百二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 任意後見人の解任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 二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 う。)を本案とする保全処分について準用す 심판: 신청인

2. 임의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임의후견감독 인

3. 임의후견감독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본인과 친족

4. 임의후견인 해임심판: 본인 및 임의후견

5. 임의후견인의 해임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임의후견감독인 및 본인과 친족

6.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심판: 본인 및 임의후견인

7.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224조(임의후견감독인 사무의 조사)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임의후 견감독인의 사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5조(임의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①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임의후견감독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11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준용한 다.

② 제12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의후 견인 해임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0항의 사 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停止 し、又はその職務代行者を選任する」とある のは「停止する」と、同条第二項中「同項の 規定により選任した職務代行者」とあるのは 「任意後見監督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 る。

第二十節 戸籍法に規定する審判事件

第二百二十六条 (管轄)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一 氏又は名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百二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 申立人の住所地
- 二 就籍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十三 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就 籍しようとする地
- 三 戸籍の訂正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その戸籍のある地

四 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長の処分に対する不服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十五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 市役所(戸籍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四号)第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百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場合にあっては、区役所)又は町村役場の所在地

第二百二十七条 (手続行為能力)

같은 조 제1항 중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은 "정지하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대체한다.

제20절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제226조(관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성씨 또는 이름의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신청인의 주소지
- 2. 취적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3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취적하려 는 지역
- 3. 호적정정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 의 12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 다): 호적이 있는 지역
- 4.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5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 시청(「호적법」(1947년 법률 제224호) 제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구청) 또는 정촌사무소의 소재지

제227조(절차 행위 능력)

第百十八条の規定は、戸籍法に規定する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十二の項から百二十五の項まで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における当該審判事件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ついて準用する。ただし、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長の処分に対する不服の審判事件においては、当該処分を受けた届出その他の行為を自ら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限る。

第二百二十八条 (事件係属の通知)

家庭裁判所は、戸籍法第百十三条の規定による戸籍の訂正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が当該 戸籍の届出人又は届出事件の本人以外の者からされた場合に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当該届出人又は届出事件の本人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事件の記録上これらの者の氏名及び住所又は居所が判明している場合に限る。

第二百二十九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申立人と同一戸籍内にある者(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 長(特別区の区長を含むものとし、地方自治 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百五 十二条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にあっては、 区長又は総合区長とする。以下この節におい て同じ。)の処分に対する不服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当該市町村長の意見を聴かな ければならない。 제118조의 규정은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2항부터 125항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의 해당 심판 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심판 사건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8조(사건계속의 통지)

가정재판소는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해당 호적의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 이외의 사람이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기록상 이러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가 판명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29조(진술 및 의견 청취)

- ① 가정재판소는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사람(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 (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의 경우는 구장 또는 종합구장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二百三十条 (審判の告知等)

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長の処分に対する 不服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は、第七十四条 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当該市町村長に 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庭裁判所は、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 長の処分に対する不服の申立てを理由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は、当該市町村長に対し、相当 の処分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三十一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利害関係 人(申立人を除く。)
- 二 氏又は名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 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就籍許可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四 戸籍の訂正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利害関係人(申立人を除く。)

五 戸籍の訂正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却下 する審判 申立人

六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市町村長に相当の 処分を命ずる審判 当該市町村長

七 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長の処分に対する不服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第二十一節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審

제230조(심판 고지 등)

①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혼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은 제74조제1 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해당 시정혼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재판소는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정촌장에게 타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231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성씨 변경에 대한 허가심판: 이해관계인 (신청인을 제외한다)
- 2. 성씨 또는 이름의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취적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4. 호적정정에 대한 허가심판: 이해관계인 (신청인을 제외한다)
- 5. 호적정정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6.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장에게 타당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 해당 시정촌장
- 7.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21절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判事件

第二百三十二条

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二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は、申立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第百十八条の規定は、性別の取扱いの変更 の審判事件における申立人について準用す る。
- 3 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申立てをした者は、 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 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二節 厚生年金保険法に規定する 審判事件

第二百三十三条

請求すべき 按 分割合に関する処分の審判事件 (別表第二の十六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申立人又は相手方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申立人及び相手方は、請求すべき按分割合 に関する処分の審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 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3 請求すべき按分割合に関する処分の審判の 手続については、第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 は、適用しない。

第二十三節 児童福祉法に規定する審判

는 심판 사건

제232조

- ① 성별 취급의 변경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은 신청인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제118조의 규정은 성별 취급의 변경심판사건의 신청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성별 취급의 변경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제22절 「후생연금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제233조

- ① 청구할 분할 비율에 관한 처분심판 사건 (별표 제2의 16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신청인 및 상대방은 청구할 분할 비율에 관한 처분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청구할 분할 비율에 관한 처분심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事件

第二百三十四条 (管轄)

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百二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次条において同じ。)、都 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認の 審判事件(同表の百二十八の項の事項につい ての審判事件をいう。同条において同じ。) 及び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 いての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事件 (同表の百二十八の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同条において同じ。)は、 児童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 属する。

第二百三十五条 (手続行為能力)

第百十八条の規定は、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事件、都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事件及び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いての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事件における児童を現に監護する者、児童に対し親権を行う者、児童の未成年後見人及び児童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三十六条(陳述及び意見の聴取)

家庭裁判所は、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都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認又は児童相談所長若しく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いての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をする場合に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前条に規定する者(児童にあっては、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

심판 사건

제234조(관할)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 도도부현의 조치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같은 표의 128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같은 조에서 같다) 및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계속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같은 표의 128의2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같은 조에서 같다)은 아동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제235조(절차 행위 능력)

제118조의 규정은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 및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계속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심판 사건의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및 아동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36조(진술 및 의견 청취)

① 가정재판소는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의 갱신에 대한 승인 또는 아동상담소장이나 도도부현지사의계속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 신청에 대한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아동의 경우는 1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진술을 들어

る。)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家庭裁判所は、申立 人に対し、児童を現に監護する者、児童に対 し親権を行う者及び児童の未成年後見人の陳 述に関する意見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三十七条 (審判の告知)

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都道府県の 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認又は児童相 談所長若しく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いての 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は、第七十四 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児童を現に監 護する者、児童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児童 の未成年後見人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三十八条 (即時抗告)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 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 児 童を現に監護する者、児童に対し親権を行う 者及び児童の未成年後見人
- 二 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認の申立てを 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都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 認の審判 児童を現に監護する者、児童に対し 親権を行う者及び児童の未成年後見人

四 都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についての承認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

五 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い

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가정재판소는 신청인에게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의 진술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7조(심판 고지)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 또는 아동상담 소장이나 도도부현지사의 계속적인 일시보호 에 대한 승인심판은 제74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사람 외에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아 동의 미성년후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8조(즉시항고)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심판: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 2.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 심판: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아동의 미 성년후견인
- 4.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5.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계속

ての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審判 児童を現 に監護する者、児童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 児童の未成年後見人

六 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事の引き続い ての一時保護についての承認の申立てを却下 する審判 申立人

第二百三十九条 削除

第二十四節 生活保護法等に規定する審 判事件

第二百四十条

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 (別表第一の百二十九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 審判事件をいう。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は、被保護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 の管轄に属する。

- 2 扶養義務者の負担すべき費用額の確定の審 判事件(別表第二の十七の項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は、扶養義務者(数人 に対する申立てに係るものにあっては、その うちの一人)の住所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 の管轄に属する。
- 3 第百十八条の規定は、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における被保護者、被保護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被保護者の後見人について準用する。
- 4 家庭裁判所は、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 許可の申立てについての審判をする場合に 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申立てに 理由がないことが明らかなときを除き、被保 護者(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被保護

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심판: 아동을 현재 양육하는 사람,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아동의 미성년후견인

6.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계속 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239조 삭제

제24절 「생활보호법」 등에서 규정하 는 심판 사건

제240조

- ①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9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은 피보호자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②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액의 확정심판 사건(별표 제2의 17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부양의무자(여러 명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것의 경우는 그중 한명)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③ 제118조의 규정은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심판 사건의 피보호자, 피보호자에 대하 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피보호자의 후 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④ 가정재판소는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이유가 없음이 분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15세 이상인 사람 에 한한다), 피보호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

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被保護者の後見人 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5 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は、 第七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のほか、被保 護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被保護者の後見 人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 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一 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 被 保護者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被保護者の後 見人
- 二 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可の申立てを 却下する審判 申立人
- 三 扶養義務者の負担すべき費用額の確定の審 判及び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申立人及び 相手方
- 第二十五節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 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 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審判事件

第二百四十一条

保護者の順位の変更及び保護者の選任の審判 事件(別表第一の百三十の項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第四項において同じ。) は、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第二条 第二項に規定する対象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 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하는 사람 및 피보호자의 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⑤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심판은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람 외에 피보호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피보호자의 후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 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심판: 피보호자 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피보호 자의 후견인
- 2.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 3.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액의 확 정심판 및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및 상대방

제25절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제241조

① 보호자 순위의 변경 및 보호자 선임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30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4항에서 같다)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자의 주소지의 가정재판소가 관할한다.

- 2 家庭裁判所は、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をす 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申立人を 除く。) 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保護者の順位の変更の審判 先順位に変更 される者
- 二 保護者の選任の審判 保護者となるべき者
- 3 保護者の順位の変更又は保護者の選任の申 立てをした者は、そ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家庭裁判所は、いつでも、保護者の順位の 変更及び保護者の選任の審判事件において選 任した保護者を改任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六節 破産法に規定する審判事件

第二百四十二条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事件は、当該各号に定 める地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 る。

- 一 破産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夫婦財 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の審判事 件(別表第一の百三十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 の審判事件をいう。第三項において同じ。) 夫又は妻の住所地
- 二 親権を行う者につき破産手続が開始された 場合における管理権喪失の審判事件 子の住所 地
- 三 破産手続における相続の放棄の承認につい ての申述の受理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三 十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

- ② 가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신청인을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보호자 순위의 변경심판: 선순위로 변경 되는 사람
- 2. 보호자 선임심판: 보호자가 될 사람
- ③ 보호자 순위의 변경 또는 보호자 선임의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가정재판소는 언제든지 보호자 순위의 변 경 및 보호자 선임의 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보호자를 개임할 수 있다.

제26절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건

제242조

- ① 다음 각 호의 심판 사건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역의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 사건(별 표 제1의 131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 남편 또는 아내의 주소지
- 2.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건: 자 녀의 주소지
- 3. 파산절차의 상속포기의 승인에 대한 신고 수리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33항의 사항 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

第三項において同じ。) 相続が開始した地

2 破産管財人は、破産手続における相続の放棄の承認についての申述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百五十二条第一項、第百五十四条第二項 (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百五十五 条、第百五十六条(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 る。) 及び第百五十八条の規定は破産手続が 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夫婦財産契約による 財産の管理者の変更等の審判事件について、 第百六十八条(第三号に係る部分に限 る。)、第百六十九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 部分に限る。)、第百七十条(第一号に係る 部分に限る。)、第百七十二条第一項(第三 号及び第四号に係る部分に限る。) 及び第二 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並びに第百 七十四条の規定(管理権喪失に関する部分に 限る。) は親権を行う者につき破産手続が開 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管理権喪失の審判事件 について、第二百一条第五項から第八項まで の規定は破産手続における相続の放棄の承認 についての申述の受理の審判事件について準 用する。

第二十七節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審 判事件

第二百四十三条

遺留分の算定に係る合意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事件(別表第一の百三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審判事件をいう。)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地を管轄す

다): 상속이 개시된 지역

②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상속포기 승인에 대한 신고를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52조제1항, 제154조제2항(제2호와 관 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5조, 제156조 (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58 조의 규정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부재 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등의 심판 사건에 대하여 제168조(제3호와 관련된 부분 에 한정한다), 제169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0조(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74 조의 규정(재산관리권상실에 관한 부분에 한 정한다)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파 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건에 대하여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상속포기 승인에 대한 신고 수리의 심판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절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심판 사 건

제243조

①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허가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34항의 사항에 대한 심판 사건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 る家庭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 一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年法律第三十三号)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合意(同法第五条又は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合意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同法第四条第一項及び第五条又は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合意)についての申立て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 同法第三条第二項の旧代表者の住所地
- 二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合意(同法第五条又は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合意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同法第四条第三項及び第五条又は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合意)についての申立て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同法第三条第四項の旧個人事業者の住所地
- 2 遺留分の算定に係る合意についての許可の審判は、当該合意の当事者の全員に告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次の各号に掲げる審判に対し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遺留分の算定に係る合意についての許可の 審判 当該合意の当事者(申立人を除く。)
- 二 遺留分の算定に係る合意についての許可の 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 当該合意の当事者

第三編 家事調停に関する手続 第一章 総則

는 지역의 가정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 1.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33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것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전대표자의 주소지
- 2.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같은법 제5조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합의를 한 경우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제5조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합의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것인 경우: 같은법 제3조제4항의 전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 ②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허가심판은 해당 합의의 당사자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허가 심판: 해당 합의의 당사자(신청인을 제외한 다)
- 2.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합의에 대한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해당 합의의 당사자

제3편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第一節 通則

第二百四十四条(調停事項等)

家庭裁判所は、人事に関する訴訟事件その他家庭に関する事件(別表第一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事件を除く。)について調停を行うほか、この編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審判をする。

第二百四十五条(管轄等)

家事調停事件は、相手方の住所地を管轄する 家庭裁判所又は当事者が合意で定める家庭裁 判所の管轄に属する。

- 2 民事訴訟法第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合意について準用する。
- 3 第百九十一条第二項及び第百九十二条の規定は、遺産の分割の調停事件(別表第二の十二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をいう。)及び寄与分を定める処分の調停事件(同表の十四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をい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百九十一条第二項中「前項」とあるのは、「第二百四十五条第一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百四十六条(地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 への移送)

家庭裁判所は、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り 調停を行うことができる事件以外の事件につ いて調停の申立てを受けた場合には、職権 で、これを管轄権を有する地方裁判所又は簡 易裁判所に移送する。

2 家庭裁判所は、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

제1절 통칙

제244조(조정사항 등)

가정재판소는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그 밖에 가정에 관한 사건(별표 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사건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외에 이 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을 한다.

제245조(관할 등)

- ① 가사조정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의 가정 재판소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가정재 판소의 관할로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합의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91조제2항 및 제192조의 규정은 유산분할 조정사건(별표 제2의 12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 및 기여분을 정하는 처분의 조정사건(같은 표의 14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제2항 중 "전항"은 "제245조제1항"으로 대체한다.

제246조(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로의 이 송)

- ① 가정재판소는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권을 가진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로 이송한다.
- ② 가정재판소는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

り調停を行うことができる事件について調停 の申立て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事件を処理 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 で、事件の全部又は一部を管轄権を有する地 方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 きる。

3 家庭裁判所は、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特に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二項の規定に かかわらず、その事件を管轄権を有する地方 裁判所又は簡易裁判所以外の地方裁判所又は 簡易裁判所(事物管轄権を有するものに限 る。)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九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移送の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四十七条 (調停機関)

家庭裁判所は、調停委員会で調停を行う。ただし、家庭裁判所が相当と認めるときは、裁判官のみで行うことができる。

2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の申立てがあるとき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かかわらず、調停 委員会で調停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四十八条 (調停委員会)

調停委員会は、裁判官一人及び家事調停委員 二人以上で組織する。

- 2 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家事調停委員は、家庭裁判所が各事件について指定する。
- 3 調停委員会の決議は、過半数の意見による。可否同数の場合には、裁判官の決すると

정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권을 가진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권을 가진 지방재판소나 간이재판소 이외의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사물관할권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3 항의 규정에 따른 이송의 재판에 대하여 준 용한다.

제247조(조정기관)

- ① 가정재판소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만 진행할 수 있다.
- ② 가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8조(조정위원회)

- ① 조정위원회는 재판관 한 명 및 가사조정 위원 두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사조정위원은 가정재판소가 사건마다 지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결의는 조정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재판

ころによる。

4 調停委員会の評議は、秘密とする。

第二百四十九条 (家事調停委員)

家事調停委員は、非常勤とし、その任免に関 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2 家事調停委員に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当を支給し、並びに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額の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支給する。

第二百五十条 (家事調停官の任命等)

家事調停官は、弁護士で五年以上その職にあったもののうちから、最高裁判所が任命する。

- 2 家事調停官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家事調停事件の処理に必要な職務を行う。
- 3 家事調停官は、任期を二年とし、再任されることができる。
- 4 家事調停官は、非常勤とする。
- 5 家事調停官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する場合を除いては、在任中、その意に反し て解任されることがない。
- 一 弁護士法 (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 第七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ったと き。
- 二 心身の故障のため職務の執行ができないと

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비밀로 한다.

제249조(가사조정위원)

- ① 가사조정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가사조정위원에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제250조(가사조정관의 임명 등)

- ① 가사조정관은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한다.
- ② 가사조정관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사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③ 가사조정관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가사조정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⑤ 가사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제
 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2. 심신의 이상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認められたとき。

三 職務上の義務違反その他家事調停官たるに適しない非行があると認められたとき。

6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家事調停官 の任免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 で定める。

第二百五十一条 (家事調停官の権限等)

家事調停官は、家庭裁判所の指定を受けて、 家事調停事件を取り扱う。

- 2 家事調停官は、その取り扱う家事調停事件の処理について、この法律において家庭裁判所、裁判官又は裁判長が行うものとして定める家事調停事件の処理に関する権限を行うことができる。
- 3 家事調停官は、独立してその職権を行う。
- 4 家事調停官は、その権限を行うについて、 裁判所書記官、家庭裁判所調査官及び医師で ある裁判所技官に対し、その職務に関し必要 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 て、裁判所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九 号)第六十条第五項の規定は、家事調停官の 命令を受けた裁判所書記官について準用す る。
- 5 家事調停官に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当を支給し、並びに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額の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支給する。

第二百五十二条 (手続行為能力)

次の各号に掲げる調停事件(第一号及び第二

- 고 인정되었을 때
- 3. 직무상의 의무위반, 가사조정관으로서 부 적합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⑥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가사조정관 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1조(가사조정관의 권한 등)

- ① 가사조정관은 가정재판소의 지정을 받아 가사조정사건을 취급한다.
- ② 가사조정관은 취급하는 가사조정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가정재판소, 재 판관 또는 재판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가사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사조정관은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 ④ 가사조정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 재판소서기관, 가정재판소 조사관 및 의사인 재판소 기관에게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법」(1947년법률 제59호) 제60조제5항의 규정은 가사조정관의 명령을 받은 재판소서기관에 대하여준용한다.
- ⑤ 가사조정관에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최고재판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한다.

제252조(절차 행위 능력)

① 다음 각 호의 조정사건(제1호와 제2호의

号にあっては、財産上の給付を求めるものを 除く。)にお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は、 第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 第三十一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定代理人 によらずに、自ら手続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 る。その者が被保佐人又は被補助人(手続行 為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補助人の同意を得る ことを要するものに限る。)であって、保佐 人工は補助人若しくは補助 助監督人の同意がない場合も、同様とする。

-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る処分の調停事件 (別表第二の一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をいう。) 夫及び妻
- 二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の調停事件(別表第 二の三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をい う。) 子
- 三 養子の離縁後に親権者となるべき者の指定 の調停事件(別表第二の七の項の事項につい ての調停事件をいう。) 養子、その父母及び 養親

四 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の調停事件(別表第二の八の項の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をいう。) 子及びその父母

五 人事訴訟法第二条に規定する人事に関する 訴え (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単に 「人事に関する訴え」という。)を提起する 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 同法第 十三条第一項の規定が適用されることにより 訴訟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者

2 親権を行う者又は後見人は、第十八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調停事件(同項第一号の調停事

경우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제1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절차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으로서, 보좌인나 보좌감독인 또는 보조인이나 보조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의 조정사건(별표 제2의 1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 남편 및 아내
-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조정사건(별표 제2의 3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 자녀
- 3. 파양 후 친권자가 될 사람의 지정 조정사건(별표 제2의 7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 양자, 부모 및 양부모
- 4.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조정사건(별표 제2의 8항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을 말한다): 자녀 및 부모
- 5. 「인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소(제277조제1항에서 간단히 "인사에 관한 소"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람
- ②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후견인은 제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 제1호·제3 호 및 제4호에 열거하는 조정사건(같은 항

件にあっては、財産上の給付を求めるものを除く。)においては、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代理して第二百六十八条第一項の合意、第二百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調停条項案の受諾及び第二百八十六条第八項の共同の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離婚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おける夫及び妻の後見人並びに離縁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おける養親の後見人、養子(十五歳以上の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親権を行う者及び養子の後見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二百五十三条 (調書の作成)

裁判所書記官は、家事調停の手続の期日について、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裁判長においてその必要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五十四条 (記録の閲覧等)

当事者又は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裁判所書記官に対し、家事調停事件の記録の閲覧若しくは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家事調停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家事調停事件の記録中の録音テープ又はビデオテープ(これら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記録した物を含む。)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事者又は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裁判所書記官に対し、これらの物の複製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家庭裁判所は、当事者又は利害関係を疎明

제1호의 조정사건의 경우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는 해당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제268조제1항의 합의,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정조항안의 수락 및 제286조제8항의 공동신청을 할 수 없다. 이혼에 대한 조정사건의남편 및 아내의 후견인 및 파양에 대한 조정사건의 양부모의 후견인, 양자(15세 이상인사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및 양자의 후견인에 대해서도 같다.

제253조(조서의 작성)

재판소서기관은 가사조정절차 기일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54조(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서기관에게 가사조정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또는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기록 중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이러한 것에 준 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서 기관에게 이러한 것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가정재판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

した第三者から前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第六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 4 次に掲げる書面については、当事者は、第 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家庭裁判所の許可 を得ずに、裁判所書記官に対し、その交付を 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審判書その他の裁判書の正本、謄本又は抄 本
- 二 調停において成立した合意を記載し、又は 調停をしないものとして、若しくは調停が成 立しないものとして事件が終了した旨を記載 した調書の正本、謄本又は抄本
- 三 家事調停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
- 5 家事調停事件の記録の閲覧、謄写及び複製の請求は、家事調停事件の記録の保存又は裁判所若しくは調停委員会の執務に支障があるとき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 6 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おいて、当事者から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ついては、第四十七条第三項、第四項及び第八項から第十項までの規定を準用する。

第二節 家事調停の申立て等

第二百五十五条(家事調停の申立て)

家事調停の申立ては、申立書(次項及び次条 において「家事調停の申立書」という。)を 명한 제3자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 청을 한 경우(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판소서기관에게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심판서, 그 밖의 재판서의 정본, 등본 또 는 초본
- 2. 조정에서 성립된 합의를 기재하거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 3.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 ⑤ 가사조정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및 복제의 청구는 가사조정사건 기록의 보존 또는 재판소나 조정위원회의 집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⑥ 제2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에서 당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가사조정 신청 등

제255조(가사조정 신청)

① 가사조정은 신청서(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가사조정 신청서"라 한다)를 가정재판소

家庭裁判所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家事調停の申立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 二 申立ての趣旨及び理由
- 3 家事調停の申立てを不適法として却下する 審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 る。
- 4 第四十九条第三項から第六項まで及び第五 十条(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 家事調停の申立て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第四十九条第四項中「第二項」 とあるのは、「第二百五十五条第二項」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二百五十六条 (家事調停の申立書の写しの 送付等)

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又は家事調停の手続の期日を経ないで第二百七十一条の規定により家事調停事件を終了させるときを除き、家事調停の申立書の写しを相手方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事調停の手続の円滑な進行を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ことを通知することをもって、家事調停の申立書の写しの送付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2 第四十九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は 前項の規定による家事調停の申立書の写しの 送付又はこれに代わる通知をすることができ ない場合について、第六十七条第三項及び第

- 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한다.
- ② 가사조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③ 가사조정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4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가사조 정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 중 "제2항"은 "제255조제2항"으로 대체한다.

제256조(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의 송달 등)

- ① 가정재판소는 가사조정 신청이 부적합하 거나 가사조정절차의 기일을 거치지 아니하 고 제271조의 규정에 따라 가사조정사건을 종료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가사조정 신청서 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 만, 가사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의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의 송달 또는 이를 갈음하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67조제3항과 제

四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家事調停の申立書の写しの送付又はこれに代わる通知の費用の予納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五十七条 (調停前置主義)

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り調停を行うこと ができる事件について訴えを提起しようとす る者は、まず家庭裁判所に家事調停の申立て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事件について家事調停の申立てをすることなく訴えを提起した場合には、裁判所は、職権で、事件を家事調停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裁判所が事件を調停に付す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付する場合においては、事件を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に処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事調停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件を管轄権を有する家庭裁判所以外の家庭裁判所に処理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三節 家事調停の手続

第二百五十八条(家事審判の手続の規定の準 用等)

第四十一条から第四十三条までの規定は家事調停の手続における参加及び排除について、第四十四条の規定は家事調停の手続における受継について、第五十一条から第五十五条までの規定は家事調停の手続の期日について、第五十六条から第六十二条まで及び第六十四条の規定は家事調停の手続における事実の調

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의 송달 또는 이를 갈음하는 통 지 비용의 예납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257조(조정전치주의)

①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재판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직 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다 만, 재판소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 이외의 가정재판소가 처리하도록할 수 있다.

제3절 가사조정절차

제258조(가사심판절차의 규정 준용 등)

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참가 및 배제에 대하여, 제44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승계에 대하여,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가사조정절차기일에 대하여,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4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은 가

査及び証拠調べについて、第六十五条の規定 は家事調停の手続における子の意思の把握等 について、第七十三条、第七十四条、第七十 六条(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第七十七 条及び第七十九条の規定は家事調停に関する 審判について、第八十一条の規定は家事調停 に関する審判以外の裁判について準用する。

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六十一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り家事調停の手続における事実の調 査の嘱託を受けた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 きは、裁判所書記官に当該嘱託に係る事実の 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嘱託を 受けた家庭裁判所が家庭裁判所調査官に当該 嘱託に係る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を相当と 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五十九条 (調停委員会が行う家事調停の手続の指揮)

調停委員会が行う家事調停の手続は、調停委 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が指揮する。

第二百六十条(調停委員会等の権限)

調停委員会が家事調停を行う場合には、次に 掲げる事項に関する裁判所の権限は、調停委 員会が行う。

- 一 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手続代理人の許可 等
- 二 第二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 六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補佐人 の許可等
- 三 第三十三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傍聴の許

사조정절차의 자녀의 의사 파악 등에 대하여,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 제77조 및 제79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제81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에 관한 심판 이외의 재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사조정절차의 사실조사촉탁을 받은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해당 촉탁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을 받은 가정재판소가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해당촉탁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9조(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가사조정절 차의 지휘)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가사조정절차는 조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이 지휘한다.

제260조(조정위원회 등의 권한)

- ① 조정위원회가 가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판소의 권한은 조정위원회가 진행한다.
- 1.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대리인의 허가 등
-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 6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좌인의 허가 등
- 3.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방청의 허가

可

四 第三十五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併合等

五 第二百五十五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 五十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よる申立て の変更

六 第二百五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 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四十二条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五項の規定によ る参加、第四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排 除、第四十四条第一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 る受継、第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事件 の関係人の呼出し、第五十四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音声の送受信による通話の方法による 手続並びに第五十六条第一項、第五十九条第 一項及び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六十条第 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六 十一条第一項、第六十二条並びに第六十四条 第五項の規定並びに同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 する民事訴訟法の規定による事実の調査及び 証拠調べ(過料及び勾引に関する事項を除 (。)

2 調停委員会が家事調停を行う場合には、第二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手続代理人の選任等、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期日の指定並びに第二百五十三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調書の作成に関する裁判長の権限は、当該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が行う。

第二百六十一条 (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 官による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等)

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は、当該調停委 員会の決議により、事実の調査及び証拠調べ

- 4.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병합 등
- 5. 제2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0조제3항 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변경

6. 제25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제, 제4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소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 송수신에 의한 통화 방법에 따른 절차 및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과 제2항(이러한 규정을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제1항, 제62조 및 제64조제5항의 규정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과료 및 구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가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대리인의 선임 등,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지정 및 제25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조서의 작성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해당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이행사한다.

제261조(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은 해당 조 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실조사 및 증거조

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場合には、裁判官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又は医師である裁判所技官に事件の関係人の心身の状況について診断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3 第五十八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事実の調査及び心身の状況についての診断について準用する。
- 4 第一項の場合には、裁判官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5 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は、当該調停 委員会の決議により、家庭裁判所調査官に第 五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とらせる 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六十二条(家事調停委員による事実の 調査)

調停委員会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調 停委員会を組織する家事調停委員に事実の調 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家庭裁判 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を相当と 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百六十三条(意見の聴取の嘱託)

調停委員会は、他の家庭裁判所又は簡易裁判 所に事件の関係人から紛争の解決に関する意 見を聴取すること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の聴取の嘱託を受け

사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관은 가정재판소 조 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의사인 재판소 기관에게 사건관계인의 심신 상태에 대하여 진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5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신 상태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재판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가정재판소 조사 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재판관은 해당 조 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정재판소 조사관 에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2조(가사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가사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가정 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3조(의견 청취의 촉탁)

-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에 관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다른 가정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 촉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의 촉탁을

た家庭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家事 調停委員に当該嘱託に係る意見を聴取させる 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六十四条 (家事調停委員の専門的意見の の聴取)

調停委員会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該調停委員会を組織していない家事調停委 員の専門的な知識経験に基づく意見を聴取す 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り意見を聴取する家事調停 委員は、家庭裁判所が指定する。
- 3 前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受けた家事調停委員は、調停委員会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るものとする。

第二百六十五条 (調停の場所)

調停委員会は、事件の実情を考慮して、裁判 所外の適当な場所で調停を行うことができ る。

第二百六十六条 (調停前の処分)

調停委員会は、家事調停事件が係属している間、調停のために必要であると認める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2 急迫の事情があるときは、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裁判官が前項の処分(以下「調停前の処分」とい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3 調停前の処分は、執行力を有しない。
- 4 調停前の処分として必要な事項を命じられた当事者又は利害関係参加人が正当な理由な

받은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사조정위원에게 해당 촉탁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4조(가사조정위원의 전문적 의견 청취)

-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가사조정 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가 사조정위원은 가정재판소가 지정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가사조 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한다.

제265조(조정 장소)

조정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소 외의 장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66조(조정 전의 처분)

- ① 조정위원회는 가사조정사건이 계속 중인 기간 동안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 전항의 처분(이하 "조정 전의 처분"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③ 조정 전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④ 조정 전의 처분으로 필요한 사항을 명령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참가인이 정당한

くこれに従わ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十 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二百六十七条(裁判官のみで行う家事調停 の手続)

裁判官のみで家事調停の手続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を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第二百六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裁判官のみで家事調停の手続を行う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節 調停の成立

第二百六十八条(調停の成立及び効力)

調停において当事者間に合意が成立し、これ を調書に記載したときは、調停が成立したも のとし、その記載は、確定判決(別表第二に 掲げる事項にあっては、確定した第三十九条 の規定による審判)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 2 家事調停事件の一部について当事者間に合意が成立したときは、その一部について調停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る。手続の併合を命じた数個の家事調停事件中その一について合意が成立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 3 離婚又は離縁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おいて は、第二百五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 第五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って は、調停を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 4 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第二百七十七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 재판소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제267조(재판관만으로 진행하는 가사조정절 차)

- ① 재판관만으로 가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재판소서기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263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재판관 만으로 가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 하여 준용한다.

제4절 조정의 성립

제268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확정판결(별표 제2의 사항의 경우는 확정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가사조정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도록 할 수 있다. 절차의 병합을 명한 여러 개의 가사조정사건 중 하나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도 같다.
- ③ 이혼 또는 파양에 대한 조정사건은 제 25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조정이 성립되도록 할 수 없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277조제1항에

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項についての調停事件 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二百六十九条(調停調書の更正決定)

調停調書に計算違い、誤記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明白な誤り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いつでも更正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更正決定は、裁判書を作成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更正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4 第一項の申立てを不適法として却下した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七十条(調停条項案の書面による受 諾)

当事者が遠隔の地に居住していることその他 の事由により出頭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認 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あらか じめ調停委員会(裁判官のみで家事調停の手 続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その裁判官。次条 及び第二百七十二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から提示された調停条項案を受諾する旨の書 面を提出し、他の当事者が家事調停の手続の 期日に出頭して当該調停条項案を受諾したと きは、当事者間に合意が成立したものとみな す。

2 前項の規定は、離婚又は離縁についての調停事件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五節 調停の成立によらない事件の終

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조정조서의 경정결정)

- ① 조정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가정재판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경정결정은 재판서를 작성해서 하여야 한다.
- ③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부적법하여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70조(조정조항안의 서면에 의한 수락)

- ① 당사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밖의 사유로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미리 조정위원회(재판관만으로 가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재판관. 다음 조 및 제272조제1항에서 같다)로부터 제시받은 조정조항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가가사조정절차 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조정조항안을 수락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이혼 또는 파양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조정의 성립에 의하지 아니하는

了

第二百七十一条(調停をしない場合の事件の 終了)

調停委員会は、事件が性質上調停を行うのに 適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当事者が不当 な目的でみだりに調停の申立てをしたと認め るときは、調停をしないものとして、家事調 停事件を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七十二条 (調停の不成立の場合の事件 の終了)

調停委員会は、当事者間に合意(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合意を含む。)が成立する見込みがない場合又は成立した合意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場合には、調停が成立しないものとして、家事調停事件を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家庭裁判所が第二百八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停に代わる審判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2 前項の規定により家事調停事件が終了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当事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当事者が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時に、その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り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 についての調停事件が終了した場合には、家 事調停の申立ての時に、当該事項についての 家事審判の申立て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사건의 종료

제271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72조(조정 불성립)

-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제277조 제1항제1호의 합의를 포함한다)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을 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하였을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조정사건이 종료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第二百七十三条(家事調停の申立ての取下 げ)

家事調停の申立ては、家事調停事件が終了するまで、そ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2 民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条第三項及び第二 百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は、家事調停の申立 ての取下げ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二百六十一条第三項ただし書中 「口頭弁論、弁論準備手続又は和解の期日 (以下この章において「口頭弁論等の期日」 という。)」とあるのは、「家事調停の手続 の期日」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六節 付調停等

第二百七十四条(付調停)

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により調停を行うことができる事件についての訴訟又は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場合には、裁判所は、当事者(本案について被告又は相手方の陳述がされる前にあっては、原告又は申立人に限る。)の意見を聴いて、いつでも、職権で、事件を家事調停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 2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 付する場合においては、事件を管轄権を有す る家庭裁判所に処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家事調停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特に 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事件を管轄権を 有する家庭裁判所以外の家庭裁判所に処理さ せ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及び高等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付する場合には、前項

제273조(가사조정 신청의 취하)

- ① 가사조정 신청은 가사조정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민사소송법」 제261조제3항 및 제262 조제1항의 규정은 가사조정 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단서 중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또 는 화해의 기일(이하 이 장에서 "구두변론 등의 기일"이라 한다)"은 "가사조정절차 기 일"로 대체한다.

제6절 부조정 등

제274조(부조정)

- ①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소송 또는 가사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재판소는 당사자(본안에 대하여 피고 또는 상대방의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신청인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어 언제든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 재판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재판소 이외의 가정재판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 및 고등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家事調停事件を自 ら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又は高等裁判 所が調停委員会で調停を行うときは、調停委 員会は、当該裁判所がその裁判官の中から指 定する裁判官一人及び家事調停委員二人以上 で組織する。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高等裁判所が自ら調停 を行う場合についてのこの編の規定の適用に ついては、第二百四十四条、第二百四十七 条、第二百四十八条第二項、第二百五十四条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二百六十四条第二 項、第二百六十六条第四項、第二百六十九条 第一項並びに第二百七十二条第一項ただし書 及び第二項並びに次章及び第三章の規定中 「家庭裁判所」とあるのは「高等裁判所」 と、第二百四十四条、第二百五十八条第一 項、第二百七十六条、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 第一号、第二百七十九条第三項及び第二百八 十四条第一項中「審判」とあるのは「審判に 代わる裁判」と、第二百六十七条第一項中 「家庭裁判所は」とあるのは「高等裁判所 は」と、次章の規定中「合意に相当する審 判」とあるのは「合意に相当する審判に代わ る裁判」と、第二百七十二条第一項ただし書 及び第三章の規定(第二百八十六条第七項の 規定を除く。) 中「調停に代わる審判」とあ るのは「調停に代わる審判に代わる裁判」 と、第二百八十一条及び第二百八十七条中 「却下する審判」とあるのは「却下する審判 に代わる裁判」とする。

第二百七十五条(訴訟手続及び家事審判の手 続の中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조정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재판소 또는 고 등재판소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해당 재판소가 그 재판 관 중에서 지정하는 재판관 한 명 및 가사조 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구성하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 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제244조, 제247조, 제248 조제2항, 제2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 264조제2항, 제266조제4항, 제269조제1항 및 제272조제1항 단서와 제2항 및 다음 장 과 제3장의 규정 중 "가정재판소"는 "고등재 판소"로, 제244조, 제258조제1항, 제276조, 제277조제1항제1호, 제279조제3항 및 제 284조제1항 중 "심판"은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로, 제267조제1항 중 "가정재판소는" 은 "고등재판소는"으로, 다음 장의 규정 중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은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로, 제272조제1항 단서 및 제3장의 규정(제286조제7항의 규정 을 제외한다) 중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은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 로, 제281조 및 제287조 중 "각하하는 심 판"은 "각하하는 심판을 갈음하는 재판"으로 하다.

제275조(소송절차 및 가사심판절차의 중지)

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訴訟が係属しているとき、又は訴訟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が第二百五十七条第二項若し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付したときは、訴訟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は、家事調停事件が終了するまで訴訟手続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とき、又は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付したときは、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は、家事調停事件が終了するまで、家事審判の手続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七十六条 (訴えの取下げの擬制等)

訴訟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が第二百五十七条 第二項又は第二百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事件を調停に付した場合において、調停が 成立し、又は次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八十 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審判が確定したとき は、当該訴訟について訴えの取下げがあった ものとみなす。

2 家事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る裁判所が第二 百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調停に 付した場合において、調停が成立し、又は第 二百八十四条第一項の審判が確定したとき は、当該家事審判事件は、終了する。

第二章 合意に相当する審判

第二百七十七条(合意に相当する審判の対象 及び要件)

人事に関する訴え(離婚及び離縁の訴えを除

①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때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소가 제257조제2항이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을 때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소는 가사조정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가사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때, 또는 가사심판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소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을 때에는 가사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소는 가사조정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가사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76조(소 취하의 의제 등)

① 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소가 제257조제2 항 또는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다음 조 제1항 또는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소송에 대하여 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가사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소가 제 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제284조 제1항의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가사심판 사건은 종료한다.

제2장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 제277조(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대상 및 요 건)

① 인사에 관한 소(이혼 및 파양의 소를 제

- く。)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調停の手続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必要な事実を調査した上、第一号の合意を正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合意に相当する審判(以下「合意に相当する審判」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事項に係る身分関係の当事者の一方が死亡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当事者間に申立ての趣旨のとおりの審判を 受けることについて合意が成立しているこ と。
- 二 当事者の双方が申立てに係る無効若しくは 取消しの原因又は身分関係の形成若しくは存 否の原因について争わないこと。
- 2 前項第一号の合意は、第二百五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第一項及び第二百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っては、成立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
- 3 第一項の家事調停の手続が調停委員会で行わ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合意に相当する審判をす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調停委員会を組織する家事調停委員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二百七十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家庭裁判所が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合意を正当と認め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七十八条(申立ての取下げの制限)

家事調停の申立ての取下げは、合意に相当する審判がされた後は、相手方の同意を得なけ

- 외한다)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가사 조정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필요한 사실 을 조사한 다음 제1호의 합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 (이하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과 관련된 신분 관계의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한 후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당사자 간에 신청의 취지대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었을 것
- 2. 당사자 쌍방이 신청과 관련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나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생존 여부의 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할 것
- ② 전항 제1호의 합의는 제25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성립되도록 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가사조정절차가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우,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을 할 때 에는 가정재판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사조정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2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가정재판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 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다.

제278조(신청 취하의 제한)

가사조정 신청의 취하는 합의에 상응하는 심 판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第二百七十九条(異議の申立て)

当事者及び利害関係人は、合意に相当する審判に対し、家庭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事者にあっては、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要件に該当しないことを理由とする場合に限る。

- 2 前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は、二週間の不変期間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期間は、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審判の告知を受ける者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事者が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日のうち最も遅い日)から、それぞれ進行する。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をする権利は、放棄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条(異議の申立てに対する審判 等)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がした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 又は異議の申立てに理由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利害関係人がした同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も、同様とする。

- 2 異議の申立人は、前項の規定により異議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3 家庭裁判所は、当事者から適法な異議の申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9조(이의 신청)

-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에 대하여 가정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경우는 제277조제1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은 2주의 불변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기간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심판 고지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당사 자가 심판 고지를 받은 날(둘 이상 있을 때 에는 해당 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한 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제280조(이의 신청에 대한 심판 등)

- ① 가정재판소는 당사자가 한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한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도 같다.
- ② 이의 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가정재판소는 당사자가 적법한 이의 신청

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異議の申立てを 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合意に相当する 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4 利害関係人から適法な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合意に相当する審判は、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は、当事者に対し、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当事者が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時に、その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第二百八十一条(合意に相当する審判の効力)

第二百七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がないとき、又は異議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が確定したときは、合意に相当する審判は、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二百八十二条(婚姻の取消しについての合 意に相当する審判の特則)

婚姻の取消しについての家事調停の手続において、婚姻の取消しについての合意に相当する審判をするときは、この合意に相当する審判において、当事者間の合意に基づき、子の親権者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合意に相当する審判は、子の親権者 の指定につき当事者間で合意が成立しないと き、又は成立した合意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 とき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을 한 경우,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이 적법한 이의 신청을 했을 때에는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은 효력을 상실 한다. 이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81조(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효력)

제2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이 확정되 었을 때에는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은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82조(혼인취소에 대한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의 특칙)

① 혼인취소에 대한 가사조정절차에서 혼인 취소에 대한 합의에 상응하는 심판을 할 때 에는 그 심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심판은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없다.

第二百八十三条(申立人の死亡により事件が 終了した場合の特則)

夫が嫡出否認についての調停の申立てをした 後に死亡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立てに係 る子のために相続権を害される者その他夫の 三親等内の血族が夫の死亡の日から一年以内 に嫡出否認の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夫がし た調停の申立ての時に、その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第三章 調停に代わる審判

第二百八十四条(調停に代わる審判の対象及 び要件)

家庭裁判所は、調停が成立しない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双方のために 衡平に考慮し、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職権 で、事件の解決のため必要な審判(以下「調 停に代わる審判」という。)をすることがで きる。ただし、第二百七十七条第一項に規定 する事項についての家事調停の手続において は、この限りでない。

- 2 家事調停の手続が調停委員会で行わ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調停に代わる審判をすると きは、家庭裁判所は、その調停委員会を組織 する家事調停委員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 ない。
- 3 家庭裁判所は、調停に代わる審判において、当事者に対し、子の引渡し又は金銭の支払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二百八十五条(調停に代わる審判の特則)

제283조(신청인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료한 경우의 특칙)

남편이 친생부인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한 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자녀로인해 상속권을 침해받는 사람, 그 밖에 남편의 3촌 이내의 혈족이 남편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남편이 조정신청을 한 때에 그 소가 제기된것으로 본다.

제3장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 제284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대상 및 요

건)

- ① 가정재판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심판(이하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가사조정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사조정절차가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을 할 때에는 가 정재판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사조정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자녀의 인도 또는 금전의 지급, 그 밖에 재산상의 의무이행, 그 밖의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85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특칙)

家事調停の申立ての取下げは、第二百七十三 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調停に代わる 審判がされた後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調停に代わる審判の告知は、公示送達の方法によっては、することができない。
- 3 調停に代わる審判を告知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これ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百八十六条 (異議の申立て等)

当事者は、調停に代わる審判に対し、家庭裁 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 2 第二百七十九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 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につい て準用する。
- 3 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きは、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異議の申立人は、前項の規定により異議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に対し、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5 適法な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調停 に代わる審判は、その効力を失う。この場合 においては、家庭裁判所は、当事者に対し、 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6 当事者が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以内に家事調停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訴えを提起したとき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時に、その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

- ① 가사조정 신청은 제273조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이 내려진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②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고지는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을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6조(이의 신청 등)

- ① 당사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에 대하여 가정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2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준 용한다.
- ③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 다.
- ④ 이의 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이의 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사조정 신청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7 第五項の規定により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 についての調停に代わる審判が効力を失った 場合には、家事調停の申立ての時に、当該事 項についての家事審判の申立てがあったもの とみなす。

8 当事者が、申立てに係る家事調停(離婚又 は離縁についての家事調停を除く。)の手続 において、調停に代わる審判に服する旨の共 同の申出をしたときは、第一項の規定は、適 用しない。

9 前項の共同の申出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10 当事者は、調停に代わる審判の告知前に限り、第八項の共同の申出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相手方の同意を得ることを要しない。

第二百八十七条(調停に代わる審判の効力)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異議の申立てがないとき、又は異議の申立てを却下する審判が確定したときは、別表第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調停に代わる審判は確定した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と同一の効力を、その余の調停に代わる審判は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第四章 不服申立て等

第二百八十八条

家事調停の手続においてされた裁判に対する 不服申立て及び再審については、特別の定め のある場合を除き、それぞれ前編第一章第二 節及び第三節の規定を準用する。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가사심판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⑧ 당사자가 신청과 관련된 가사조정(이혼 또는 파양에 대한 가사조정을 제외한다)절차 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에 따른다는 내용 의 공동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전항의 공동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① 당사자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고지를 받기 전에 한하여 제8항의 공동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 을 필요가 없다.

제287조(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의 효력)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 거나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이 확정되었 을 때에는 별표 제2의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은 확정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외의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장 불복신청 등

제288조

가사조정절차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및 재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전편 제1장제2 절과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四編 履行の確保

1

第二百八十九条(義務の履行状況の調査及び 履行の勧告)

義務を定める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を した家庭裁判所(第九十一条第一項(第九十 六条第一項及び第九十八条第一項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抗告裁判 所が義務を定める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 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第百五条第 二項の規定により高等裁判所が義務を定める 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本案の家事審判事 件の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以 に。)は、権利者の申出があるときは、その 審判(抗告裁判所又は高等裁判所が義務を定 める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裁判。 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で定められた義 務の履行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 2 義務を定める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 をした家庭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る調査 及び勧告を他の家庭裁判所に嘱託することが できる。
- 3 義務を定める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をした家庭裁判所並びに前項の規定により調査及び勧告の嘱託を受けた家庭裁判所(次項から第六項までにおいてこれらの家庭裁判所を「調査及び勧告をする家庭裁判所」という。)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 4 調査及び勧告をする家庭裁判所は、第一項 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に関し、事件の関 係人の家庭環境その他の環境の調整を行うた

제4편 이행 확보

제289조(의무이행 상황 조사 및 이행 권고)

- ① 의무를 정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한 가정재판소(제91조제1항(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항고재판소가 의무를 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는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재판소가 의무를 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는 본안의 가사심판 사건의 제1심재판소인 가정재판소. 이하 같다)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항고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가 의무를 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는 그재판.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에서 정해진의무이행 상황을 조사하여,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의무를 정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 판을 한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다른 가정재판소에 촉탁할 수 있다.
- ③ 의무를 정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한 가정재판소와 전항의 규정에 따라조사 및 권고 촉탁을 받은 가정재판소(다음 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이러한 가정재판소를 "조사 및 권고를 하는 가정재판소"이라 한다)은 가정재판소 조사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조사 및 권고를 하는 가정재판소는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에 관하여 사 건관계인의 가정환경, 그 밖의 환경을 조정

め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家庭裁判所 調査官に社会福祉機関との連絡その他の措置 をとらせることができる。

5 調査及び勧告をする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に必要な調査を官庁、公署その他適当と認める者に嘱託し、又は銀行、信託会社、関係人の使用者その他の者に対し関係人の預金、信託財産、収入その他の事項に関して必要な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6 調査及び勧告をする家庭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の事件の関係人から当該事件の記録の閲覧等又はその複製の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7 前各項の規定は、調停又は調停に代わる審判において定められた義務(高等裁判所において定められたものを含む。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履行及び調停前の処分として命じられた事項の履行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百九十条 (義務履行の命令)

義務を定める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を した家庭裁判所は、その審判で定められた金 銭の支払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を目的とする 義務の履行を怠った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 相当と認めるときは、権利者の申立てによ り、義務者に対し、相当の期限を定めてその 義務の履行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審判をす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命令 は、その命令をする時までに義務者が履行を 怠った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するもの とする。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 재판소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조사 및 권고를 하는 가정재판소는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에 필요한 조 사를 관청, 공공기관,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하거나 은행, 신탁회 사, 관계인의 사용자, 그 밖의 자에게 관계 인의 예금, 신탁재산, 수입,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조사 및 권고를 하는 가정재판소는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의 사건관계 인이 해당 사건 기록의 열람 등 또는 복제의 청구를 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전 각 항의 규정은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에서 정해진 의무(고등재판소에서 정해진 것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의 이행 및 조정 전의 처분으로 명령받은 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90조(의무이행 명령)

① 의무를 정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한 가정재판소는 그 심판에서 정해진 금전의 지급, 그 밖에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할 수있다. 이 경우, 명령은 그 명령을 할 때까지의무자가 이행을 게을리한 의무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한다.

- 2 義務を定める第三十九条の規定による審判 をした家庭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義務 の履行を命ずるには、義務者の陳述を聴かな ければなら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は、調停又は調停に代わる審判において定められた義務の履行について準用する。
- 4 前三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一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義務の履行を命ずる審判の手続については、第二編第一章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5 第一項(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義務の履行を命じられた 者が正当な理由なくそ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 は、家庭裁判所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 る。

第五編 罰則

第二百九十一条(過料の裁判の執行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過料の裁判は、裁判官 の命令で執行する。この命令は、執行力のあ る債務名義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2 こ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過料についての裁判に関しては、非訟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一号)第五編の規定(同法第百十九条及び第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並びに同法第百二十条及び第百二十二条の規定中検察官に関する部分を除く。)を準用する。

- ② 의무를 정하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심 판을 한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이행을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의 진술 을 들어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심판에서 정해진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하다.
- ④ 전3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따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절차에대해서는 제2편제1장에게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제1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아니할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제5편 벌칙

제291조(과료 재판의 집행 등)

- ①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료의 재판은 재판관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과료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2011년 법률 제51호) 제5편의 규정(같은 법 제119조와 제121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20조와 제122조의 규정 중 검찰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第二百九十二条(人の秘密を漏らす罪)

参与員、家事調停委員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なくその職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百九十三条(評議の秘密を漏らす罪)

家事調停委員又は家事調停委員であった者が 正当な理由なく評議の経過 又は裁判官、家事 調停官若しくは家事調停委員の意見若しくは その多少の数を漏らしたときは、三十万円以 下の罰金に処する。参与員又は参与員であっ た者が正当な理由なく裁判官又は参与員の意 見を漏ら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附則抄

別表第一(第三条の二一第三条の十一、第三十九条、第百十六条一第百十八条、第百二十八条、第百二十九条、第百三十六条、第百三十七条、第百四十八条、第百五十条、第百六十条、第百六十八条、第百七十六条、第百七十六条、第百十十二条、第二百十二条、第二百十二条、第二百十十二条、第二百二十二条、第二百二十二条、第二百三十二条、第二百三十二条、第二百三十四条、第二百四十四条関係)

Table 1

別表第二(第三条の八、第三条の十一第三条の十二、第二十条、第二十五条、第三十九条、第四十条、第六十六条一第七十一条、第八十二条、第八十九条、第八十九条、第九十条、第九十二

제292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참여원, 가사조정위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3조(합의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

가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재판관, 가사조정관 또는 가사조정위원의 의견및 그 의견별 수(數)를 누설했을 때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여원 또는참여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관 또는 참여원의 의견을 누설했을 때에도같다.

부칙 생략

별표 제1(제3조의2—제3조의11, 제39조, 제116조—제118조, 제128조, 제129조, 제136조, 제137조, 제148조, 제150조, 제160조, 제168조,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 제201조—제203조, 제209조, 제216조, 제217조, 제225조—제227조, 제232조, 제234조, 제240조—제244조 관련)

丑 1

별표 제2(제3조의8, 제3조의11제3조의12, 제20조, 제25조, 제39조, 제40조, 제66조—제71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150조, 제163조, 제168조, 제182조, 제

条、第百五十条、第百六十三条、第百六十八 条、第百八十二条、第百九十条、第百九十一 条、第百九十七条、第二百三十三条、第二百 四十条、第二百四十五条、第二百五十二条、 第二百六十八条、第二百七十二条、第二百八 十六条、第二百八十七条、附則第五条関係)

Table 2

190조, 제191조, 제197조, 제233조, 제240 조, 제245조, 제252조, 제268조, 제272조, 제286조, 제287조, 부칙 제5조 관련)

丑 2

Table 1

項	事項	根拠となる法律の規定
成年後見		
_	後見開始	民法第七条
二	後見開始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十条及び同法第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 同条第一項
三	成年後見人の選任	民法第八百四十三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
四	成年後見人の辞任についての 許可	民法第八百四十四条
五.	成年後見人の解任	民法第八百四十六条
六	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	民法第八百四十九条
七	成年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 ての許可	民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 四条
八	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	民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 六条
九	成年後見に関する財産の目録 の作成の期間の伸長	民法第八百五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同法第八百五十 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成年後見人又は成年後見監督 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 め及びその取消し	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これらの 規定を同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
+	成年被後見人の居住用不動産 の処分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三(同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 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十二	成年被後見人に関する特別代 理人の選任	民法第八百六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二十六 条
十二の二	成年被後見人に宛てた郵便物 等の配達の嘱託及びその嘱託 の取消し又は変更	民法第八百六十条の二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
十三	成年後見人又は成年後見監督 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八百六十二条(同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
十四	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	民法第八百六十三条
十五	第三者が成年被後見人に与え 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八百六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三十 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十六	成年後見に関する管理の計算 の期間の伸長	民法第八百七十条ただし書
十六の二	成年被後見人の死亡後の死体 の火葬又は埋葬に関する契約 の締結その他相続財産の保存	民法第八百七十三条の二ただし書

	に必要な行為についての許可		
保佐	保佐		
十七	保佐開始	民法第十一条	
十八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 らない行為の定め	民法第十三条第二項	
十九	保佐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	民法第十三条第三項	
二十	保佐開始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十四条第一項及び第十九条第一項(同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二十一	保佐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 らない行為の定めの審判の取 消し	民法第十四条第二項	
二十二	保佐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二第一項並びに同条第二項にお 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	
二十三	保佐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四条	
二十四	保佐人の解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六条	
二十五	臨時保佐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二第三項	
二十六	保佐監督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一項	
二十七	保佐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 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四条	
二十八	保佐監督人の解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六条	
二十九	保佐人又は保佐監督人の権限 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 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五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 一項及び第二項	
三十	被保佐人の居住用不動産の処 分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五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五十九条の三	
三十一	保佐人又は保佐監督人に対す る報酬の付与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三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五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六十二条	
三十二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四第一項	
三十三	保佐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 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四第三項	
三十四	保佐の事務の監督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五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六十三条	
三十五.	保佐に関する管理の計算の期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五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間の伸長	第八百七十条ただし書	
補助	補助		
三十六	補助開始	民法第十五条第一項	
三十七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 らない行為の定め	民法第十七条第一項	
三十八	補助人の同意に代わる許可	民法第十七条第三項	
三十九	補助開始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十八条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十九条第一項 (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四十	補助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 らない行為の定めの審判の取 消し	民法第十八条第二項	
四十一	補助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七第一項並びに同条第二項にお 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	
四十二	補助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七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四条	
四十三	補助人の解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七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六条	
四十四	臨時補助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七第三項	
四十五.	補助監督人の選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一項	
四十六	補助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 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四条	
四十七	補助監督人の解任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四十六条	
四十八	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の権限 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 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十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 一項及び第二項	
四十九	被補助人の居住用不動産の処 分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十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五十九条の三	
五十	補助人又は補助監督人に対す る報酬の付与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八第二項及び第八百七十六条の 十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六十二条	
五十一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九第一項	
五十二	補助人に対する代理権の付与 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九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七十六条の四第三項	
五十三	補助の事務の監督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十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第八百六十三条	
五十四	補助に関する管理の計算の期	民法第八百七十六条の十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	

	間の伸長	第八百七十条ただし書	
不在者の則	不在者の財産の管理		
五十五	不在者の財産の管理に関する 処分	民法第二十五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	
失踪の宣告	E		
五十六	失踪の宣告	民法第三十条	
五十七	失踪の宣告の取消し	民法第三十二条第一項	
婚姻等			
五十八	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産の管 理者の変更等	民法第七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	
親子			
五十九	嫡出否認の訴えの特別代理人 の選任	民法第七百七十五条	
六十	子の氏の変更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及び第三項	
六十一	養子縁組をするについての許 可	民法第七百九十四条及び第七百九十八条	
六十二	死後離縁をするについての許 可	民法第八百十一条第六項	
六十三	特別養子縁組の成立	民法第八百十七条の二	
六十四	特別養子縁組の離縁	民法第八百十七条の十第一項	
親権			
六十五	子に関する特別代理人の選任	民法第八百二十六条	
六十六	第三者が子に与えた財産の管 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八百三十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六十七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 権喪失	民法第八百三十四条から第八百三十五条まで	
六十八	親権喪失、親権停止又は管理 権喪失の審判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三十六条	
六十九	親権又は管理権を辞し、又は 回復する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三十七条	
未成年後見			
七十	養子の離縁後に未成年後見人 となるべき者の選任	民法第八百十一条第五項	
七十一	未成年後見人の選任	民法第八百四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	

七十二	未成年後見人の辞任について の許可	民法第八百四十四条	
七十三	未成年後見人の解任	民法第八百四十六条	
七十四	未成年後見監督人の選任	民法第八百四十九条	
七十五	未成年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 いての許可	民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 四条	
七十六	未成年後見監督人の解任	民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四十 六条	
七十七	未成年後見に関する財産目録 の作成の期間の伸長	民法第八百五十三条第一項ただし書(同法第八百五十 六条及び第八百六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 を含む。)	
七十八	未成年後見人又は未成年後見 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 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民法第八百五十七条の二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八百五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七十九	未成年被後見人に関する特別 代理人の選任	民法第八百六十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二十六 条	
八十	未成年後見人又は未成年後見 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八百六十二条(同法第八百五十二条及び第八百 六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八十一	未成年後見の事務の監督	民法第八百六十三条(同法第八百六十七条第二項にお 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八十二	第三者が未成年被後見人に与 えた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八百六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八百三十 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	
八十三	未成年後見に関する管理の計 算の期間の伸長	民法第八百七十条ただし書	
扶養			
八十四	扶養義務の設定	民法第八百七十七条第二項	
八十五	扶養義務の設定の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七条第三項	
推定相続人の廃除			
八十六	推定相続人の廃除	民法第八百九十二条及び第八百九十三条	
八十七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の取 消し	民法第八百九十四条	
八十八	推定相続人の廃除の審判又は その取消しの審判の確定前の 遺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八百九十五条	
相続の承認	相続の承認及び放棄		
八十九	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すべき	民法第九百十五条第一項ただし書	

### ### ### ### ### ### ### ### #######		l .		
九十一 相続財産の保存又は管理に関する契分 同法第九百二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九百四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九百四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九百四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一 限定承認又は相經の放棄の取消し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二十四条 九十二 限定承認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二十四条 九十四 限定承認を受理した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 九十五 相続の放棄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 九十六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と第十五条第一項と第九百五十条第一項と對立、企業出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六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契分で本力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と対策九百三十条第一項と対策九百三十条第二項と対策九百三十条第二項と対第九百三十条条之対第九百五十二条とだし書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契分を含む。) 九十九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拠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二条ただし書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組続力百二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一 特別級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契分の分与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三項 百一 特別級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三項 直二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直二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直二 遺言の検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直二 遺言を検認 民法第九百五十八条第一項 直二 遺言の検認 民法第九百五十八条第一項 直二 遺言の検認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目 通 提供 日本第二十五十二条第二項目 <t< td=""><td></td><td>期間の伸長</td><td></td></t<>		期間の伸長		
九十二 廃定承認の中述の受理 民法第九百二十四条 九十二 限定承認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 九十四 限定承認を受理した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三十八条 九十五 相続の放棄の中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八条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七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で準用する場合を含む。) 民法第九百四十三条(同法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第二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所の選任 九十九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一 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一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遺言 の確認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二 遺言可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二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二 遺言執行者の課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二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九十		同法第九百二十六条第二項(同法第九百三十六条第三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九百四十条	
九十三 限定承認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 九十四 限定承認を受理した場合における選任 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 九十五 相続の放棄の中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八条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と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九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を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組織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の選任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組織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を表しました。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機能対産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地域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地域部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 遺言を確認 民法第十日条第一項 百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十九条第一項	九十一		民法第九百十九条第四項	
九十四 人の選任 氏公弟九日三十余第一項及び第九日三十二条だだし書 ける相続財産の管理人の選任 九十五 相続の放棄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 財産分離 九十七 財産分離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 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 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だけ書 相続人の不存在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日 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単定関する処分 分別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単定関する拠分分別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核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書の検認 民法第九百五十八条第三項 百二 遺言を確認 民法第九百五十八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九十二	限定承認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二十四条	
九十五 旧続の放棄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八条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 九十七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 九十七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四十三条(同法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と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と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五十二条を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組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の分割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第二項を定定人の選任 百一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有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日二 遺言書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二 遺言書の確認 民法第十四条第一項 百二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九十三	l .	民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	
カナ六 財産分離 カナン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 カナン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 民法第九百四十三条(同法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カナハ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 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とが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 カナカ 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日 日 日 日 日 日 日	九十四		民法第九百三十六条第一項	
九十六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 九十七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四十三条(同法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十条た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世界の分与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確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九十五	相続の放棄の申述の受理	民法第九百三十八条	
九十七 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 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四十三条(同法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 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 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と 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を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 日標院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日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五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入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財産分離			
九十八 の管理に関する処分 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四十七条第三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を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分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分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労生生業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九十六	財産分離	民法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九百五十条第一項	
九十八 財産分離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 相続人の不存在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日本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五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九十七			
九十九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三条及び第九百五十八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九十八		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及び第九百三	
九十九 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分 民法第九百五十二条、第九百五十二条及び第九百五十二条 百 相続人の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鑑定人の選任 民法第九百五十七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法第九百三十条第二項 百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相続人の不	相続人の不存在		
自 る鑑定人の選任 百三十条第二項 百一 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九十九	る相続財産の管理に関する処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自一 の分与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遺言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			
百二遺言の確認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百三遺言書の検認民法第千四条第一項百四遺言執行者の選任民法第千十条百五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百六遺言執行者の解任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一		民法第九百五十八条の三第一項	
百三遺言書の検認民法第千四条第一項百四遺言執行者の選任民法第千十条百五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百六遺言執行者の解任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遇 言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二	遺言の確認	民法第九百七十六条第四項及び第九百七十九条第三項	
百五 遺言執行者に対する報酬の付与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三	遺言書の検認	民法第千四条第一項	
白五与民法第十十八条第一項百六遺言執行者の解任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四	遺言執行者の選任	民法第千十条	
	百五.		民法第千十八条第一項	
百七 遺言執行者の辞任についての 民法第千十九条第二項	百六	遺言執行者の解任	民法第千十九条第一項	
	百七	遺言執行者の辞任についての	民法第千十九条第二項	

百十六ての許可八百四十四条百十七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百十八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許可	
西九 遺留分を算定するための財産 の価額を定める場合における 鑑定人の選任 百十 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千四十九条第一項 任意後見契約法 百十一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 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 選任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 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二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 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四項 任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 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一十二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 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一十二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 「在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三項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の群任につい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 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 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日本人集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一十一 任意後見契約公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八		民法第千二十七条
 百九 の価額を定める場合における 鑑定人の選任 百十 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千四十九条第一項 任意後見契約法 百十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き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二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二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三 を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契約法第七条第三項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離任についての前可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四条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て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遺留分		
 任意後見契約さか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一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二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三 を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二項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二項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百十六 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し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し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の付与 百十十 任意後見契約公第二年 日本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日本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の付与 	百九	の価額を定める場合における	民法第千四十三条第二項
 百十一 任意後見契約の効力を発生さ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二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三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日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日意後見契約法第八条 日言後見契約法第八条 	百十	遺留分の放棄についての許可	民法第千四十九条第一項
西十一 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 選任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一項 任意後見監督人が欠けた場合 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四項 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日十三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日本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三項 日本 任意後見監督人の離任についての許可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四条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二条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任意後見契	2的法	
 百十二 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三 任意後見監督人を更に選任す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任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百十六 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百十十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百十九 任意後見とといる事の付与 百十九 任意後見とといる事の所述を表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公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二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日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日言後見契約法第八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百十一	せるための任意後見監督人の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一項
 百十三 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二項 百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る処分 百十六 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四条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二十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十二	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人の選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四項
□ 日十五 任意後見監督人の職務に関す	百十三	る場合における任意後見監督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五項
百十九る処分任意後見監督人の辞任についての許可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四条百十七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百十八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百十九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百二十任意後見人の解任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百二十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任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	百十四	後見開始の審判等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四条第二項
百十六ての許可八百四十四条百十七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四十六条百十八任意後見監督人の権限の行使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百十九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百二十任意後見人の解任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百二十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任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	百十五	l .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三項
日 日 一	百十六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八百四十四条
百十八 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し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監督人に対する報酬の付与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六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二十一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二項	百十七	任意後見監督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八百四十六条
百二十 の付与 八百六十二条 百二十 任意後見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二十一 任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任意後見契約決策力条第二項	百十八	についての定め及びその取消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八百五十九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
日意後見契約の解除について 日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二項	百十九		任意後見契約法第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 八百六十二条
白 十一 任 直後 甚 型 紅 先 串 刀 条 串 坦	百二十	任意後見人の解任	任意後見契約法第八条
	百二十一		任意後見契約法第九条第二項
戸籍法			
百二十二 氏又は名の変更についての許 戸籍法第百七条第一項(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 場合を含む。)及び第百七条の二	百二十二		
百二十三 就籍許可	百二十三	就籍許可	戸籍法第百十条第一項

百二十四	戸籍の訂正についての許可	戸籍法第百十三条及び第百十四条
百二十五	戸籍事件についての市町村長 の処分に対する不服	戸籍法第百二十二条(同法第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性同一性障	: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	する法律
百二十六	性別の取扱いの変更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一号)第三条第一項
児童福祉法	<u>:</u>	
百二十七	都道府県の措置についての承 認	児童福祉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四号)第二十 八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ただし書
百二十八	都道府県の措置の期間の更新 についての承認	児童福祉法第二十八条第二項ただし書
百二十八の二	児童相談所長又は都道府県知 事の引き続いての一時保護に ついての承認	児童福祉法第三十三条第五項
生活保護法	等	
百二十九	施設への入所等についての許 可	生活保護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四十四号)第三十条第三項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百三十	保護者の順位の変更及び保護 者の選任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 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第二十三条の二第二項ただし 書及び同項第四号
破産法		
百三十一	破産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 おける夫婦財産契約による財 産の管理者の変更等	破産法(平成十六年法律第七十五号)第六十一条第一 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七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 三項
百三十二	親権を行う者につき破産手続 が開始された場合における管 理権喪失	破産法第六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法第八百 三十五条
百三十三	破産手続における相続の放棄 の承認についての申述の受理	破産法第二百三十八条第二項(同法第二百四十三条に 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百三十四	遺留分の算定に係る合意につ いての許可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第 八条第一項

丑 1

항	사항	근거 법률 규정
성년후견		
1	후견개시	「민법」 제 7 조
2	후견개시심판의 취소	「민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제 19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 1 항
3	성년후견인의 선임	「민법」 제 843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4	성년후견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44 조
5	성년후견인의 해임	「민법」 제 846 조
6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민법」 제 849 조
7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 한 허가	「민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8	성년후견감독인의 해임	「민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9	성년후견에 관한 재산목록 작 성 기간의 연장	「민법」 제 853 조제 1 항 단서(같은 법 제 856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 독인의 권한행사 의 결정 및 취소	「민법」 제 859 조의 2 제 1 항과 제 2 항(이러한 규 정을 같은 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11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용 부동 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59 조의 3(같은 법 제 852 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특별대 리인의 선임	「민법」 제 860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26 조
12 의 2	피성년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 편물 등의 배달촉탁 및 촉탁 의 취소 또는 변경	「민법」 제 860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
13	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 독인에 대한 보수의 부여	「민법」 제 862 조(같은 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	「민법」 제 863 조
15	제 3 자가 피성년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869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30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16	성년후견에 관한 관리의 계산 기간의 연장	「민법」 제 870 조 단서
16의 2	피성년후견인 사망 후의 사체 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 약의 체결, 그 밖에 상속재산	「민법」 제 873 조의 2 단서

가 []

	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 한 허가	
보좌		
17	보좌개시	「민법」 제 11 조
18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민법」 제 13 조제 2 항
19	보좌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 가	「민법」 제 13 조제 3 항
20	보좌개시심판의 취소	「민법」 제 14 조제 1 항 및 제 19 조제 1 항(같은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심판의 취소	「민법」 제 14 조제 2 항
22	보좌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2 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에서 군용하는 같은 법 제 843 조제 2 항과 제 3 항
23	보좌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6 조의 2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24	보좌인의 해임	「민법」 제 876 조의 2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25	임시보좌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2 제 3 항
26	보좌감독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3 제 1 항
27	보좌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 가	「민법」 제 876 조의 3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28	보좌감독인의 해임	「민법」 제 876 조의 3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29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의 권 한행사의 결정 및 취소	「민법」 제 876 조의 3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5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59 조의 2 제 1 항과 제 2 항
30	피보좌인의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6 조의 3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5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59 조의 3
31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에 대 한 보수의 부여	「민법」 제 876 조의 3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5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62 조
32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	「민법」 제 876 조의 4 제 1 항
33	보좌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 판의 취소	「민법」 제 876 조의 4 제 3 항
34	보좌 사무의 감독	「민법」 제 876 조의 5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63 조

35	보좌에 관한 관리의 계산 기 간의 연장	「민법」 제 876 조의 5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70 조 단서
보조		
36	보조개시	「민법」 제 15 조제 1 항
37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민법」 제 17 조제 1 항
38	보조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 17 조제 3 항
39	보조개시심판의 취소	「민법」 제 18 조제 1 항, 제 3 항 및 제 19 조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0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결정 심판의 취소	「민법」 제 18 조제 2 항
41	보조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7 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에서 군용하는 같은 법 제 843 조제 2 항과 제 3 항
42	보조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6 조의 7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43	보조인의 해임	「민법」 제 876 조의 7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44	임시보조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7 제 3 항
45	보조감독인의 선임	「민법」 제 876 조의 8 제 1 항
46	보조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6 조의 8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47	보조감독인의 해임	「민법」 제 876 조의 8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48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의 권 한행사의 결정 및 취소	「민법」 제 876 조의 8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10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59 조의 2 제 1 항과 제 2 항
49	피보조인의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6 조의 8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10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59 조의 3
50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에 대 한 보수의 부여	「민법」 제 876 조의 8 제 2 항 및 제 876 조의 10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62 조
51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	「민법」 제 876 조의 9 제 1 항
52	보조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심 판의 취소	「민법」 제 876 조의 9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76 조의 4 제 3 항
53	보조사무의 감독	「민법」 제 876 조의 10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63 조

54	보조에 관한 관리의 계산 기 간의 연장	「민법」 제 876 조의 10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70 조 단서
부재자의		
5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 분	「민법」 제 25 조부터 제 29 조까지
실종선고		
56	실종선고	「민법」 제 30 조
57	실종선고의 취소	「민법」 제 32 조제 1 항
혼인 등		
58	부부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 리자의 변경 등	「민법」 제 758 조제 2 항과 제 3 항
부모·자녀		
59	친생부인의 소의 특별대리인 의 선임	「민법」 제 775 조
60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허 가	「민법」 제 791 조제 1 항과 제 3 항
61	입양에 대한 허가	「민법」 제 794 조와 제 798 조
62	사후파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11 조제 6 항
63	특별양자의 성립	「민법」 제 817 조의 2
64	특별양자의 파양	「민법」 제 817 조의 10 제 1 항
친권		
65	자녀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 임	「민법」 제 826 조
66	제 3 자가 자녀에게 부여한 재 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830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67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 산관리권상실	「민법」 제 834 조부터 제 835 조까지
68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재 산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	「민법」 제 836 조
69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사퇴 하거나 회복하는 것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37 조
미성년후견		
70	양자의 파양 후에 미성년후견	「민법」 제 811 조제 5 항

	인이 될 사람의 선임		
7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민법」 제 840 조제 1 항과 제 2 항	
72	미성년후견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44 조	
73	미성년후견인의 해임	「민법」 제 846 조	
74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민법」 제 849 조	
75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4 조	
76	미성년후견감독인의 해임	「민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46 조	
77	미성년후견에 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의 연장	「민법」 제 853 조제 1 항 단서(같은 법 제 856 조 및 제 867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8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 견감독인의 권한행사의 결정 및 취소	「민법」 제 857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이러 한 규정을 같은 법 제 85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9	미성년피후견인에 관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	「민법」 제 860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26 조	
80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 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부여	「민법」 제 862 조(같은 법 제 852 조 및 제 867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1	미성년후견 사무의 감독	「민법」 제 863 조(같은 법 제 867 조제 2 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2	제 3 자가 미성년피후견인에게 부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869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830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	
83	미성년후견에 관한 관리의 계 산 기간의 연장	「민법」 제 870 조 단서	
부양			
84	부양의무의 설정	「민법」 제 877 조제 2 항	
85	부양의무의 설정의 취소	「민법」 제 877 조제 3 항	
추정상속역	추정상속인의 폐제		
86	추정상속인의 폐제	「민법」 제 892 조 및 제 893 조	
87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의 취 소	「민법」 제 894 조	
88	추정상속인의 폐제심판 또는 취소심판의 확정 전의 유산관 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895 조	
상속의 승	인 및 포기		

89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해 야 하는 기간의 연장	「민법」 제 915 조제 1 항 단서	
90	상속재산의 보존 또는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918 조제 2 항과 제 3 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법 제 926 조제 2 항(같은 법 제 936 조제 3 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940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1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상속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민법」 제 919 조제 4 항	
92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민법」 제 924 조	
93	한정승인의 경우 감정인의 선 임	「민법」 제 930 조제 2 항 및 제 932 조 단서	
94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민법」 제 936 조제 1 항	
95	상속포기신고의 수리	「민법」 제 938 조	
재산분리			
96	재산분리	「민법」 제 941 조제 1 항 및 제 950 조제 1 항	
97	재산분리 신청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943 조(같은 법 제 950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8	재산분리의 경우 감정인의 선 임	「민법」 제 947 조제 3 항과 제 950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930 조제 2 항 및 제 932 조 단 서	
상속인의	- 부존재		
99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민법」 제 952 조, 제 953 조와 제 958 조	
100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감정 인의 선임	「민법」 제 957 조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930 조제 2 항	
101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의 분여	「민법」 제 958 조의 3 제 1 항	
유언	유언		
102	유언의 확인	「민법」 제 976 조제 4 항 및 제 979 조제 3 항	
103	유언서의 검인	「민법」 제 1004 조제 1 항	
104	유언집행자의 선임	「민법」 제 1010 조	
105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부 여	「민법」 제 1018 조제 1 항	
106	유언집행자의 해임	「민법」 제 1019 조제 1 항	
107	유언집행자의 사임에 대한 허	「민법」 제 1019 조제 2 항	

	7]		
	가		
108	부담부유증과 관련한 유언의 취소	「민법」 제 1027 조	
유류분			
109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 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 감정 인의 선임	「민법」 제 1043 조제 2 항	
110	유류분포기에 대한 허가	「민법」 제 1049 조제 1 항	
「임의후견	크계약법」 크계약법」		
111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 하도록 하기 위한 임의후견감 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계약법」 제 4 조제 1 항	
112	임의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계약법」 제 4 조제 4 항	
113	임의후견감독인을 다시 선임 하는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임의후견계약법」 제 4 조제 5 항	
114	후견개시심판 등의 취소	「임의후견계약법」 제 4 조제 2 항	
115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 한 처분	「임의후견계약법」 제 7 조제 3 항	
116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 한 허가	「임의후견계약법」 제 7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844 조	
117	임의후견감독인의 해임	「임의후견계약법」 제 7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846 조	
118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의 결정 및 취소	「임의후견계약법」 제 7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859 조의 2 제 1 항과 제 2 항	
119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 의 부여	「임의후견계약법」 제 7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862 조	
120	임의후견인의 해임	「임의후견계약법」 제 8 조	
121	임의후견계약의 해제에 대한 허가	「임의후견계약법」 제 9 조제 2 항	
「호적법」	 「호적법」		
122	성씨 또는 이름의 변경에 대 한 허가	「호적법」 제 107 조제 1 항(같은 조 제 4 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 107 조의 2	
123	취적허가	「호적법」 제 110 조제 1 항	
124	호적정정에 대한 허가	「호적법」 제 113 조와 제 114 조	
	I .	l .	

125	호적사건에 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	「호적법」 제 122 조(같은 법 제 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동일성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		
126	성별 취급의 변경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 111호) 제 3조제 1항	
「아동복ス]법」		
127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	(1947 년 법률 제 164 호) 제 28 조제 1 항제 1 호와 제 2 호 단서	
128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	「아동복지법」 제 28 조제 2 항 단서	
128 의 2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연속적인 일시보호에 대한 승인	「아동복지법」 제 33 조제 5 항	
「생활보호	<u>-</u> 법」 등		
129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	「생활보호법」(1950 년 법률 제 144 호) 제 30 조제 3 항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	l를 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130	보호자의 순위변경 및 보호자 의 선임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사람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2 제 2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4 호	
「파산법」			
131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부부 재산계약에 의한 재산관리자 의 변경 등	「파산법」 (2004 년 법률 제 75 호) 제 61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758 조제 2 항과 제 3 항	
132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재 산관리권상실	「파산법」 제 61 조제 1 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 835 조	
133	파산절차의 상속포기의 승인 에 관한 신고의 수리	「파산법」 제 238 조제 2 항(같은 법 제 243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134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합의에 대한 허가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	

Table 2

項	事項	根拠となる法律の規定	
婚姻等	婚姻等		
	夫婦間の協力扶助に関す る処分	民法第七百五十二条	
<u> </u>	婚姻費用の分担に関する 処分	民法第七百六十条	
Ξ	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	民法第七百六十六条第二項及び第三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 第七百四十九条、第七百七十一条及び第七百八十八条におい 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四	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	民法第七百六十八条第二項(同法第七百四十九条及び第七百 七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五.	離婚等の場合における祭 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 指定	民法第七百六十九条第二項(同法第七百四十九条、第七百五 十一条第二項及び第七百七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	
親子			
六	離縁等の場合における祭 具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 指定	民法第八百八条第二項及び第八百十七条において準用する同 法第七百六十九条第二項	
親権			
七	養子の離縁後に親権者と なるべき者の指定	民法第八百十一条第四項	
八	親権者の指定又は変更	民法第八百十九条第五項及び第六項 (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 七百四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扶養			
九	扶養の順位の決定及びそ の決定の変更又は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八条及び第八百八十条	
+	扶養の程度又は方法につ いての決定及びその決定 の変更又は取消し	民法第八百七十九条及び第八百八十条	
相続	相続		
+-	相続の場合における祭具 等の所有権の承継者の指 定	民法第八百九十七条第二項	
遺産の	遺産の分割		
十二	遺産の分割	民法第九百七条第二項	
十三	遺産の分割の禁止	民法第九百七条第三項	

十四	寄与分を定める処分	民法第九百四条の二第二項	
特別の	特別の寄与		
十五	特別の寄与に関する処分	民法第千五十条第二項	
厚生年	厚生年金保険法		
十六	あん 請求すべき 按 分割合に 関する処分	厚生年金保険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十五号)第七十八条 の二第二項	
生活保護法等			
十七	扶養義務者の負担すべき 費用額の確定	生活保護法第七十七条第二項(ハンセン病問題の解決の促進 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年法律第八十二号)第二十一条第二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丑 2

항	사항	근거 법률 규정	
혼인 '	혼인 등		
1	부부의 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민법」 제 752 조	
2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	「민법」 제 760 조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민법」 제 766 조제 2 항과 제 3 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법 제 749 조, 제 771 조 및 제 788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민법」 제 768 조제 2 항(같은 법 제 749 조 및 제 771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이혼 등의 경우 제사 용 구 등의 소유권승계자의 지정	「민법」 제 769 조제 2 항(같은 법 제 749 조, 제 751 조제 2 항 및 제 771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모·ス	- 년		
6	파양 등의 경우 제사 용 구 등의 소유권승계자의 지정	「민법」 제 808 조제 2 항 및 제 817 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 769 조제 2 항	
친권			
7	양자 파양 후에 친권자가 될 사람의 지정	「민법」 제 811 조제 4 항	
8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민법」 제 819 조제 5 항과 제 6 항(이러한 규정을 같은 법 제 749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양	부양		
9	부양 순위의 결정 및 결 정의 변경 또는 취소	「민법」 제 878 조와 제 880 조	
10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결정 및 결정의 변 경 또는 취소	「민법」 제 879 조와 제 880 조	
상속			
11	상속의 경우 제사 용구 등의 소유권승계자의 지 정	「민법」 제 897 조제 2 항	
유산분	유산분할		
12	유산분할	「민법」 제 907 조제 2 항	
13	유산분할의 금지	「민법」 제 907 조제 3 항	

가 []

14	기여분을 정하는 처분	「민법」 제 904 조의 2 제 2 항	
기여분	기여분		
15	기여분에 관한 처분	「민법」 제 1050 조제 2 항	
「후생	「후생연금보험법」		
16	신청할 분할 비율에 관한 처분	「후생연금보험법」(1954 년 법률 제 115 호) 제 78 조의 2 제 2 항	
「생활보호법」 등			
17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액의 확정	「생활보호법」제 77 조제 2 항(「한센병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2008 년 법률 제 82 호) 제 21 조제 2 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